

체육특기자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2011. 12.

책임연구자: 한 태 룡(체 육 과 학 연 구 원)

공동연구자: 김 미 숙(체 육 과 학 연 구 원)

서 희 진(건 국 대 학 교)

류 태 호(고 려 대 학 교)

김 태 의(건 국 대 학 교)

자 문 원 원: 권 오 상(언 론 인)

정 재 용(언 론 인)



체육과학연구원

발 간 사

2011년 7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을 유치하게 된 소식은 온 국민에게 긍지와 희망, 그리고 감동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또한, 2011년 8월 대구에서 개최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역시 우리 국민의 우수한 역량, 그리고 세계화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일깨워주는 뜻 깊은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스포츠 강국으로 점차적으로 도약하고 있는 시점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스포츠의 과학화, 그리고 이에 대한 실천의 중심에 우리 체육과학연구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 연구원은 올 한 해도 38건의 자체과제와 38건의 수탁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관련 단체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한 체육정책 지원, 꿈나무선수, 후보선수, 국가대표선수 등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과학 현장지원, 스포츠산업체의 당면 문제에 대해 현장 중심의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스포츠산업 현장지원 등은 우리 연구원이 수행한 주요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체육학술단체 지원 및 체육학술 진흥사업, 경기 및 생활 체육지도자 연수 등도 우리 연구원에 부여된 주요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성과 속에서도 특히 2011년은 우리 연구원이 전 세계에서 2번째로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스포츠 활동을 통한 청소년 육성에 대한 다학문적 영역의 연구를 수행하게 되는 쾌거를 이룬 해입니다. 이번 선정은 우리 연구원의 역량이 전 세계에 어디에 비추어도 우수함을 증명한 것과 동시에, 최근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스포츠의 가치로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세계적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 한해 추진한 런던올림픽 대비 세계적 수준의 경기력 향상 지원을 위한 스포츠 과학 지원, 선진 스포츠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 수행,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체육인재 육성, 국민체력의 과학적 지원을 위한 국민체력인증사업 수행은 우리 연구원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선도하는 중심 기관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준 연구원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한 해 동안의 모든 노력과 성과가 집약된 의미 있는 결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최선을 다해 주신 외부의 공동연구자와 자문위원, 자료 수집과 처리를 도와 준 보조연구원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한국체육학회 등 체육부문의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국민체육진흥공단 본부와 각 운영본부의 모든 임직원들과도 이 결실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공단의 배려와 지원이 없었다면 오늘의 성과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체육과학연구원은 주어진 사명과 책무 속에서 대한민국 체육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며, 올 한해의 결실을 겸허하게 내려놓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원장 서 상 훈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가. 연구의 필요성	3
나. 연구 목적	6
2. 연구내용 및 방법	7
가. 연구내용	7
나. 연구방법	9
II. 체육특기자 대학입학전형의 제도분석	12
1. 체육특기자 제도의 개요	13
2. 체육특기자 관련 법적 제 규정	17
3. 체육특기자 선발 및 입학	21
III. 체육특기자 대학입학의 양상과 원인	29
1. 체육특기자 입시 비리의 양상	30
2. 체육특기자 입시 비리의 원인 및 파급효과	45
IV. 해외사례 조사	63
1. 일본의 사례	64

2. 미국의 사례	75
3. 소결.....	86
가. 교육적 적합성 강조	87
나. 국가적 통제 시스템 작동.....	88
V. 전문가 델파이 조사.....	89
1. 조사 개요.....	90
2. 조사 결과.....	92
3. 요약 및 결론.....	110
VI. 체육특기자 대학입학 전형제도 개선방안.....	113
1. 체육특기자 대학입학 전형제도 개선방안의 기본 방향 설정.....	114
2. 체육특기자 대학입학 전형제도 개선의 방안.....	124
참고문헌.....	136
부록.....	137
1. 조사의 개요.....	137
2. 조사결과.....	137

표 목 차

〈표 II-1〉	시기별 체육특기자 대학입학 전형 방식의 변화(류태호, 2004)·	14
〈표 II-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9, 73조·····	17
〈표 II-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7조·····	18
〈표 II-4〉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1, 34조·····	18
〈표 II-5〉	대한체육회 선수등록규정 제12조·····	19
〈표 II-6〉	대한체육회 선수등록규정 제13조·····	20
〈표 II-7〉	초등학교→중학교의 입학과정·····	21
〈표 II-8〉	중학교→고등학교의 입학과정·····	22
〈표 II-9〉	체육특기자 시도별 선발규정·····	22
〈표 II-10〉	특별전형의 전형원칙·····	26
〈표 II-11〉	특기자 특별전형의 기준·····	26
〈표 III-1〉	학교운동부 입시비리에 관한 수사 및 판결현황·····	31
〈표 IV-1〉	2009학년도 초·중·고등학교 추천입학시험 관계위원회의 구성·····	72
〈표 V-1〉	델파이 조사 설계 ·····	91
〈표 V-2〉	1차 델파이 조사의 주요 응답 ·····	92
〈표 V-3〉	체육특기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 분석 결과·····	94
〈표 V-4〉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 분석 결과·····	95
〈표 V-5〉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 분석 결과·····	97
〈표 V-6〉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 결과·····	97

〈표 V-7〉	계층화(AHP) 분석을 위해 최종 분류된 계층구조	98
〈표 V-8〉	체육특기자제도의 문제점 항목별 상대적 가중치 분석	100
〈표 V-9〉	체육특기자제도 개선 방안 항목별 상대적 가중치 분석.....	103
〈표 V-10〉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 방안 항목별 상대적 가중치 분석	106
〈표 VI-1〉	2004년 체육고등학교 학생선수 진학-진로 현황.....	119
〈표 VI-2〉	2006년 체육고등학교 학생선수 진학-진로 현황.....	120
〈표 VI-3〉	학교운동부 현황.....	132

부 록

〈표 1-1〉	지역별 체육 특기생 모집 대학교 현황.....	138
〈표 1-2〉	유형별 대학교 현황.....	139
〈표 1-3〉	지역별 체육 특기생 모집 비율 현황.....	139
〈표 1-4〉	유형별 체육 특기생 모집 비율현황.....	140
〈표 1-5〉	지역별 체육 특기생 선발비율 현황.....	141
〈표 1-6〉	유형별 체육 특기생 선발비율 현황.....	142
〈표 1-7〉	지역별 체육 특기생 모집비율 대비 선발비율 비교.....	143
〈표 1-8〉	유형별 체육 특기생 모집비율 대비 선발비율 비교.....	144

그림 목 차

〈그림 II-1〉 체육특기자 대입전형의 절차.....	27
〈그림 IV-1〉 체육특기자 진학을 위한 고등학교 핵심이수 과목.....	81
〈그림 V-2〉 체육특기자제도 문제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	99
〈그림 V-3〉 체육특기자제도 문제의 인식문제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 ...	101
〈그림 V-4〉 체육특기자제도 문제의 학습권문제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	101
〈그림 V-5〉 체육특기자제도 문제의 제도적 문제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	102
〈그림 V-6〉 체육특기자제도 개선방안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	103
〈그림 V-7〉 체육특기자제도 개선방안의 학습권보장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	104
〈그림 V-8〉 체육특기자제도 개선방안의 학교체육운영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 ..	104
〈그림 V-9〉 체육특기자제도 개선방안의 지도자관리 및 지원 항목간 상대적 중요도	105
〈그림 V-10〉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의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	106
〈그림 V-11〉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의 지원자격기준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	107
〈그림 V-12〉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의 입학전형기준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	108
〈그림 V-13〉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의 경기력판정기준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	108
〈그림 V-14〉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의 최저학력기준 항목간 상대적 중요도..	109
〈그림 V-15〉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의 기타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	110

부 록

〈그림 1〉 체육특기자 대학입학 전형제도 개선의 방안(안).....	124
---------------------------------------	-----

I. 서론

- 최근 학교운동부와 관련하여 학습권이나 폭력 및 성폭력 등은 사회각계의 문제제기와 주무부처의 발 빠른 대처로 상당수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진학 및 스카우트 관련 비리, 특히 대입상황에서의 비리는 전혀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 특히 거의 매년 입학시기마다 언론에 의해 언급되는 스카우트 관련 비리는 적발의 어려움, 사법처리의 어려움, 관행화의 문제 등의 이유로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지 못한데, 이는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공정해야할 대학입학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저하시키는 사례로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체육특기자의 대입과정의 각종 제도적 현황 및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대학입학전형 과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체육특기자 대입과정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됨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체육특기자 대입전형 관련 제도 및 운영실태 분석, 입시관련 판례 및 사례 분석,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학별 전형기준 실태조사 및 사례분석 등을 그 방법으로 하고 있음
- 우선 체육특기자 대입전형 관련 제도 및 운영실태 분석은 체육특기자 제도 자체에 대한 분석과 함께 현황, 유사사례 등을 포함함
- 체육특기자 입시관련 비리의 판례 및 사례 분석은 1970~2010년 동안 체육특기자 대입관련 법정 소송에 대한 판례를 수집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제시했음
- 대학별 운영 실태조사 연구진이 접근가능한 기존자료 중에서 2009~2011 학년도 특기자 특별전형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여 이중 체육특기자관련 지

역별, 설립주체별(사립, 국공립), 연도별 선발 규모를 파악했음

-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를 위해 심층면접 및 델파이 조사, 전문가 회의를 실시했음
- 최근 학교운동부와 관련하여 학습권이나 폭력 및 성폭력 등은 사회각계의 문제제기와 주무부처의 발 빠른 대처로 상당수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진학 및 스카우트 관련 비리, 특히 대입상황에서의 비리는 전혀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 특히 거의 매년 입학시기마다 언론에 의해 언급되는 스카우트 관련 비리는 적발의 어려움, 사법처리의 어려움, 관행화의 문제 등의 이유로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지 못한데, 이는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공정해야 할 대학입학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저하시키는 사례로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체육특기자의 대입과정의 각종 제도적 현황 및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대학입학전형 과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체육특기자 대입과정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됨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체육특기자 대입전형 관련 제도 및 운영실태 분석, 입시관련 판례 및 사례 분석,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학별 전형기준 실태조사 및 사례분석 등을 그 방법으로 하고 있음
- 우선 체육특기자 대입전형 관련 제도 및 운영실태 분석은 체육특기자 제도 자체에 대한 분석과 함께 현황, 유사사례 등을 포함함
- 체육특기자 입시관련 비리의 판례 및 사례 분석은 1970~2010년 동안 체육특기자 대입관련 법정 소송에 대한 판례를 수집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제시했음
- 대학별 운영 실태조사 연구진이 접근가능한 기존자료 중에서 2009~2011학년도 특기자 특별전형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여 이중 체육특기자관련 지역별, 설립주체별(사립, 국공립), 연도별 선발 규모를 파악했음

-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를 위해 심층면접 및 델파이 조사, 전문가 회의를 실시했음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체육특기자 제도는 체육에 특별한 소질을 지닌 학생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상급학교 입학 시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로서, 우수한 자질 있는 선수에게 초, 중, 고, 대학에 이르는 우수선수의 연계적 양성체제를 확립하여 지속적 경기력 향상을 통해 각종 국제경기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나아가 유능한 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자 제정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이 제도는 1970년대 초에 학교현장에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제도의 근간이 변화되지 않은 채 적용되고 있다(류태호, 2004). 이 시기 이후 한국 체육이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한국 체육 발전의 기반으로 작용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영광의 이면에 학생선수에게 운동에만 몰두하게 하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학습권 보장 미비, 폭력 및 성폭력, 진학 및 스카우트 관련비리 등의 근본원인이 되었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기도 하다.

한편 체육특기자 제도가 야기했던 여러 문제 중, 학습권이나 폭력 및 성폭력 등은 최근까지 지속된 사회각계의 문제제기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발 빠른 대처로 상당수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2010)에 따르면, 5년 전에

비해 학교운동부의 폭력이나 성폭력은 감소하고, 학업상황은 향상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진학 및 스카우트 관련 비리, 특히 대입상황에서의 비리는 전혀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이 사안이 학생선수가 직면하고 있는 여타의 문제와는 차별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이는 대학 입학제도와 연동된 문제로서, 체육계만의 의지로 개선되기 어렵다는 측면이 존재하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인 학부모 및 학생선수와 가해자인 운동부 지도자 간에 형성된 일종의 공범의식으로 적발조차 힘든 속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적인 문제야 차치하더라도 실제로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체육특기자 대학입학과 관련된 비리는 체육특기자 제도의 시행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해묵은 문제이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규모나 방식에 대한 구체적 조사조차 이루어진 경우가 없다.

체육특기자 제도에 의해 개별 학생선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의거 특기자로서 진학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대학 입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대교협이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선발기준에 따라 개별 대학의 장에 의해 선발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입학을 허용하는 중·고등학교 진학과는 달리, 대입의 경우 대학에게 전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선발 규모, 사정방식 등의 과정은 대학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힘들지만, 대다수의 대학은 체육특기자심사소위원회, 대학입학전형관리 위원회 등의 단계를 거쳐 신입생 사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 때 전형과정에서 대다수가 교수로 구성된 전형위원은 특정종목의 전문 지식이나 신입 선수 현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대부분 감독의 추천을 그대로 통과시키게 되는데, 이런 구조로

인해 대학의 감독은 선수의 대학입학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문화일보, 2000-02-15). 이로 인해 대학교 감독의 비리발생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가장 전형적 스카우트 비리유형은 일부 인기 단체종목의 이른 바 ‘끼워 팔기’ 관행으로 이는 스타플레이어 선수 1명에 3~4명의 후보 선수가 함께 진학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스타플레이어가 1억 원의 스카우트비를 받고 입학하는 경우, 함께 입학하게 되는 후보 선수의 학부모가 모두 2억 원 정도를 각출하는데, 이는 대학의 스카우트비와 고교와 대학 감독에게 건네줄 돈 등을 포함한다(문화일보, 2000-02-15). 어느 관계자는 고교 감독이 돈 배달 구실을 하며, 그가 학부모에게 돈을 받아 자신도 쓰고, 큰돈은 대학 감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돈은 학교 체육발전기금이나 운영비·스카우트비 등으로도 쓰는 게 관행이지만 이 과정에서 착복이 있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한겨레, 2008-01-24). 이 같은 관행에 대해 법조계는 “스카우트 비용으로 썼더라도 돈 받은 사실이 있다면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해당돼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거의 매년 입학시기마다 언론에 의해 언급되는 스카우트 관련 비리는 이런 과정에서 고교감독의 착복이나 대학 감독과 대학 간의 계산 상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라고 한다.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공정해야 할 대학입학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같은 비리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근절되기 힘들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발의 어려움으로 대다수의 관련 사안이 학부모와 대학 및 고등학교 코치 간에 담합 하에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공범의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불합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덮여지게 될 개연성이 많다.

둘째, 사법처리의 어려움으로 사안 자체가 학생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비리가 사회문제가 되어도 어느 정도 선에서 학생선수와 학교 측이 합의를 보고 무마되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관행화의 문제로서, 이 사안 자체가 학원스포츠 현장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오래전부터 이루어진 문제로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는 문제라는 점이다. 일부 기사에 따르면 프로야구 스타선수 출신의 한 대학 감독은 ‘브로커가 야구계의 선후배들이어서 거절하기가 쉽지 않고 청탁을 거절하면 다른 대학 감독이 왕따를 시킨다’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문화일보, 2004-01-14).

그러나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해서 이 문제 자체를 회피하기에는 이 사안의 파급력을 감안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체육계가 이 같은 문제를 방기하고 있는 사이에 이 문제는 체육계의 체질을 매우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체육특기자로서 대학에 입학한 1, 2학년생의 중도포기율이 매년 40% 이상에 이르고 있어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학교 운동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여 재학생과 학부모의 운동부 기피를 촉진하고 있는 점이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제도 도입 초기와는 차별되는 미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체육특기자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 입학 관련 문제는 그 개선의 시급성이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나. 연구 목적

이 같은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체육특기자의 대입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제도적 현황 및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대학입학전형 과정의 문제

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체육특기자 대입과정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체육특기자 대입전형 관련 제도 및 운영실태 분석, 입시관련 판례 및 사례 분석,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학별 전형기준 실태조사 및 사례분석 등을 그 방법으로 하고 있다.

가. 연구내용

1) 체육특기자 대입전형 관련 제도 및 운영실태 분석

체육특기자 제도 자체에 대한 분석과 함께 현황, 유사사례 등을 포함한다.

우선 제도분석의 일환으로 현재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체육회 선수등록 규정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행 체육특기자 제도관련 법적 제도적 제반 법적 규정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체육특기자 대입제도의 성격별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정원 내 특기자 전형 등의 유사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진행하고자 하는 문제점 진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 하에 2009~2011 학년도 체육특기자관련 선발 규모를 파악했다.

2) 체육특기자 입시관련 비리의 판례 및 사례 분석

우선 입시비리관련 각종 판례를 분석한다. 이는 입시관련 부정의 성격과

규모를 파악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1990~2010년 동안 체육특기자 대입 관련 법정 소송에 대한 판례를 수집했다.

수집과정에서 이 같은 소송이 대부분 합의에 의해 해소되는 성격을 지니므로 많은 사례를 확보하기에 문제가 있어서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룬 경험이 있는 변호사, 경찰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입수한 사건번호를 대조하여 무마된 사건에 대한 원인, 비리형태, 무마과정 등에 대한 사례연구를 병행 실시하였다.

3)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이는 체육특기자 제도가 현행과 같이 행해지는데 있어 발생하는 근본적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파악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었다. 여기서 ‘단계적 파악’이란 우선 대학입시관련 특기자 제도운영 자체의 문제점에서 시작하여 대교협외 가이드라인 설정, 총장의 전형기준 설정, 특기자 심사소위, 전형위원회 활동 등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하면서 문제의 본질은 대입 전형과정이 아닌 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체육특기자제도 및 스카우트 관행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고, 이에 양 제도의 문제점에 집중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제도 분석의 기준이 되는 ‘미래지향적 관점’이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2010년도에 제시한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육성’ 및 향후 입법화가 예상되는 ‘학교체육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학생선수상을 의미한다. 즉 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학생선수상에 의거하여 체육특기자의 대학입학과정이 이에 합당한가에 대한 확인, 검토한 후, 이를 통해 나타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였다.

나. 연구방법

1) 문헌 연구

문헌연구는 체육특기자 대입전형 관련 제도 분석과 입시비리 분석을 위해 실시된다. 관련 각종 법령 및 제 규정의 분석과 비리사례 관련 판례 탐색을 통해 관련 문제의 내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하였다.

2) 대학별 운영 실태조사

당초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 하에 2010년도 기준 4년제 대학 102개교의 체육특기자 입학전형 자료에 의거하여 종목별, 성별, 세부종목별, 체급별 모집 인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이들의 대학과의 협조 부족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체육특기자 대학입학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담당부서 이원화로 인해 관련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연구진이 접근 가능한 유일한 기존자료인 2009~2011 학년도 특기자 특별전형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여 체육특기자를 운영 중인 100여개 (2009년도 108개, 2010년 107개, 2011년 109개) 대학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체육특기자관련 지역별, 설립주체별(사립, 국공립), 연도별 선발 규모를 파악했다. 이 조사는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지 않고, 부록에 그 내용을 수록하였다.

3) 심층면접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를 위해 실시했다. 심층면접은 두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관련 법조인과의 면담인

데 이를 통해 현재까지 문제되었던 대입관련 법적 사례에 대한 유형 및 문제를 정리했다. 이후 두 번째는 고등 및 대학 감독, 체육과 교수(전형과정 참가 유경험자), 학부모, 교육부 입학관련 담당자 등으로 분류된 전문가 패널 15명을 구성하여 이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했다.

면접방식은 대상에 따라 비구조화 및 반구조화된 심층면접 방식을 모두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초기 면접에서 관련 문제가 정확히 분석되지 않았을 때, 심층면접의 방법을 동원하였고, 이후 관련 문제의 양상이 비교적 명확히 나타난 후에 주제 중심별로 반구조화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일대일 대면면접을 주로 취하고, 필요에 따라 2~3인 규모의 주제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병행했다. 수집된 자료는 녹취, 수기 및 면접노트 작성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수집된 자료는 전사한 후 전사된 자료를 출력하여 분류하고 연구 목적에 따라 분석을 실시했다.

4) 델파이 조사

델파이 조사는 대학의 체육특기자 관리 및 입학 전형 경험이 있는 현직 교수 25명으로 전국시도 분포를 고려하여(제주도 제외) 4년제 대학에서 패널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전문가 조사는 총 3차에 걸쳐 인터넷 메일을 통한 서면조사로서 1차는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체육특기자 제도 및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2차는 1차에서 응답된 내용에서 도출된 사항을 정리하여 각각의 중요성에 대해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1차 및 2차를 통해 구성된 내용은 전문가 패널의 추가 및 보완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자가 최종 판단하여 3차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3차 질문지는 추출된 3단계 항목에 대한 중요도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계

층화(AHP) 분석을 활용함으로써 체육특기자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위한 자료로 제시되었다.

5) 해외 사례 조사

해외사례조사는 우리와 교육제도 및 입시제도가 유사한 미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의 사례는 일정부분 우리와 입시제도, 체육특기생의 정의 등에서 상당부분 차이가 있음을 감안할 것이며, 이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주로 인터넷을 통한 2차 자료와 해외주재 객원연구원을 통해 사례조사 위주로 실태를 파악했다.

II. 체육특기자 대학입학전형의 제도분석

- 체육특기자 제도는 체육에 특별한 소질을 가진 학생들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상급학교 입학 시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로 정의되며 1972년도 발효되어 지금까지 일부의 개정은 있었지만, 그 기본적 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음
- 체육특기자 제도에 대한 규정은 체육특기자의 학령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체육회의 규정’ 등에서 찾을 수 있음
 -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진학할 때 체육특기자의 입학, 배정, 전학 등에 대한 실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생선수가 대학진학에 있어서 학생선발, 입학전형의 구분(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등의 규정을 통해 체육특기자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대한체육회 선수등록규정은 총 5장 23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종전의 「선수자격심의위원회」 규정과 「선수선발및등록지침」을 통합한 형태로 개정되어졌으며, 12조를 통해 등록 자격을 명시하고 있는데,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만 등록 자격을 주고 있음
-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입학은 당해 연도 입학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장의 관할 하의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짐.
-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과정은 이전 단계와는 달리 교육감의 관할 하에 실시되며, 비평준화 지역에 대한 고려가 존재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음.
- 반면 대입과정에서 체육특기자의 전형방식은 정원 내 특별전형의 한 가지로 ‘특기자 특별전형’에 속하는데, 이는 보편적 교육기준에 의거한 일반전형의 원칙과는 달리 차등적 보상원칙에 의거한 전형방식임

- 대입의 경우 대학에게 전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선발규모, 사정방식 등의 과정은 대학마다 차이가 있음
- － 분석결과 대다수의 대학은 체육특기자심사소위원회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1, 2차 심사 등의 절차를 밟아 신입생 사정을 실시하고 있었음

체육특기자 대학입학전형과 관련된 법적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언급된 체육특기자 및 체육특기자 제도에 의거하고 있다. 여기서는 학생선수 개인이 체육특기자로 선발되어 대학입학을 하는 과정까지 개입된 법적 규정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1. 체육특기자 제도의 개요

1) 체육특기자 제도의 목적

체육특기자 제도는 체육에 특별한 소질을 가진 학생들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상급학교 입학 시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로 정의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06).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하면 체육기량이 우수한 선수에게 초, 중, 고, 대학에 이르는 우수선수의 연계적 양성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을 통해 각종 국제경기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나아가 유능한 체육지도자의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체육특기자 제도의 연역

체육특기자 제도는 1972년도 발효되어 지금까지 일부의 개정은 있었지만, 그 기본적 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이를 시기별로 분류하면 제3,4공화국, 제5공화국, 제6공화국, 국민의 정부의 4가

지로 구분된다(이학래, 2010). 체육특기자 제도의 개괄적 변화 양상은 표 II-1와 같으며, 이를 시기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 시기별 체육특기자 대학입학 전형 방식의 변화(류태호, 2004)

구 분	1996년 이전	1997~1999년	2000년 이후
주 관	국립교육평가원	대학 자율	대학 자율
기 준	입상실적자(4위이내)	대학 자율	대학 자율
지 망	동일계 및 타계 지원 가능	동일계 및 타계 지원 가능	동일계 한정 타계 전과 금지

(1) 제3공화국 시기

체육특기자제도¹⁾는 1972년 10월 5일 체육진흥계획의 일환으로 학교 체육강화방안이 공포되고, 이어 동년 11월 9일에 제정된 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6377호)에 따라 시행되었다. 이 제도의 요지는 진학교사 성적과 관계없이 상급학교에 입학할 허용하며, 등록금과 수업료 감면 등을 보장한 점에 있다. 이와는 별개로 다음 해 제도화된 병역특례제도 등이 도입되면서 실제로 학생선수는 대학뿐만 아니라 군대에서도 자신의 운동기량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정책적 조치를 통해 한국체육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같이 정권이 체육에 큰 혜택을 주었던 이유는 다양하게 분석되지만 우선적으로 스포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었으며, 또한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적 스포츠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있다.

현재 국민의 대다수가 1988년 서울올림픽의 최초 계획자가 전두환 대

1) 제도 도입당시에 정확한 제도의 명칭은 체육특기생 제도였다.

통령이라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는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미리 기획되었던 사안이다. 이에 대한 계획서가 청와대에 제출된 1달 후 10.26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였기 때문에 그 계획은 잠정적으로 폐기되었다 할 수 있으며, 제 5공화국 시기에 이를 계승하여 올림픽 개최가 성사되었다.

(2) 제5공화국 시기

1988년 서울올림픽의 준비에 정권의 명운을 걸었던 당시에는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체육특기자 제도가 보다 강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당시 문교부에서 관리하던 체육특기생 업무는 신설된 체육부로 이관하여 관리하고, 이들을 국제 경기대회에 파견, 서울 올림픽에 대비하던 체계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미 체육특기자의 문제는 크게 부각되었다.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는 학력저하, 특기자의 학교 내 이질 집단화 현상, 대학 미진학 특기자의 사회부적응 등이다. 특히 성적저하는 매우 심각했는데 1984년도 대학입시 성적 분포에서 전체 특기생의 67.34%가 40점 이하를 받고 있었다. 이런 체육특기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발 기준에서 학력기준치를 점차 상향조정하는 것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2001년까지 제도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까지 제시되었다.

(3) 제6공화국 시기

1989년 체육부는 체육청소년 장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문제점으로는 체육특기생 선발 및 배정이 경기기록과 실적 위주, 인기종목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능에 치중함으로써 학력저하 및 사회적응 미숙을 초래한다는 점, 특기생 혜택이 체육활동 지원에 국한되고, 진학 및 취업 등 사후 대책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개선방

안은 특기생에 대한 학력지원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을 지닌 선수만 혜택을 부여하는 기본 학력제 도입, 과학적 선발방식, 비인기종목(정책종목)에 대한 혜택 부여 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추진계획은 현실화되지 못하고 말았는데 1992년 3월 대입학력고사 체육특기생제도를 개정하여 당해 연도 경기에 입상한 선수에 한해 일정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추어야 입학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학력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수능 점수 200점 만점에 40점 이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여, 1997년도에 대학자율화 정책에 따라 최저학력기준을 수능 60점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각 대학은 수능성적과 내신을 종합한 후 입학을 허락하여 제도를 무력화시킨다.

(4) 국민의 정부 시기

이 시기에 체육특기생제도는 커다란 전환을 맞게 된다. 2000년도 대학입학 시부터 체육특기생도 동일 계열학과에 한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재학 중 다른 계열학과로의 전과를 금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는 선수 스카우트 비리의 원천 봉쇄와 특기생의 수학능력 제고, 다른 분야 특기생화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였다.

이에 대해 체육계는 엘리트 스포츠 발전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체육특기생의 체육계열 한정방침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면서 그 근거로 운동부의 축소, 스카우트 문제의 악화 등을 이유로 내걸기도 하였다. 하지만 오히려 운동부의 수는 증대되었으며, 스카우트 문제는 전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제도에 의거하여 학생선수는 학업성적에 구애받지 않고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경기력을 특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당종목 육성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으며,

2. 체육특기자 관련 법적 제 규정

체육특기자 제도에 대한 규정은 체육특기자의 학령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체육회의 규정’ 등에서 찾을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98. 2. 24. 대통령령 제15664호)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진학할 때 체육특기자의 입학, 배정, 전학 등에 대한 실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제69조는 체육특기자 등의 입학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장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73조는 체육특기자 포함한 중학교에서의 전학을 전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체육특기자의 경우 2항을 통해 추천에 의하지 않고 전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II-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9, 73조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교육장은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 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한다.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② 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의 경우로서 그 특기에 해당하는 체육특기학교에 체육특기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추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학 또는 편입학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제87조는 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교육감은 체육특기자의 경우 입학전형결과와는 상관없이 입학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9조는 체육특기자 포함한 고등학교의 전학 등에 대한 사항으로서 전학불가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의 경우 교육감이 전학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II-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7조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 ① 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자중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입학전형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 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 정원중 그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입학을 허가하되... 후기학교의 경우에는 .. 학교군에 제한 없이 체육종목별로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을 정하여 이에 따라 체육특기자를 배정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특기자의 범위....는 교육감이 정한다.

2) 고등교육법시행령 (98. 2. 24. 대통령령 제15665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생선수가 대학진학에 있어서 학생선발, 입학전형의 구분(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등의 규정을 통해 체육특기자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1조는 학생을 선발할 때, 소질, 적성,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의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34조를 통해 입학전형을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분리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전형의 경우 차등적 보상기준에 의거한 전형방식으로 합리적 입학전형을 통해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표 II-4〉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1, 34조

제31조 (학생의 선발)

- ②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학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 (입학전형의 구분)

-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②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3) 선수등록규정(2005. 2. 2.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선수등록규정은 제1장 총칙을 포함하여 총 5장 23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나라 체육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선수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의 선수등록 및 선수활동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전의 「선수자격심의위원회」규정과 「선수선발및등록지침」을 통합한 형태로 개정되어졌으며, 12조를 통해 등록 자격을 명시하고 있는데,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만 등록 자격을 주고 있다.

〈표 II-5〉 대한체육회 선수등록규정 제12조

제12조(등록자격)

① 학생선수의 등록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전학 및 학교급을 달리하거나 이적동의서를 발급 받지 못한 경우에도 등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교육기본법 등 관계법규에 정해진 학교에 입학, 재입학, 복학, 전학 및 편입학 방법과 절차에 따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
2. 교육기본법 등 관계법규에 정해진 학교에 입학, 재입학, 복학, 전학 및 편입학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학교(전문대학 및 야간 대학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공고한 학교 포함)에 재학중인 자로서 당해 학기에 학생 등록을 필한자(학생등록의 학기는 학사 편입자를 포함하여 총 12학기까지 인정한다.)
3. 고등학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졸업자 포함)로서 취업하여 선수활동을 하고자 하여 본인의 지원(보호자 확인날인)과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대학원 재

학생 포함)

4. 기타 경기단체가 승인한 스포츠클럽(체육시설, 체육관 소속 포함)에 소속된 자

13조 ‘지원서의 관리’의 3항을 통해 진학 및 취업에 이용되는 지원서는 본회 경기단체가 본회로부터 지급받아 관리하여 진학 또는 취업코자 하는 선수에게 1인 1매로 한정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II-6〉 대한체육회 선수등록규정 제13조

제13조(지원서의 관리)

① 제12조 제1항 2호의 규정 중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졸업자 포함)로서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 진학하여 선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지원(보호자 확인 날인)과 소속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졸업예정자와 소속 학교장은 매년 3월1일 이후 1회에 한하여 지원 및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서를 접수받은 대학에서 입학을 인정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대학의 확인을 받아 타 대학에 재 추천할 수 있으나 졸업예정자가 진학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2조 제1항 3호의 규정 중 고등학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졸업자 포함)로서 취업하여 선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지원(보호자 확인날인)과 소속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졸업예정자와 소속학교장은 매년 3월1일 이후 1회에 한하여 지원 및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서를 접수받은 실업팀에서 취업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실업팀의 확인을 받아 타 실업팀에 재추천할 수 있으나 졸업예정자가 취업하기로 결정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③ 진학 및 취업에 이용되는 지원서는 본회 경기단체가 본회로부터 지급받아 관리하여 진학 또는 취업코자 하는 선수에게 **1인 1매로 한정하여 지급한다.**

3. 체육특기자 선발 및 입학

이상에서 설명한 법적 규정에 근거하여 실제로 체육특기자의 선발과 입학과정을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고등학교-대학교 등 학령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중학교 입학과정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입학은 당해 연도 입학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장의 관할 하의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7〉 초등학교→중학교의 입학과정

	선발방법	입학	범위
주요내용	교육장 관할 하의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	선발된 학생을 지망학교에 배정하고 지망학교와 불일치 시 교육장이 조정, 배정하여 본인에게도 통보함	당해 학년 입학정원
법조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9조 ①항		
법적규정	교육장이 정하나 세부내용은 시도체육특기자선발규칙을 준용함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함	교육장 관할지역의 입학정원 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입학

2)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과정은 이전 단계와는 달리 교육감의 관할 하

에 실시되며, 비평준화 지역에 대한 고려가 존재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표 II-8〉 중학교→고등학교의 입학과정

	선발방법	입학	범위
주요내용	교육감관할하의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	전·후기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전기의 경우, 학교장이 결정하고 합격자 발표하며, 후기의 경우 교육감이 지정하여 배정하고 합격자 발표	교육감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 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입학
법조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7조 제①항		
비고	비평준화 지역은 당해 학교장이 선발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이 결정하고 합격자 발표	

체육특기자의 시도별 선발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II-9〉 체육특기자 시도별 선발규정

	선발종목	대상자규정	추천제	선발과정(협회체구성)
시 도 별 공 통 사 항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 경기단체 정식종목	다음 대회 입상실적 자 1. 문화관광부, 시.도 교육청 2. 대한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주최.주관하는 전국규모대회 및 시.도 최종예선 3. 기타 단체의 시.도 및 전국규모의 예선대회 4. 사.도 각종 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한 시.도 대회	학교장 및 경기단체장의 추천자 중 체육특기자선발현의회에 서 심의 확정된 자 문화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자	위원장을 포함 7-10인으로 구성 위원장은 교육국장 위원은 교육감이 선임 체육특기자의 선발 절차.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함

	선발종목	대상자규정	추천제	선발과정(협회체구성)
서울	여자종목- 축구 신설 (18종목)	입학정원의 3%	서울특별시고등학교입학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가 추천한 자 중 지역교육청 교육장에 의한 추천의 경우 인정됨	간사 1인(주관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체육청소년계장) 이하 공통사항과 동일
경기	공통사항과 동일	대회 입상 하한선 - 개인경기 3위 - 단체경기 3위	단체경기에 입상하지 못한 잔여 팀 중 팀당 우수 순위가 2위 이상인 팀의 선수	공통사항과 동일
대구	男- 44종목 女- 36종목	선수등록 후 1년이 경과하고 선수활동을 계속하는 자로서 시·도 단위 이상대회에 1회 이상 출전한 자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역 대표 선발자는 예외)	이하 공통사항과 동일	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 위원은 교육감이 임명 이하 공통사항과 동일
인천	이하 공통사항과 동일	입학정원의 3% 개인경기는 3위 이상 입상한 자 단체경기는 3위 이상 입상한 팀의 선수	단체경기에 입상하지 못한 잔여 팀 중 팀당 우수 순위가 2위 이상인 팀의 선수 시·도 교육감 추천한 자 중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가 심의확정한 자 이하 공통사항과 동일	이하 공통사항과 동일
대전	준가맹경기 단체의 정식종목도 포함	입학정원의 3% 이하 공통사항과 동일	이하 공통사항과 동일	본청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학무국장 본청위원회 위원은 교육감이 선임, 지역위원회 위원은 교육장이 각각 선임한다. 이하 공통사항과 동일
강원	중학교 男- 31종목	이하 공통사항과 동일	이하 공통사항과 동일	중학교 입학을 위한 특기자선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7인

	선발종목	대상자규정	추천제	선발과정(협회체구성)
	女- 24종목 고등학교 男- 40종목 女- 32종목			으로 구성 고등학교 입학에 위한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10인 으로 구성 이하 공통사항과 동일
충 북	男- 37종목 女- 32종목 이하 공통사항과 동일	이하 공통사항과 동일	단체경기에 입상하지 못한 잔여 팀 중 2인 이내의 우수선수 이하 공통사항과 동일	부위원장은 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은 초·고등학교장 및 체육계인사 중 교육감이 위촉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감과 업무교육 담당장학관 이하 공통사항과 동일
전 북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 등록된 종목 이하 공통사항과 동일	입학정원의 3%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 선수등록 후 1년이 경과한자 이하 공통사항과 동일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 이하 공통사항과 동일	위원장을 포함 7인 부위원장은 체육보건 교육과장 위원은 전라북도 전주교육청교육장, 전북체육고등학교장, 중등장학담당장학관, 초등장학담당장학관, 예·체능교육담당장학관으 로 함 위원회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함 이하 공통사항과 동일
전 남	총 47종목 이하 공통사항과 동일	입학정원의 3% 이하 공통사항과 동일	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자로서 이하 대회에 2회 이상 출전한 자 이하 공통사항과 동일	이하 공통사항과 동일

	선발종목	대상자규정	추천제	선발과정(협회체구성)
경북	男- 42종목 女- 34종목	이하 공통사항과 동일	이하 공통사항과 동일	이하 공통사항과 동일
경남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의 종목 중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종목	입학정원의 3% : 개인경기는 3위 이상 : 단체경기는 3위 이상 입상한 팀의 선수 이하 공통사항과 동일	단체경기에 입상하지 못한 잔여 팀 중 우수 순위가 1위 및 2위인 단체의 선수 이하 공통사항과 동일	간사는 경상남도교육청 특기자관리업무 담당 장학사 이하 공통사항과 동일
제주	男- 44종목 女- 36종목	이하 공통사항과 동일	이하 공통사항과 동일	이하 공통사항과 동일

3) 고등학교→대학교(대학학무과 소관)

(1) 선발방법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①항 및 ②항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대학진학에 관련된 사항은 대교협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학의 장이 선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 체육특기자의 전형방식은 정원 내 특별전형의 한 가지로 ‘특기자 특별전형’에 속한다. 특별전형은 보편적 교육기준에 의거한 일반전형의 원칙과는 달리 차등적 보상원칙에 의거한 전형방식으로 정원 외 특별전형과 정원 내 특별전형으로 구분된다. 특기자 전형원칙은 표Ⅱ-10과 같다.

〈표 II-10〉 특별전형의 전형원칙

- 대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자 선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차등적 보상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
- 대학은 다양한 특기와 적성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전형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음
- 대학은 전형원칙을 정할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활성화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함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대교협, 2011)에 의하면, 정원 내 특별전형의 유형은 특기자 특별전형, 취업자 특별전형,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산업대학 특별전형, 동일계 특별전형의 5가지이며, 정원 외 특별전형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등 7가지로 분류된다. 이중 특기자 특별전형의 기준은 표II-11과 같다.

〈표 II-11〉 특기자 특별전형의 기준

가. 특기자 특별전형

○ 자격심사

- 대학 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교과목 성적, 경력인정자료, 전국 또는 국제대회 성적 등의 전형자료에 기초하여 적격자를 공개전형으로 선발함(체육특기자 포함)
- 선발분야는 대학에서 자율 결정하되, 모집단위와 연계함

○ 자격기준 설정

- 특기자전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자격기준을 설정함
- 원칙적으로 분야별, 종목별로 당해 대학에서의 수학에 필요한 최저학력 기준을 사전 설정을 권장함

(2) 전형과정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입학할 허용하는 중고등학교 진학과는 달리, 대입의 경우 대학에게 전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선발규모, 사정방식 등의 과정은 대학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힘들지만, 분석결과 대다수의 대학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신입생 사정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체육특기자심사소위원회에서 기존 기록에 의거하여 경기력 등급을 판정하면, 이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1차 심사에서 수능성적, 학생부생활기록부 등 최저학력기준 도달여부, 경기력 성적을 합산하여 종목별, 성별, 세부종목별, 체급별 모집 인원대로 예비 사정을 실시한다.

절 차	주 체
특기자 대입전형 가이드라인 제시	대학교협
↓	
대학별 대입 전형기준 확정	대학 총장
↓	
경기력 등급 판정	특기자심사소위(감독 등)
↓	
1차 심사 (종목별 모집 인원 대상 예비사정)	전형관리위원회(교수 등)
↓	
2차 심사 (인원 사정 및 결원시 우선순위 확정)	전형관리위원회(교수 등)

〈그림 II-1〉 체육특기자 대입전형의 절차

이후 2차 심사에서 1차의 자료를 확인하여 각 종목별 모집 인원 사정과 결원이 되었을 경우 충원 순위 등을 확정하게 된다. 요약하자면 대학의 체육특기자 선발은 조건이 충족되는 선수를 대상으로 감독이 추천하면, 전형 위원회를 거쳐 최종결정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은 그림Ⅱ-1과 같다.

III. 체육특기자 대학입학의 양상과 원인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시스템과 사건검색 및 경찰청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하여 체육특기자 입시비리에 관한 수사 및 판결현황을 90년대 이후부터 자료를 조사한 결과 총 46건으로 매년 평균 2건 정도 발생됨을 알 수 있음
-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사건은 프로가 있는 단체구기 종목에서 이루어지며, 그 고발자가 자신의 자녀가 ‘끼워팔기’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학부모라는 특징이 있으며 ‘수사의 어려움’, ‘다수의 연루’, ‘구명운동’ 등의 이유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음
- 경찰 내사단계에서 코치나 감독의 소환조사가 있게 되고 공개수사가 진행되면, 학부모 및 학생선수들이 사건에 대한 집단적 은폐나 진술거부 등으로 인한 수사의 어려움이 있으며, 제공받은 금품이 후원금이나 발전금의 명목으로 전달했다는 진술을 통하여 배임수재에 관한 죄목을 회피하고 있음
- 체육특기자의 입시비리의 경우, 코치나 감독 등 입시비리 관련자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과 수수 금액이 타 범죄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및 해당 학교의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 관련 단체 등의 탄원서 제출 및 구명활동을 통하여 불구속으로 기소됨
- 법원의 판결단계에서도 배임수재의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과 무죄판결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명확하지 않는 특징이 있음
- 체육특기자 입시비리사건에 적용되는 형벌법규는 배임수증채죄, 뇌물죄, 업무방해죄, 사기, 횡령(업무상 횡령), 배임(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구분됨
- 체육특기자 입시비리의 근본적 원인은 학생선수가 정식입학과정을 밝기 전에 미리 합격자를 내정하는 스카우트 제도에 있음
 - 이는 현행법상으로 명백히 불법이며,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재하고 있으나 현재 대다수의 대학이 관행적으로 행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이런 관행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으나, 현재의 상태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었으며, 최소한 현재와 같은 정부의 대처방안은

실제로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스카우트 제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 문제점은 ‘학교중심적 선발구조’, ‘관리감독기구의 부족’에서 찾을 수 있음
- 한편 이 같은 문제는 단순히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낙수효과(落水效果)를 지니게 되는데 이에 따라 지도자의 영향력 강화로 인한 운동부 운영 비리의 발생가능성 증대, 학부모의 불법적 비용부담 증대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체육특기자의 대학입시비리 사건의 경우, 상급학교로 진학을 위하여 입학추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배임수재 및 뇌물수수 등이 가장 일반적이다. 또한 기타 심판 등을 매수하여 승부조작을 통한 입시부정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중 가장 대표적인 대학입시비리 사건으로 지목받고 있는 뇌물 수수 비리를 중심으로 이들의 실태와 그 원인 및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체육특기자 입시 비리의 양상

1) 체육특기자 입시 비리에 관한 수사 및 판결 현황

우선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시스템과 사건검색 및 경찰청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하여 체육특기자 입시비리에 관한 수사 및 판결현황을 90년대 이후부터 자료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의 경우 최종 판결된 경우만 판례정보로 제공되었는데, 이 경우 중간에 불거불충분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는 원 사건의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존재했다.

따라서 본 현황조사에서 나타난 자료를 제한적임을 전제한다. 즉 경찰의 수사단계와 검찰의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경우도 파악이 불가능하였으며,

전체 체육특기자의 입시비리 사건은 본 연구에서 조사된 판결보다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체육특기자의 입시비리에 관한 수사 및 판결현황조사의 대상은 총 46건으로 다음과 같으며 거의 매년 평균 2건 정도 발생하는 규모임을 알 수 있다.

〈표 III-1〉 학교운동부 입시비리에 관한 수사 및 판결현황

(2011. 9월 현재)

순번	년 월 일	사 건 명	관 할 청	경 과
1	1990년 10월 31일	축구선수 부정입학(배임수재)	대구지검 특수부	감독 구속
2	1993년 4월 17일	체육특기자 부정입학	호남경찰청	수사진행(기소X)
3	1995년 7월 15일	체조감독(한양대) 사기	서울 동부경찰서	학부모 고소
4	1995년 8월 7일	축구선수 부정입학(배임수재)	서울지검 북부지청	배임수재 혐의 축구부 감독 등 5인 구속
5	1996년 11월 7일	축구선수 부정입학(배임수재)	서울지검 북부지청	배임수재 혐의 감 독, 심판 구속, 학 부모 불구속
6	1997년 3월 18일	야구선수 감독 사기. 횡령	경기도 경찰청	학부모 고소
7	1998년 5월 27일	체육특기생 부정입학	서울지검 동부지청	감독 4명 구속 학부모 18명 입건
8	1998년 8월 20일	아이스하키 선수 부정입학 (배임수재)	서울지검 북부지청	감독 3명 구속
9	1998년 8월 21일	아이스하키 선수 부정입학 (배임수재)	서울지검 북부지청	감독 1명 구속
10	1998년 9월 10일	아이스하키 선수 부정입학 (배임수재)	서울지검 북부지청	감독 1명 구속
11	1998년 9월 15일	아이스하키 선수 부정입학 (배임수재)	서울지검 북부지청	국가대표 감독 구속
12	1998년 12월 11일	농구선수 부정입학(배임수재)	대전지검 특수부	감독 소환조사
13	1998년 12월 23일	축구선수 부정입학(배임수재)	부산지검 특수부	감독 구속

순번	년 월 일	사 건 명	관 할 청	경 과
14	1998년 12월 31일	씨름선수 부정입학(배임수재)	인천지방경찰청	감독 구속영장
15	1999년 1월 18일	축구선수 부정입학(배임수재)	부산지검 특수부	감독 구속
16	1999년 3월 17일	야구선수 부정입학(배임수재)	창원지검 특수부	감독 구속
17	1999년 4월 28일	축구선수 부정입학(배임수재)	서울지검 동부지청	감독 벌금형
18	1999년 8월 20일	태권도선수 부정입학(배임수재)	부산지검 특수부	감독 구속
19	1999년 10월 19일	야구심판위원장 편파판정 (배임수재)	인천 동부경찰서	심판위원장 구속영장
20	2003년 8월 27일	야구 편파판정(배임수재)	수원 중부경찰서	심판 3명 구속영장
21	2004년 10월 28일	축구선수 부정입학 (배임수재/배임증재)	서울지방경찰청	감독 5명 소환조사
22	2004년 12월 15일	축구선수 부정입학(배임수재)	경찰청 특수수사과	감독 7명, 브로커 1명 학부모 9명 불구속 입건
23	2005년 3월 23일	야구선수 부정입학(배임수재)	인천지검 특수부	감독 구속, 학부모 2명 불구속 입건
24	2005년 6월 16일	축구선수 부정입학(배임수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감독 불구속 기소 학부모 벌금
25	2006년 7월 24일	농구선수 부정입학(배임수재)	인천지법 특수부	감독 구속영장 기각
26	2007년 8월 16일	축구감독 배임수재 및 뇌물수수	서울북부지검	감독 구속
27	2008년 1월 28일	농구선수 부정입학(배임수재)	서울중앙지검	코치 구속영장 기각
28	2008년 10월 9일	운동부 감독 뇌물수수 및 횡령	경북지방경찰청	소환조사
29	2009년 7월 1일	야구선수 부정입학(배임수재)	서울서부지검	고교감독 구속
30	2009년 7월 20일	야구선수 부정입학(배임수재)	서울서부지검	대학감독 구속
31	2009년	축구선수 부정입학(배임수재)	대전지검 천안지청	감독 구속

순번	년 월 일	사 건 명	관 할 청	경 과
	7월 23일			
32	2009년 8월 19일	축구선수 부정입학(배임수재)	대전지검 천안지청	감독 구속
33	2009년1 2월 8일	축구선수 불법스카우트(배임수재)	대구지검 특수부	감독 구속
34	2010년 1월 27일	중학교 야구부 감독 배임수재 및 뇌물수수	수원지방경찰청	감독, 체육교사 소환조사
35	2010년 4월 26일	대학 축구부 감독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감독 구속 학부모 불구속
36	2010년 6월 14일	아이스하키 선수 부정입학 (배임수재)	수원지검 안산지청	감독 구속 학부모 불구속
37	2010년1 1월 16일	고교 체육교사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	울산 중부경찰청	불구속 입건
38	2010년1 2월 8일	체육교사 뇌물수수 및 횡령	충북지방경찰청	91명 입건 58명 불구속
39	2010년1 2월 10일	축구선수 부정입학(배임수재)	울산 중부경찰서	감독 불구속 입건 학부모 불구속 입건
40	2011년 2월 1일	축구선수 부정입학(배임수재)	대전지검 공주지청	감독 불구속 학부모 불구속
41	2011년 4월 14일	배구선수 부정입학 (배임수재 및 뇌물수수)	충북옥천경찰서	감독 불구속
42	2011년 4월 14일	축구선수 부정입학(배임수재)	울산중부경찰서	코치, 브로커 불구속
43	2011년 4월 14일	서울체고 체육교사 배임수재 및 뇌물수수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환조사
44	2011년 4월 27일	초등배구 감독 및 교장(배임수재)	서울서부지법	초등교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교장, 감독 벌금
45	2011년 7월 29일	학교법인 횡령.배임혐의 (스카우트비용)	대전경찰청	수사 중
46	2011년 8월 12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업무방해)	서울중앙지법	코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6	2011년 8월 21일	초등배구 감독 배임수재	서울서부지법	감독 벌금

※ 체육특기자의 입시비리에 따른 배임수재에 관한 사건만을 정리한 것이며, 학교운동부와 관련된 운영비 횡령 및 폭력사건 등은 제외하였음.

2) 체육특기자 입시 비리 사건의 특징

체육특기자 대학입시 관련 비리 사건의 특징을 고발과정, 수사과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고발과정의 특징 : 단체종목에서 내부고발자에 의한 문제제기

체육특기자 대입관련 사건은 프로가 있는 단체구기 종목에서 이루어지며, 그 고발자가 자신의 자녀가 ‘끼워팔기’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학부모라는 특징이 있다.

이른 바 끼워팔기란 스타플레이어 선수 1명에 3~4명의 후보 선수가 함께 진학하는 관행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스타플레이어가 1억 원의 스카우트비를 받고 입학하는 경우, 함께 입학하게 되는 후보 선수의 학부모가 모두 2억 원 정도를 각출한다. 이 돈의 용처는 대학의 스카우트비와 고교와 대학 감독에게 건네줄 돈 등을 포함한다(문화일보, 2000-02-15).

어느 관계자는 고교 감독이 돈 배달 구실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사이에 혼선이 빚어져 당초 약속했던 입학자가 바뀌는 경우(현장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배달사고’라고 지칭하기도 한다)에 이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법적 고발절차를 거쳐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상황을 역으로 살펴보면 고발자의 자녀가 당초에 약속대로 순조롭게 진학이 되는 경우 금품제공과 수수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를 시사하고 있다. 이는 이 문제의 해결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동시에 의미하고 있기도 하다.

(2) 수사과정에서의 특징 : 수사과정에서의 무마

해당사건은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이후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영장의 기각되는 경우가 많고, 영장까지 가더라도 실제 처벌이 되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그 이유는 ‘수사의 어려움’, ‘다수의 연루’, ‘구명운동’ 등에 있다.

① ‘집단적 은폐’나 ‘진술거부’ 등으로 인한 수사의 어려움

특히 배임수재의 재물에 대하여는 후원금이나 발전금의 명목으로 전달했다는 진술을 통하여 배임수재에 관한 죄목을 회피하고 있다.

② 다수 연루, 대가성 여부 증명불가로 인한 수사혼선

관련 사건의 경우 코치, 감독, 교수, 심판 등의 금품수수행위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성의 여부를 증명하기 힘들고,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입시비리의 경우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등 다양한 형태의 관계망(고교감독, 학부모, 대학감독, 대학교수, 학교관계자, 심판, 협회 관계자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체파악 또한 쉽지 않는 특징이 존재하기도 한다.

③ 구명운동

운동부의 감독이나 코치가 문제되는 경우 재학생 학부모는 학교 운동부의 운영 및 경기 출전을 이유로 해당 학교장 및 학부모, 선수들의 탄원서 및 구명활동을 펼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검찰의 기소를 통하여 확정판결까지 간다고 해도 처벌의 수위가 낮아 체육특기자의 입시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3) 체육특기자 입시비리에 관한 형벌법규

체육특기자 입시비리사건에 적용되는 형벌법규는 배임수증재죄, 뇌물죄, 업무방해죄, 사기, 횡령(업무상 횡령), 배임(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구분된다. 개별법규의 특성과 입시비리사건과의 연관성은 다음과 같다.

(1) 배임수증재죄(형법 제357조)

형법 제357조에서는 배임수증재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체육특기자 입시비리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범죄의 형태이다. 선수 또는 학부모 등이 학생선수의 상급학교 진학 및 대표선수로의 선발을 위하여 학교 운동부의 코치나 감독, 상급학교 관계자 및 협회관계자 등 관련자들에게 상급학교나 대표선수의 선발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57조(배임수증재)

-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일반적으로 배임수증재죄는 뇌물죄와 마찬가지로 쌍벌처벌의 범죄로 알려져 있다. 즉, 받는 자가 있어야 주는 자가 있고, 주는 자가 있어야 받는 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받는 행위(배임수재)와 주는 행위(배임증재)를 모두 처벌하는 범죄의 유형이다. 형법에서도 제357조 제1항에서 배임수재

죄를 규정한 후 제2항에서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자”도 처벌 받도록 규정하여 배임증재죄를 배임수재죄에 수반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체육특기자의 입시비리의 경우에 상급학교에 진학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한 코치나 감독 등 관계자의 경우 배임수재죄가 적용되며,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선수 또는 학부모의 경우는 배임증재죄가 적용된다.

(2) 뇌물죄(형법 제129조~제133조)

형법에서는 제129조부터 133조까지 뇌물죄를 규정하고 있다.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는 뇌물을 받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고, 제133조는 뇌물을 주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다.

뇌물을 받는 행위에 대한 규정에 있어 범죄행위의 주체는 공무원이다.²⁾ 체육특기자의 입시비리의 경우에는 국공립학교의 운동부 코치·감독 및 관계자, 교사, 교수 및 공무원에 준하는 체육단체의 코치, 감독, 심판이나 협회의 관계자 등과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선수 또는 학부모가 범죄행위의 주체가 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2) 법에서 뇌물을 받는 행위에 대한 규정에 있어 범죄행위의 주체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중재의 경우, 한국에서는 잘 발달되어 있지 않고 중재인이 뇌물죄로 처벌되는 예는 드물기 때문에 여기서 뇌물죄의 주된 주체는 공무원이라고 한다.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3조(뇌물공여 등)

①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형법 제314조에서는 업무방해를 규정하고 있는데, 체육계에서 승부조작

이 대표적인 예이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승부를 조작하여 해당선수들을 순위에 입상시켜 체육특기생으로 상급학교의 진학이나 대표선수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다. 승부조작의 경우에는 승부조작을 위한 코치나 감독, 심판, 협회, 선수 및 학부모 등의 주체로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의 수수 및 공여가 있다면, 배임수재나 뇌물죄로 처벌된다.

제314조(업무방해)

-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4) 사기, 횡령(업무상 횡령), 배임(업무상 배임)죄 등

체육특기생의 입시비리와 관련하여, 배임수증재죄와 뇌물죄, 업무방해죄 이외에도 사기죄, 횡령(업무상 횡령), 배임(업무상 배임) 등의 적용도 가능하다.

① 사기죄(형법 제347조)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형법에서는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다.

체육특기생의 입시비리의 경우, 코치나 감독 등 기타 관계자가 상급학교 및 대표선수로의 선발을 약속하고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후에, 상급학교의 진학이나 대표선수로의 선발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수수한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을 학부모나 해당 선수에게 돌려주지 않고 재산을 가로채는 수단인 기망인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³⁾

제347조(사기)

-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② 횡령(업무상 횡령), 배임(업무상 배임)

횡령과 배임은 형법 제355조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업무상 횡령과 배임을 규정하고 있다.

체육특기자의 입시비리와 관련하여는 상급학교의 진학 및 대표선수로의 선발 등을 위하여 학부모 등이 제공한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한 코치나 감독, 관계자 등이 배임수재나 뇌물이 아닌 학교운영비 명목으로 받아 사용하였을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제355조(횡령, 배임)

-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3) 이에 대하여, 상급학교 진학 및 대표선수의 선발을 위하여 선수 및 학부모가 금품을 제공하였는데, 진학이나 대표선수로의 선발이 불가능해진 경우, 코치나 감독, 또는 관계자가 금품에 대하여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학부모 등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 사기죄의 경우는 기망을 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여야 하는데, 상급학교의 진학 및 대표선수로의 선발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기망을 하였는가가 문제가 된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체육특기자 입시비리에 관한 수사 및 판결 유형의 사례연구

체육특기자의 입시비리사건은 여타 형사소송법상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진행된다. 먼저 경찰에서 첩보나 해당 관련자의 고소고발에 의하여 시작되며 이후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 전 단계와 기소 후 단계로 구분된다. 기소전 단계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의 단계로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기소후 단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뉘어지고, 임의절차로서 공판준비절차(참여재판 필수)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상의 절차를 마친 후 변론종결과 판결 선고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변론 종결 시까지 배상명령청구와 보석청구가 각 가능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종결되는 사건의 진행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여기서는 다양한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사건을 사안의 경중에 따른 구분하여 이에 대한 전형적 사례를 찾아내어 이를 분석한 사례연구를 실시했다.

각 사례연구는 ‘경찰수사단계’ → ‘검찰수사단계(구속 및 불구속 단계)’ → ‘법원확정판결 단계’로 구분된다.

(1) 경찰 수사 단계

경찰의 수사는 체육특기자의 입시비리 수사의 첫 단계로서, 경찰의 첩보나 고소 또는 고발로 이루어진다. 경찰의 첩보로 이루어지는 수사의 경우, 체육특기생의 대학입학관련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수수하거나, 배임수재의 혐의를 포착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학부모나 선수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는지의 여부와 수수한 금품을 대학 관계자 등에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수사를 하게 된다.

수사단계에서 코치 또는 감독이 인맥을 이용하여 대학 입시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한 결과, 첩보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수사를 착수하게 되었고, 경찰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따라 경찰은 해당 코치나 감독을 구속한다.

하지만, 이러한 수사단계에서 코치나 감독의 소환조사가 있게 되고 공개 수사가 진행되면, 학부모 및 학생선수들이 사건에 대한 집단적 은폐나 진술거부 등으로 인한 수사의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배임수재의 경우 제공 받은 금품에 대하여는 후원금이나 발전금의 명목으로 전달했다는 진술을 통하여 배임수재에 관한 죄목을 회피하고 있다.

특히, 체육특기자의 입시 비리의 경우 코치, 감독, 교수, 심판 등의 금품 수수행위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성의 여부를 증명하기 힘들고, 입시비리의 경우 조직적으로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등 다양한 형태의 관계망으로 통하여 이루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고 실체파악 또한 쉽지 않다.

(2) 검찰 수사단계 (구속 및 불구속 기소 단계)

경찰의 수사에 의하여 체육특기자의 입시비리와 관련한 혐의가 인정되

어도 구속되어 기소되는 경우와 불구속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학교 운동부의 감독이나 코치가 해당 사안으로 구속될 경우 학교 운동부의 운영 및 경기 출전을 이유로 해당 학교장 및 학부모, 선수들의 탄원서 및 구명활동을 통하여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전까지 계속해서 해당 학생들을 지도하는 경우가 다반사 이다.

이에 대하여는 대검찰청 예규에 의한 구속수사기준에 관한 지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속수사기준에 관한 지침은 피의자의 구속 수사에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무죄추정과 임의수사원칙에 따라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범죄혐의(제4조)나 주거 부정(제5조), 증거 인멸의 염려(제6조)의 기준에 따라 구속과 불구속이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범죄 유형별 기준에 의하여 사기, 횡령, 배임 사범(제16조)의 경우 범행의 경위와 수단, 피해 금액, 피의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전력 및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고 구속여부를 결정하고, 적극적·계획적 기망행위로 다액을 편취하거나 장부 조작 등 신뢰 관계의 본질을 침해하여 다액을 횡령·배임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체육특기자의 입시비리의 경우, 코치나 감독 등 입시비리 관련자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과 수수 금액이 타 범죄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및 해당 학교의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 관련 단체 등의 탄원서 제출 및 구명활동을 통하여 불구속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다.

(3)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의 경우는 유죄와 무죄의 판결로 구분된다. 유죄의 판결의 경우, 배임수재사건은 확실한 증거에 의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진

다. 즉, 배임수재 사건의 경우 체육특기자의 상급학교 및 대표선수로의 선발에 의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이에 대한 금품이 수수 및 전달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로 판결이 된다.

이에 대하여 전달된 금품 등이 학생선수의 진학 및 대표선수의 선발을 위한 대가성을 증명하기가 힘들고, 학부모나 선수 등의 법원에서 진술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학교 발전을 위한 후원금이나 발전기금의 명목으로 전달했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상급학교의 진학에 대한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무죄판결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는 지난 2007년 '아이스하키 특기생의 부정입학'사건의 판결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위 사안은 고등학교 학생을 특기생으로 뽑아주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수 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명 사립대 아이스하키부 감독 2명이 기소되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엇갈린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한 판결은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대 아이스하키 감독인 김모씨에게 무죄를, Y대 아이스하키 감독인 윤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고려대 김모 감독은 전임 최모 감독을 통해 K고 3학년에 다니던 학생의 입학 청탁을 받은 뒤 학부모로부터 2006년 11월~올 1월 3차례에 걸쳐 5천 만원을 받고, 연세대 윤모 감독은 2003년 12월~2004년 1월 유모씨와 함께 또 다른 K고에 다니던 최모 선수의 어머니로부터 입학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감독에게 돈을 건넨 선수들은 모두 해당 대학에 실제 합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 및 법정에서 증인들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김씨가 학생의 고려대 입학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이를 대가로 후원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돈을 준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의 대학 입학에 대한 대가로 후원금을 교부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 해도, 김씨가 그런 대가 관계를 인식하고 묵시적으로

나마 이에 합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김씨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학교에 후원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막연히 이를 기대했다는 것만으로 배임수재의 범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연세대 윤모 감독에 대해서는 "대학생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을 뿐 아니라, 중국적으로 대학진학이 부모의 재력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를 발생시켜 오랜 세월동안 아이스하키에 매진했던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큰 좌절감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위에 판결에서도 보듯이 배임수재의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과 무죄판결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명확하지 않는 재미있는 판결이다. 이렇듯 체육특기생 입시비리에 관한 법원의 판단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체육특기자 입시 비리의 원인 및 파급효과

체육특기자 입시비리의 근본적 원인은 학생선수가 정식입학과정을 밟기 전에 미리 합격자를 내정하는 스카우트 제도에 있다. 이는 현행법상으로 명백히 불법이며, 이에 대학입학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제재하고 있으나 현재 대다수의 대학이 관행적으로 행하고 있다.

실제로 대학은 특기자 전형에 있어 한국대학교육협회의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특기자 특별전형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규정의 포괄성과 전형과정에서 외부자의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스카우트제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관행은 학생선수의 대학입학과 관련된 대다수를 불법적인 상황으로 몰고 갈 우려

가 있어 시급한 개선을 요한다 하겠다.

1) 비리의 근본원인 : 대학입시에서의 불법 스카우트제도 운영

스카우트의 사전적 의미는 ‘우수한 운동선수 또는 연예인, 특수 기술자와 같은 인재를 물색하고 발탁하는 일’이다. 즉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업무에 유능한 인재를 찾아내어 활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공개적 채용과정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투명한 선발절차는 아니지만, 특별한 근무조건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무의 경우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인재 등용 방법이다.

그러나 학생선발과 관련하여 대학에서 스카우트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지만, 이와 체육계는 이를 관행적으로 실시해왔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1) 스카우트 제도 불법성의 근거

특정 운동선수를 대학입학과정에서 스카우트를 통해 사전 선발하는 것은 명백히 고등교육법에서 요구되는 공정성 및 투명성에 위반되는 사안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및 41조, 대교협의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언급한 사안을 들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34조는 『특별전형은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전형과 달리 특별전형에서 발생하기 쉬운 투명한 관리에 대한 강조라 할 수 있다. 또한 동법 33조를 통해 대학의 학생선발은 ‘대입전형시행계획에 따라 이루어짐을 전제로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후 대교협으로 통일함)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후 대입전형시행계획은 대교협이 정한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43조는 『회원대학의 장은 대학협의체(여기서는 ‘대교협’)가 정한 모집별 선발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대학교육협의회의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특기자 특별전형(체육특기자 포함)은 대학 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교과 및 교과 외 활동 등의 전형자료에 기초하여 적격자를 공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2) 정부 부서의 근절 노력

교육과학기술부(2011)는 이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체육특기자의 대학입학 불법 관행을 차단하고자 다양한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98년 이후 다음과 제재방안을 두고 있는데 그 조치는 다음과 같다.

- 비리 대학은 행·재정적 제재 및 관련 학과 연구비 지급 정지
- 비리 당사자는 고발·파면 등 강력조치
-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
- 체육특기자 운영경비 내역의 공개
- 대학별 특기생 선발비리 근절 대책을 대학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교과부에 보고
- 수험생은 입학 이후라도 부정입학 사실이 밝혀지면 입학을 취소 한다는 사실의 모집요강에 명시

또한 교과부는 예·체능계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0학년도와 2001학년도 대입전형에서 대학별로 예체능계 전형 공정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조치하였고, 이에 따라 2002학년도 대입전형부터 각 대학이 공정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대학입학

전형 기본계획에 명시하였다.

이에 대교협은 2009학년도부터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특기자 특별전형(체육특기자 포함)은 대학 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교과 및 교과외 활동 등의 전형자료에 기초하여 적격자를 공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게 되었다.

(3) 사전스카우트 제도에 대한 현장 의견

전문가 면담을 통해 사전 스카우트 제도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면담대상자가 속해 있는 12개 전체 대학에서 대학입학전형기준과 별도로 실제적으로 사전 스카우트를 실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런 관행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으나, 현재의 상태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었으며, 최소한 현재와 같은 정부의 대처방안은 실제로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다.

① 정부조치에 대한 의견 : 부정적 의견 피력

면담에 응한 대다수의 전문가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현장의 변화를 유도할 만큼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의미로 해당조치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사전조치의 미흡과 전형구조의 문제를 들고 있다.

사전조치의 미흡이란 지금까지 정부의 조치가 입학과정의 비리를 선진적으로 제거 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상태라는 의미이다. 즉 현재 현장의 조치와 감독은 관련 비리가 적발되지 않는다면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정부가 이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유수의 사립 대학교 교수인 F는 이런 사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대입전형을 학교자율로 하고 있고 그 원칙(대교협이 전형기준)이라는 게 허술해서 이리 저리 하다보면 빠져 나갈 수 있죠. 게다가 정부는 문제에 대한 강력한 감사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담당할 인력이나 시스템이 부족해서 적극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런 문제가 벌써 몇 년 째(계속 되었는데) 인데, 그 사람(대학의 감독과 코치)들이 그런 걸 모르겠어요. 사실 간혹 가다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학부모의 불만만 잠재우면 시끄러울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2011-09-17, 면담대상자 F 교수).

가. 체육특기자 운영경비 내역의 공개 : 관련 자금을 알 수 없는 구조

또한 지적할 바는 관련 정부 정책 중 한 가지인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 및 ‘체육특기자 운영경비 내역의 공개’와 같은 조치는 현장을 변화시키기 힘들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가칭)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를 직접 운영한 보직경험이 있는 교수 K는 이런 사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체육특기자 운영경비 내역의 공개’라는 정부의 조치는 스카우트과정에서 돈이 오가는 경우가 없다는 측면에서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대학에서 스카우트를 할 때 움직이는 것은) 돈이 아니야. 입학 TO를 주잖아. 우수한 선수 A에게 우리학교에서 뽑아 줄 테니까 ‘너에게 TO를 3자리 준다. 그러면 알아서 와라’. 이런 식이야.

(한 개 대학에서) 보통 한 종목에 뛰는 출전선수의 2~3배의 인원을 뽑아요. 농구 같은 경우 한 학년에 5명 정도가 적정수 인데, 많게는 1학년 한 학년에 9~10명을 뽑아요. (한 팀의 인원) 36명이라는 이야기 인데, 무슨 5명이 뛰는 농구에 36명을 뽑냐고.

그리고 실제로 훈련할 때 가보면 애들이 없어. 많아야 15명 있지 나머지는 어

디 갔냐 이거야. 그러면 그 돈이 이면을 내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 그런 경우로 흘러갔어(2011-10-11, 면담대상자 K교수, 1차면담).

정리하자면 대학은 스카우트 대상선수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학교의 입학 TO를 몇 개 주고, 이를 매개로 학생과 거래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운영경비 내역을 밝힌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나.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 : 감독권한 강화로 인한 위원회의 부실화

모든 대학에서 대학마다 구체적 명칭은 다르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조처한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를 두고 이를 통해 전형과정을 총괄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같은 기구는 사전 스카우트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인데, 이는 그 기구의 운영이 형식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P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같은 기구를 설치한 이유는 체육특기자의 대입선발이) 입학시험이고 그 특성상 그렇게 되면 이미 사전에 학생을 지명해 놓고 뽑는 사전스카우트가 말이 되느냐 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일단은 공개경쟁 입학시험의 형식을 빌려온 겁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스카우트 제도이지요. 지원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스카우트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인하고자 하면, 한번 그 대학의 입학전형에서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면 금방 나와요. 특기생의 경쟁 비율은 거의 1:1정도가 됩니다. 가끔 뜻밖에 지원을 한 지원자 때문에 경쟁률은 약 1.1:1 정도가 되기도 하죠. 현실적으로 당신이 고등학교 코치라도 모 대학에서 미리 어떤 사람을 뽑고자 하는지 다 아는

상태에서 자기 학생을 지원을 시키겠습니까? ...(중략) 현재의 (전형) 형태는 자유 경쟁 형태로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다 형식적인 거죠. 어디든 다 마찬가지죠 (2011-11-22, 면담대상자 K교수). 한편 대학운동부의 운영을 위해 이 같은 사전 스카우트제도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사전 스카우트제도가 아닌 자유경쟁체계에 의한 대안으로는 학교, 특히 감독이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 P교수는 이 같은 사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명문사립이라면 몰라도 우리 같은 처지에서는 자유경쟁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학교 쪽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의 소지도 있죠. 우리가 공고를 (축구에서) 공격수라고 내도 본인이 공격선수인지, 수비선수인지 구별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키퍼라면 다르겠지만.... 농구도 마찬가지예요. 학생이 포드진의 센터라고 하더라도 중학교 때는 센터 했었다고 하고 지금은 아니라고 하면 학교 측에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정말 말하고 싶은데..... 감독마다 전술적 차이가 있어요. 대표팀 구성을 보면 아무리 우수한 선수라도 감독에 따라 (주전)선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보실 겁니다. 박지성 같은 특급선수는 그렇지 않겠지만, 고만고만한 선수들은 감독이 구사하는 전술적 필요에 따라 선호하는 선수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비전문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2011-09-17, 면담대상자 p교수).

정리하자면 현장에서는 운동부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지도자의 필요에 의해 사전 스카우트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선발과정에서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의 역할은 일정부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관행에 의해 대학 지도자의 운동부 조직 운영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그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런 사정은 특히 명문 사립대의 경우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이는 스카우트 비리와 관련된 문제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소위 명문사

립의 K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스포츠 과학 시스템이 접목 안 되는 곳이 대학교 운동부야. 체육과 선생들에게 다 물어봐. 자기가 그 학교 체육위원회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한 발짝도 못가. 가서 이야기 해봐야 개네들이 들어주지를 았으니까. 그러니까 더러워서 안 가는 거야. 그리고 체육과 교수 ‘네가 뭐냐’는 식이지(2011-12-22, 면담대상자 K 교수).

(4) 한국형 스카우트의 특징 및 문제점

학생선수의 대학입학과정에서 사전 스카우트는 그 자체로 대학입시의 근본방침이라 할 수 있는 자율경쟁체제에 위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기자 입시비리의 근본 원인으로 파악된다.

여기서는 앞서 언급한 선발과정에서의 개방성 부족이라는 위법적 측면을 제외하고, 우리의 스카우트 제도에서 나타나는 여타의 문제점을 ‘학교중심적 선발구조’, ‘관리감독기구의 부족’이라는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① 학교중심적 선발구조

현행 스카우트제도의 운영구조는 학교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개별 대학이 자신이 원하는 운동선수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구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는 프로팀의 신인 드래프트과정보다 비합리적이고 비교육적이다.

우선 당해연도의 모든 신입선수들을 대상으로 이를 원하는 모든 구단이 정해진 절차에 의해 선수를 지명하고, 추첨에 의해 선수를 결정하는 드래프트 제도에 비해 스카우트의 과정은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뒷거래라는 측면에서 비합리적이다. 또한 자신의 자금을 이용하여 선수를 유인하기보다, 이른바 ‘끼워팔기’를 전제로 입학정원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육적이다.

한편 해당대학에 지망하는 학생선수의 입장에서 이 제도를 고찰해보면 제도의 학교 중심적 측면은 크게 부각된다. 우선 지적하고 싶은 바는 일반 학생의 대학진학과 체육특기자로서의 대학입학은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첫째, 체육특기생 입학과정에서 재수(再修)란 존재하지 않는다.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교졸업 당해 연도에 입학하지 않으면 경기경력으로 입학이 좌우되는 체육특기자의 자격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수 C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학생선수의 재수는) 형식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특기자 조건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재수가 가능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2년 전의 성적까지 조건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요.

문제는 재수하는 동안 단체종목 등에 있다면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는 거죠. 개인종목은 혼자서 연습을 한다든지, 전에 소속되어 있던 팀에서 연습을 한다든지 하지만 단체종목의 경우, 1년 정도 제대로 운동을 하지 못했을 경우 실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전형과정에서) 실기고사를 보지 않으니 평가를 받을 수 없고요.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모대학교의 경우, 2012년도 입학생을 뽑는다면 2011년도 3위 이상의 입상자, 2010년도는 2위 이상, 2009년도는 금메달 이상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재수를 해도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검증되어야 뽑아도 당장에 선수를 투입할 수 있기에 외형적인 조건만 갖춘다고 해서 실제로 필요한 선수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둘째, 일반전형으로 대학진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다수 학생선수는 체육특기자제도를 통해 자녀가 지금까지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서 학습능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로서 일반전형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선수는 더욱 대학진학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즉, 스스로가 운동에 소질이 없어서 실업 및 프로선수 생활까지 바라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사회적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학 졸업장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강박감이 더욱 커지게 되는 상황인 것이다.

더욱이 이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전형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대한체육회 명의의 지원서가 1부 밖에 발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대한체육회의 선수관리 규정 13조 ‘지원서의 관리’의 3항을 통해 ‘진학 및 취업에 이용되는 지원서는 본회 경기단체가 본회로부터 지급받아 관리하여 진학 또는 취업코자 하는 선수에게 1인 1매로 한정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선수는 원칙적으로 졸업하는 해당학년에 특정대학에 1회만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재수가 불가능한 것을 감안하면 당해 연도 특정학교에만 입학이 가능한 한계가 있다 하겠다. 이에 대해 입학을 앞둔 학부모 O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능력이 되는 선수야 (이 제도가) 좋죠.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이 건...(중략).... 눈앞에는 대학이라는 호랑이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총알 한방만 주고 이걸 잡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호랑이의) 급소에 명중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감독들에게 매달리는 거죠.

② 관리 감독기구의 부실

현장의 도덕적 해이가 이 정도까지 이른 이유에는 대입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기구 부실의 문제가 존재한다. 관리 감독기구 부실의 사례는 대학 입학에서 현장에서 관행화되고 있는 대다수의 규정이 법적 정당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현재 대한체육회의 지원서 1부 발급규정 등 체육특기자 대학입시 관행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에서 (지원서를) 한 부만 발급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교육관련법) 어디에도 없어요. 법률적으로는 대교협만 그 절차에 개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대교협이 정한 절차 아닌 다른 어떤 기관(대한체육회)이 자기의 권한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는 겁니다. 대교협의 규정은 공정하게 경쟁하라는 일반적인 룰 밖에 없어요. 그것 조작 어기고 있는 것이지요....(중략)... 법적으로만 따지면 지금 현재 체육 특기자 관련된 내용들은 불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체육특기자 대학입학전형방법에 관여되는 주무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이며, 이중 학교체육을 담당하는 학교건강안전과와 대학입시 전반을 관리하는 대입제도과로 양분되어 있다. 양측 담당자와의 면담결과 체육특기자의 대학입학이란 사안은 서로의 주관업무에서 어느 정도 비껴있는 분야이고, 대학자율이라는 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도 쉽게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현재 체육특기자의 대학입학과정에서 어떤 선수가 어느 종목에 어떤 과정을 거쳐 얼마나 가고 있는가에 대한 정부의 공식통계조차 없는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다 할 수 있다.

2) 체육계 입시비리의 파급효과 : 중, 고등학교운동부에 대한 부정적 영향

한국사회에서 대학진학이 지니는 위상을 생각하면 대입선발과정은 단순히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낙수효과(落水效果)를 지니는 중요한 사안이다. 더욱이 현재 빠르면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진학을 목표로 운동을 시작하고 있는 학생선수의 입장을 감안컨대 그들이 느끼는 체육특기자의 대학입학과 관련된 문제는 일반학생의 그것보다 절박한 실정이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제정된 지 약 30여 년 간 부분적 개정이 있을 뿐, 지금까지 그 제도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체육특기자 제도와 대입과정에서의 스카우트 관행에 따라 중, 고등학교 운동부는 직접적 영향을 받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도자의 영향력 강화로 인한 운동부 운영 비리의 발생가능성 증대⁴⁾
일부 종목에 국한되지만 일선 중, 고등학교 운동부의 지도자의 권한, 특히 학부모에 대한 영향력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① 지도자 영향력 강화의 원인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지도자의 영향력이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는 이유는 학생의 진학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그가 좌지우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체육특기자 대입 선발과정에서 고등학교에서 지도자가 권한이 크기 때문인데, 현행 스카우트 제도의 폐쇄성으로 인해 체육특기자 대학진학에 있어 고등학교 감독은 학생선수와 학부모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4) 이하 내용 ‘체육과학연구원(2011) 학교운동부 학부모 비용경비부담 완화방안’에서 재인용

진학 창구로서 기능하게 된다. 면담결과 ‘끼워팔기’의 대상선정이나 금액의 전달까지 고등학교 지도자가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는데, 이 같은 이유로 학부모에 대한 지도자의 권한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둘째, 경기장에서의 선수기용에 대한 권한을 지녔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대학이 체육특기생 전형과정에서 실기시험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경기력을 측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종목의 경우 경기출전시간 및 경기에서의 기여도와 같은 경기실적은 대학진학에 있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선수 개인의 경기실적을 올릴 수 있는 기회자체를 지도자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권한은 강화될 수 있다.

② 지도자의 영향력 정도

이에 대해 학교 내에서 이를 제재할 방법이 그리 많지 않다. 학교 운동부와 관련된 학교의 인력은 주로 행정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주로 체육교사가 담당한다)인 ‘감독교사’가 있는데, 학부모에게 감독교사보다는 지도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감독교사는 이와 관련된 상황을 통제하기 보다, 지도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한 마디로 (고등학교) 일선 지도자는 “황제”입니다(중략).... 부모들은 자기 아이의 진로의 칼자루를 쥔 사람이 코치이고 그 사람의 요구에 자유롭지 못하니까 이런 비합법적인 음성자금을 모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감독이 모르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거죠. 감독(교사)이 알면서 묵인하는 관계가 아니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게 대부분 축구와 야구와 같이 아이들도 많고, 진학에 예민한 종목에서 더 복잡하게 고착화되어 있죠. 코치(지도자)들이 힘들어서 못해먹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만두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요(전직체육교사 O, 2011- 7-11).

전문가들은 운동부에 대한 지도자의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사

례 중 한 가지는 지도자의 해고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때라고 한다. 그들의 진술에 따르면 특정 지도자가 팀 운영에 있어 문제가 누적되어 학교에까지 그 문제가 노출되어 징계가 불가능할 경우에 이르게 되면, 일부 지도자는 지금까지 축적한 자신의 능력을 기반으로 팀을 해체하도록 유도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들의 진술에 따르면 학교가 지도자의 해임을 언급하게 되는 경우 학부모는 두 부류로 갈라진다고 하는데 이는 지금까지 지도자에게 여러 가지 공을 들인 쪽과 지도자에게 반대하는 쪽이다.

이때 문제의 지도자는 자신에게 호의적인 쪽에게 자신이 추천하는 학교의 팀으로 이적을 시켜준다는 조건으로 그 운동부에서 탈퇴하도록 유도한다. 그런 상황이면 이미 학부모 간에 감정의 금이 갈만큼 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도자에게 호의적 학부모의 자녀는 거의 팀을 떠난다고 한다. 이 경우 기존의 팀은 선수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에 나갈 수 없게 되버려서 고사되거나, 아닌 경우 팀은 해체되는 수순을 밟는다고 한다.

(한 쪽은) 전임지도자를 추종해서 간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여기 남겠다고 하면 팀이 유지가 되지 않고,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교장들은 머릿속에 박힌 게 골치 아프고 시끄러운 거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딱 선택의 길은 농구부 해체예요. 백이면 백, 그 길을 택해요.

그러면 결국 해체가 되면 (지금까지 운동했던) 아이들은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남은 쪽은 풍비박산이 나는 것이고 떠나 버린 쪽도 마찬가지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이적한 팀에서는 그 아이들을 잘 쓰지 않아요. 아주 훌륭한 편이 아니면 낙동강 오리알인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주 훌륭한 편이었으며 그 전에 (전임) 지도자에게 그렇게 공을 들였겠습니까? 한 마디로 그 지도자는 마지막까지 이 아이들을 담보로 브로커 노릇을 한 겁니다(체육교사 N, 2011-8-12).

(2) 학부모의 불법적 비용부담 증대

체육과학연구원(2011)는 일선 고등학교 운동부의 회계장부를 근거로 운동부의 운영경비를 사례 조사한 바 있다. 그 연구는 회계장부의 각 항목을 분석하여 이들을 정상회비와 비정상회비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정상회비는 학교발전회계의 학교발전기금으로 분류되어 사용되어진 금액을 의미하며 비정상회비는 발전회계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은 지출금액을 의미한다.

그 결과 총액대비 정상경비와 비정상경비의 비율을 살펴보면 정상경비는 총액대비 82.0%이며, 비정상경비는 18.0%였으며 비정상경비는 5,25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은 이와 관련된 비용이 상당한 규모였다. 비정상경비는 각종 회식비, 접대비, 축의금 및 찬조금, 기타 등의 4가지 항목으로 분류된다.

이중 회식비는 전체 비정상경비의 5.6%, 접대비 5.9%, 축의금 및 찬조금 7.1%, 기타 81.5%의 비율로서 기타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한편 기타의 세부항목별 내용을 분석해보면 비정상경비의 불법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우선 기타의 세부 항목중 2,037만원(기타 총액대비 44.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개인입출금은 지도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의미한다. 위낙 경비지출과 관련된 빈도가 높고, 용처도 다양해서 당시 해당 고등학교는 지도자 명의의 카드를 발급했다고 한다. 이외에 상여금, 코치진 지시사항 판공비 등의 항목이 직접적으로 지도자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었으며, 연간 지도자 핸드폰 비용으로 202만원이 소요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음성적 비용은 두 가지 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학부모의 비용부담 증가와 공범의식 제고의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체육과학연구원(2011)에 따르면 학생선수 학부모는 기본적으로 정상경비 지출은 자녀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필요한 당연한 비용부담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비정상경비의 지출에 대한 불만은 매우 높았는데, 이는 학부모의 운

동부 활동 만족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이는 단순한 비용지출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금을 모으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자신이 지도자와 한배를 탔다는 공범의식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학부모와의 면담결과 최근 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운동부 투명성 강화와 관련된 문제 지적이 많아지면서 스스로가 이를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어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죄의식이 커지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 같은 요인은 운동부 지도자의 비리에 대한 유일한 내부고발자로서 학부모를 위축시켜 그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 한 가지로 작용하기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소결 : 체육특기자 대학입학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앞서 지적되었던 내용에 의거하여 체육특기자 대입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입시비리의 만연 및 법적 처벌의 한계

비록 일부 종목에 국한되어 있지만, 1990년대 이후 입시비리에 관한 수사 및 판결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46건으로 거의 매년 평균 2건 정도 발생하는 규모로 발생되고 있었다. 이는 경찰의 수사단계와 검찰의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경우도 파악이 불가능했다는 사례연구의 한계 상 더욱 확대 해석해야 할 수치이다.

해당사건의 고발자는 주로 자신의 자녀가 ‘끼워팔기’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학부모라는 특징을 감안한다면 순조롭게 진학이 되는 경우 금품제공과 수수행위가 있더라도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비리의 빈도는 더욱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건의 진행을 살펴보면 ‘수사의 어려움’, ‘다수의 연루’, ‘구명운동’ 등으로 인해 법적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2) 스카우트의 불법성에 대한 현장의 인식부족 및 대안부재

현행법 상 스카우트는 사전에 입학자를 내정한 상태로서 명백히 불법이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정부는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 등 중간관리기구를 동원하여 이 같은 관행을 통제하고자 하지만 그런 기구 조차 감독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3) 학교중심적 선발구조 : 비교육적 제도운영 및 학생의 진학기회 제한

현행 스카우트제도의 운영구조는 학교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특정 대학이 자신이 원하는 운동선수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뒷거래의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비합리적이며, 관련비용이 ‘끼워팔기’를 전제로 입학정원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육적이다.

또한 일반 학생의 대학진학과 체육특기자로서의 대학입학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들의 경우 재수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한적이고 일반전형을 통해 진학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대한체육회 명의의 지원서가 1부 밖에 발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교졸업 해당년도에 특정 학교에만 입학기회를 주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4) 관리감독기구의 부실

현재 체육특기자 대학입학과 관련된 불법성이 여전히 존재해도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적, 정책적 체계가 미흡한 상태이다. 이는

이 사안과 관련된 유관정부부서가 학교체육을 담당하는 학교건강안전과와 대학입시 전반을 관리하는 대입제도과로 양분되어 있으며, 대학자율이라는 한계로 인해 행정력의 개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민간기구인 한국스포츠총장협의회는 경우 회원학교에 대해서만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과 창립초기이기 때문에 관련 사업에 대한 역량이 아직까지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5) 고등학교 운동부의 파행적 운영

체육특기자 대학입시의 파행적 운영은 단순히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낙수효과(落水效果)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한 일선 중, 고등학교의 파행적 운영은 ‘지도자의 영향력 강화로 인한 운동부 운영 비리의 발생가능성 증대’와 ‘학부모의 비용부담 증대’로 구분된다.

현재 일선 중,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황제로 불릴 만큼 학부모에 대한 영향력이 큰 상태인데 이는 학생선수의 진학과 관련된 유일한 창구이자, 경기실적에 대한 결정자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불법적 자금 조성 등 운동부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학부모의 비용부담 증대도 문제로 간주된다. 일부 사례 조사에 따르면 운동부 전체경비 중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총비용 중 불법적으로 조성한 자금이 약 18.0%에 달하는데 이는 대부분 지도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이다. 이 같은 관행이 만연화 됨에 따라 학부모의 부담 증대 만이 아닌 학부모의 공범의식도 함께 높아져서, 각종 비리에 대한 고발 가능성이 낮아져 현장에서 비리의 적발가능성 또한 악화되고 있다.

IV. 해외사례 조사

- 해외사례 조사의 대상국은 일본과 미국으로 양 국가는 지역사회의 클럽이 선수의 발굴과 양성의 기반이 되는 유럽국가와 달리, 우리와 같이 학교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이기 때문임
- 일본의 대입제도에서 우리의 ‘체육특기자’의 대학 진학과 가장 유사한 제도는 ‘추천입시’이며, 이는 문부성에 의하면 「특별한 능력을 가진 학생이 해당 대학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질과 자격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학력검사를 면제한 별도의 절차를 통해 선발하는 방식」을 의미함
-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기준은 학생선수의 입학 후 수학능력(修學能力)인데, 이는 학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소위 인지도가 높은 대학일 수록 그 기준은 엄격함
 - 스포츠를 통한 「추천입시」에서 지원자의 운동 능력은 필요조건의 하나일 뿐 충분조건은 되지 못하는 구조임
- 또한 이 제도에 대해 문부성은 자체 제작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통제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그 절차를 「조사서」, 「면접」, 「소논문」, 「실기검사」로 분류하고 있었음
 - 조사서는 학교장 명의로 작성된 지원서로서 여기에는 학력사항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됨
 - 면접은 인성부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고, 소논문은 논술에 해당함
 - 실기는 예체능계열의 실기시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예외없이 모든 인원이 이런 검사를 통과해야 함
- 한편 미국은 일반 전형과정에서 대학자율을 크게 인정하고 있지만,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
- 미국 체육특기자 대입제도 관리운영은 민간기구인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에 의해 이루어짐
- NCAA는 체육특기자로서 대학진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학업기준과 아마추

어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이 같은 사례에서의 시사점은 전체 전형과정에 대한 국가적 통제와 교육적 적합성에 의거한 제도운영이 필요하다는 사실임

해외사례 조사의 대상국은 일본과 미국이다. 양 국가는 지역사회의 클럽이 선수의 발굴과 양성의 기반이 되는 유럽국가와 달리, 우리와 같이 학교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이다.

양 국가는 한국적인 의미에서의 체육특기자제도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있지만, 이와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의 공통점은 대입과정에서의 교육적 적합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 일본의 사례⁵⁾

1) 일본 대학입학 제도의 개관

일본의 고등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일반입시」, 「전문학교 및 종합학과 졸업생입시」(우리나라의 동일계 진학과 유사함), 「추천입시」, 「귀국자녀입시」가 그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체육특기자’의 대학 진학은 굳이 찾자면 「추천입시」에 해당한다.

「추천입시」란 문부과학성이 설명하고 있듯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학생이 해당 대학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질과 자격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학력검사를 면제한 별도의 절차를 통해 선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때 추천의 의미는 특정 스포츠의 능력이 일반 학생보다 출중하여 학력검사를 면제할 정도에 도달하였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추천입시」에는 스포

5) 다음은 ‘김정효(2011). 일본의 체육특기자제도, 체육과학연구원 : 스포츠과학 117’에서 재인용함

츠만이 아니라, 수학, 과학,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방면의 능력이 포괄되어 있다. 스포츠는 다만 학생의 능력을 파악하는 여러 방법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스포츠만을 위한 특별한 입시전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평등의 위배에 해당한다.

(1) 교육의 평등주의적 관점이 만든 일본 특유의 체육특기자 제도

평등은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전후 일본이 추구한 교육이데올로기의 핵심이다. 이는 교육 분야에서 모든 국민이 차등 없는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국가적 의무를 규정함으로서 구현된다. 일본의 교육시스템은 스포츠 활동의 평등권이 특히 잘 보장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권리는 곧 국가가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시설 기반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의 클럽활동(부활동-部活動으로 불린다)은 이러한 요구를 교육적으로 수용한 결과이다. 「부활동」이란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동일한 관심과 흥미를 가진 학생들이 스스로 조직, 운영하는 ‘방과후 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학생들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음악, 미술, 서예, 스포츠 등 다양한 취미생활이 포함되어 있다. 말 그대로 정규 교육과정과는 별개로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신장시키는 과외활동인 까닭에 학생의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가입과 탈퇴가 가능하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일본 고등학생의 45% 정도가 「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통계 수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먼저 스포츠가 진학을 위한 방편이나 특수한 학생의 전유물이 아니라 활동 자체의 즐거움으로 향유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의 하나인 야구의 경우 2009년 현재 4,200 여개의 가맹 고등학교에 등록선수가 무려 17만 명에 달한다. 당장 진학을 앞 둔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 수만 하더라도 5만여 명에 이른다. 이 5만여 명의 등록 선수 전원을 ‘체육특기자’ 혹은 그 예비 후보로 묶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만일 우리나라처럼 전국대회의 4강 진입이 대학 진학의 티켓으로 보장된다면 거기에 들지 못한 5만에 가까운 학생선수의 박탈감은 매우 심각할 것이다.

이 같은 질문은 일본에서 체육특기자에 대한 혜택이 존재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를 말해준다. 개개인의 능력을 무시한 채 소속 팀의 성적을 통해 진학의 특혜를 부여하는 우리나라의 성과주의적인 발상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비인격적인 장치인지 드러나지 않는가.

(2) 부활동과 추천제 입학의 관련성

일본의 모든 학교에서 행해지는 스포츠 활동은 개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선택의 문제이다. 따라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도 당연히 개인의 몫으로 여겨진다. 대학진학을 앞 둔 5만여 명의 등록 선수들은 진학에 불리할 수도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다만 해당 스포츠 활동이 본인에게 불이익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부활동」에 참여하는 45%의 고등학생 수가 갖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 자발성과 선택의 문제로 읽을 수 있다.

스포츠가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이며 자발성에 기초한 것이라면 이를 통한 진학도 대학과 진학 주체 간의 문제로 귀착된다. 다시 말해 특정 종목의 스포츠에 출중한 능력을 가졌거나 수상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학생의 능력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요구에 부합하는가가 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운동재능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려는 고등학생의 수가 대학의 정원에 비해 많기 때문에 대학은 스포츠 능력만으로 학생을 선발할 이유가 없다.

선발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내세우는 것이 희망자의 입학 후 수학능력(修學能力)이다. 수학능력의 정도는 학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소위 인지도가 높은 대학일수록 그 기준은 엄격하다. 다시 말해 스포츠를 통한 「추천입시」에서 지원자의 운동 능력은 필요조건의 하나일 뿐 충분조건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스포츠 활동의 결과가 혜택으로 우대되지 않는 일본의 사회적 공감대는 무엇보다 교육현장에서 중요한 것이 학업이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비롯한다. 기본적 학업 능력이 바탕이 되었을 때 비로소 특정 종목의 뛰어난 활약이 특별해 질 수 있다는 인식과 제도적 장치의 확립. 이것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게 만드는 일본 학교스포츠의 동력인 것이다. 재능은 존중하되 혜택은 없는 나라. 일본의 체육특기자 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체적인 뼈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추천입학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문부과학성(文部科學省)이 관장하는 제도적 측면과 대학의 전형 절차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2) 문부과학성의 제도적 관리

일본은 원칙의 나라이다. 그들의 원칙은 비록 늦게 가더라도 철저히 사전에 예고되어진 수순을 밟아야 효율적이라는 스스로의 경험에 의거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흐름에서 일본의 「추천입시」도 예외는 아니다. 자체적인 원칙은 학생의 스포츠활동이 그 자체로써 진학의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 제도운영의 개요와 문부과학성의 역할

일본에서도 2000년 이후 입시방법의 다양화와 평가척도의 다원화를 꾀

하는 특별전형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중앙행정기관인 문부과학성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문부과학성의 역할은 대학 입시에 관련된 기본 지침을 해마다 일선 대학에 하달하여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교육의 연계를 원활히 하는 것에 머문다. 그러나 특별하게 「추천입시」에 관하여 문부과학성은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이 밝히고 있는 「추천입시」의 정의는,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학력검사를 면제하고 조사서(調査書)를 주요한 자료로 삼아 판정하는 입시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생상(學生像)과 입학 지원자에게 요구되는 능력, 적성 등을 명확히 함과 아울러 조사서와 면접, 소논문을 활용하는 등 입시방법의 궁리, 개선에 노력한다.」라고 하는 별도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2) 관련제도의 절차

체육특기자의 대학 진학에는 이러한 원칙 이외에 「실기검사」 항목이 추가되어 총 네 가지의 선별방법이 동원되어 진다. 물론 「조사서」, 「면접」 「소논문」, 「실기검사」 등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가중치의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적어도 스포츠활동을 통한 추천의 형태로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이 네 가지는 반드시 부과되는 전형절차이다. 다음은 이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설명이다.

① 조사서

조사서는 고등학교의 생활 전반을 별도의 양식으로 작성하는 일종의 지원서이다. 이는 일반입시를 제외한 모든 추천전형에 요구되는 자료로 해당 학생의 학교장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조사서의 목적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학교장의 명의로 추천할만한 자질과 능력을 가졌는가를 묻는 것에 있다. 이때 특히 중요한 변별력을 갖는 것이 「각 교과 of 평점 평균치」와 「학습성적」이다.

「각 교과 of 평점 평균치」는 우리나라의 수, 우, 미, 양, 가를 각각 5, 4, 3, 2, 1의 수치로 환산한 평균치를 말하고, 「학습성적」은 성적의 단계를 각각 A, B, C, D, E로 나누어 해당 학생이 학년석차의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를 나타낸다.

이처럼 「평점 평균치」와 「학습성적」의 두 가지 항목을 설정함으로써 상호 비교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학업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가령 「평점 평균치」가 높더라도 내신 등급에 해당하는 「학습성적」이 낮을 경우 「평점 평균치」의 신뢰도는 낮아지게 되고, 「평점 평균치」가 다소 낮더라도 「학습성적」이 높으면 「평점 평균치」의 신뢰도는 올라가게 된다.

「조사서」가 학교장의 명의로 해당 대학교에 제출되어지는 만큼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교과 of 평점 평균치가 3.5 이상이 되지 않으면 추천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심지어 조사서의 항목 중 수상 경력을 기재하는 별도의 칸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경기 실적이 뛰어난 학생일지라도 「조사서」에 기재되는 「각 교과 of 평점 평균치」와 「학습성적」이 부족하면 지원자 스스로 추천입학의 진학을 꿈꾸지 않는다. 「조사서」는 결국 고등학교 스스로 추천제 입학의 엄격한 적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필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아무리 「조사서」가 사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추천입학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며, 변별력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문부과학성은 혹시 있을 수 있는 편법과 「조사서」 자체의 여러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면접」과 「소논문」 「실기고사」등의 까다로운 전형 절차를 따로 마련해 두고 있다.

② 소논문(小論文)

「소논문」은 우리의 논술에 해당된다. 이는 해당 학생의 사고의 깊이와 학력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 방식이다. 이것의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대학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지만 적어도 보다 능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싶은 대학의 경우 반드시 포함시키는 선별 방법이다. 문부과학성은 「소논문」에 대하여, 「입학 지원자의 능력, 적성 등을 다각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학부 등의 특성에 맞는 소논문을 부과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스포츠 활동을 통해 추천입학을 지원한 학생은 자신이 선택한 학부의 특성에 맞추어(이 경우 심지어 체육학부가 아닌 경우도 있다) 시험 당일 제시된 소논문의 주제에 대해 스스로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받게 된다. 이때 평가는 반드시 해당 학생과 연관이 없는 학부의 교수가 맡게 된다. 소논문은 결국 지원자가 해당 대학의 정규교육 과정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어져 있는가를 판별하는 대학의 자체적인 선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면접

「면접」은 「소논문」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인성적 부분을 파악하는 전형 방법이다. 스포츠 활동이 구타와 폭력, 승부예의 집착에 따른 공격적인 성향 등 부정적인 측면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면접」은 최근 들어 매우 비중 있는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스포츠를 통한 추천입학에서 인성적 부분을 중요시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장차 해당 대학의 스포츠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당사자일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그들이 학교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존재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면접에서 중요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사안은 스포츠 활동이 지원 학생에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팀의 일원으로 융화될 수 있는 공동체 정신과 희생의 가치를 어느 정도 몸에 익히고 있는가이다.

④ 실기(實技)

실기는 우리나라의 예체능 계열에서 실시되고 있는 ‘실기고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추천 입시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실기고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굳이 능력이 검증된 학생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실기 능력을 테스트하는 이유는 그들만의 사정 때문이다.

먼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모든 스포츠종목의 전국대회⁶⁾의 수가 2회로 한정되어 있어 수상 실적만으로 실기 능력을 검증하기 어려운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단체종목의 경우 개인의 능력을 팀 성적과 동일시할 수 없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 무엇보다 대학교와 고등학교 간의 사전 담합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치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 특정 스포츠 활동을 해온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 번 객관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평등의 원칙을 ‘실기’를 통해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3) 「추천입시」와 대학 - 쓰쿠바대학교의 경우

체육특기자의 대학진학이 이처럼 여러 단계의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스포츠 활동을 통한 추천 입학의 메리트를 최소화함으로써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이른바 ‘스포츠빠가⁶⁾ (スポーツバガース포츠만 할 줄 아는 바보라는 의미)’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뿌리 깊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런 엄격한 전형절차는 지원자 스

6) ‘스포츠빠가’는 일본의 운동선수에게 매우 모멸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문화적으로 ‘文武兩道’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데서 연유한다.

스로 자신의 학업 능력에 맞지 않은 대학에 굳이 진학하여 어려움을 겪기 보다 본인의 능력에 맞는 대학을 선택하려는 경향을 만든다.

왜냐하면 체육특기자의 추천입학은 일반입시와 아무런 차이를 갖지 않는 여러 전형 방식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며, 일단 입학하게 되면 일반입시전형 학생과의 구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천으로 입학한 학생 스스로도 학업에 대한 콤플렉스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

그렇다면 실제로 각 대학에서 체육 특기자의 추천 입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2009학년도 추천입시 중 체육 특기자를 가장 많이 선발한 쓰쿠바대학(筑波大學)이 그 좋은 표본이 될 것이다. 체육 특기자의 추천입시에서 쓰쿠바대학이 특히 주목을 끄는 이유는 문부과학성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르는 국립대학이라는 점과 특기자의 선발 인원이 무려 84명에 달하는 점, 그리고 전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때문이다.

〈표 IV-1〉 2009학년도 쓰쿠바대학 추천입학시험 관계위원회의 구성

No	위원회명	위원수	비고
1	입시본부	8	
2	체육전문학군 입시실시위원회	20	
3	입시실시위원회 W.G	8	
4	입학자 선고위원회	학군교원회의의 구성원	
5	조사서 소위원회	4	
	운동경력 소위원회	3	
	운동경력 판정 소위원회	18	
	소논문 소위원회	6	
	소논문 시험실 : 5C506		
	소논문 감독원	6	
	소논문 채점위원 제1반	4	
	2반	4	
	3반	4	
	4반	4	

No	위원회명	위원수	비고
	5반	4	
	예비채점위원	3	
	실기 소위원회	6	
	실기검사 시험장 : 각 체육시설		
	실기검사위원		
	체조	3	
	무용	3	
	육상	5	
	수영	4	
	핸드볼	3	
	배구	3	
	농구	3	
	축구	3	
	야구	2	

먼저 체육특기자의 입시는 「입시본부」의 설치로부터 시작된다. 여기에서 입학자 선발의 방침과 하부 위원회의 구성이 이루어진다. 그 아래 실질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로 「체육전문학군입시실시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에서 종목별 선발인원의 조정과 지원자의 학력 커트라인이 결정된다. 여기에 소속된 위원은 이론교수와 감독교수가 6:4의 비율로 구성되는데, 종종 이론교수의 높은 학력수준의 요구와 감독교수의 경기력 위주의 선발 주장이 맞서 서로 반목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체육전문학군입시실시위원회」는 다시 각 분과 위원회로 나누어진다. 분과 위원회는 평가의 내용에 따라 각각 「조사서소위원회」, 「운동경력소위원회」, 「운동경력판정소위원회」, 「소논문소위원회」, 「실기소위원회」, 「면접소위원회」로 구성된다. 여기서 「조사서소위원회」, 「소논문소위원회」, 「면접소위원회」는 이론교수들이 담당하고, 「운동경력소위원회」, 「운동경

력판정소위원회⁷⁾」, 「실기소위원회」는 해당 스포츠의 감독교수가 맡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각 소위원회에 소속된 교수들의 연인원이 선발인원인 84명 보다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각 소위원회는 전문영역에 따라 업무를 독립시켜 교수 간의 담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지나치게 경직되어 보일 정도의 이러한 상호독립적인 전형절차가 때로 내부적으로는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론교수들은 해마다 낮아지는 추천입학자의 학습능력을 문제로 지적하고 감독들은 그들대로 지나치게 높은 학습능력 커트라인으로 인해 저하되는 운동능력에 아쉬움을 토로한다. 그러나 이는 ‘운동 특기자’를 바라보는 시각의 편차라기보다 오히려 학습능력과 실기능력 간의 상호견제의 기능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스포츠 명문으로서의 쓰쿠바대학의 위상을 담보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을 요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체육 특기자 진학이 전적으로 감독의 판단에 맡겨지는 것과 달리 쓰쿠바대학의 경우 감독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해당 선수의 운동능력과 수상실적에 한정되어 있어 선발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까닭에 스카우트에 직접 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목한 학생의 운동능력과 함께 학업능력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때에 따라 해당 고등학교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까지 생긴다.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논문」의 성적 향상을 위해 꾸준한 독서지도와 논문작성법을 국어 교사에게 부탁하는 광경이 연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은 대학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간접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7) 「운동경력판정소위원회」의 업무는 가령 전국대회의 5위와 현(縣)대회의 우승 중 어느 쪽의 입상실적에 가중치를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미국의 사례⁸⁾

1) 미국의 대입제도와 체육특기자제도

결론적으로 미국에도 우리나라 대학의 체육특기자와 같은 특별전형이 존재한다. 그러나 비슷한 형태의 입학경로는 존재하되 세부적인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체육특기자 선발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의 경우 대부분 고등학교 운동실적만으로 평가되는데 반해 미국은 운동기능 및 실적과 함께 학업자격 기준과 아마추어 자격기준 또한 엄격히 적용한다는데 있다.

미국 대학의 체육특기자 제도에 의하면 아무리 운동기능이 뛰어나더라도 학업성적과 자체 내에서 설정한 아마추어 자격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대학 체육특기자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 결과 부적격자는 운동선수로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 이 글을 통해 미국 대학 스포츠의 체육특기자 제도를 자격기준의 의미, 체육특기자 관리조직체, 그리고 관련 자격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의 현실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2) 미국의 대학입학제도와 체육특기자제도의 특징

미국의 대입 체육특기자제도는 미국의 대학입학제도 가운데 가장 체계화되어 있으며, 객관성이 높다. 이는 많은 관련규정이 위계화된 형태로 주어져 있으며, 제도의 적용 또한 엄격성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일반적으로 미국 대입제도는 대학별 자율성을 존중하여 개별 지원자의 대 학수학능력과 관련된 다양한 자질을 유연하게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

8) 다음은 ‘권순용(2011). 미국의 체육특기자제도, 체육과학연구원: 스포츠과학 118’에서 재인용함

다. 반면 체육특기자 대입제도의 경우, 개별 대학과 별개로 중앙의 관리조직체에서 전국단위로 객관화된 표준지표에 근거하여 지원자의 체육특기자 자격을 심사 및 평가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의 체육특기자 대입제도에 앞서 미국 대학입학제도의 객관적 특징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1) 미국의 대학입학제도

미국 대학입학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대학의 자율성과 고유의 특성을 존중하는 민간주도형 제도이다. 미국의 연방정부는 대학입시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으며, 주 정부도 몇 가지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 개별 대학이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미국대학들은 각자 고유의 입시정책, 학생선발 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마다 제출서류, 선발방법 및 전형절차, 그리고 모집시기가 다르다. SAT(학업적성검사: Scholastic Aptitude Test)나 ACT(미국대학시험: American College Test) 등 표준화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출제하고 관리하는 기관 또한 순수 민간기구이다.

대학교육의 자율성 보장과 관련하여 미국 대입제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지원자의 대학수학 능력과 관련된 다양한 자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이다. 특히 학생의 잠재능력과 미래 발전가능성까지 고려 최대한의 입학기회를 제공하려는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능점수나 내신과 같은 계량화된 정량적 학업성적이 가장 중시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다양한 평가 자료를 토대로 개별화되고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입시 성적, 내신과 같은 지원자들의 학업능력을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 외에 인성, 리더십, 사회봉사, 그리고 예체능분야 소질 등 주관적 요소 또한 중요한 학생선발 기준으로 중시된다.

또한 대입자격의 객관적 지표에 대한 질적 고려 즉, 지원자의 가정 및 교육환경, 장래 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기준도 동시에 고려하여 유연하게 평가한다. 미국 대학에서도 우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생을 선발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이 학력우수와 관련된 지표이다. 그러나 그러한 학력우수 지표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이 우리와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SAT 점수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과연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차이인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 한다.

그 결과 학업성적이 거의 비슷한 경우에는 자라온 환경이 불리한 학생의 자질을 더욱 높게 평가한다. 상대적으로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학생의 경우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점과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데, 이는 그러한 학생에게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를 주는 것이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공정하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의 대학입학제도는 개별 대학의 자율적 선발기준에 따라 학생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근거 자료를 종합적이고 유연하게 고려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학업성적이나 내신과 같은 전국단위의 표준화된 객관적 평가 자료만을 중시하는 중앙집권적 관주도 대입시스템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2) 미국의 체육특기자 대학입학제도

앞서 언급한 미국의 전반적 대학입학제도와는 달리 체육특기자 대학입시의 경우 지원자의 자격을 공식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체육특기자 제도는 미국 대학입시제도의 일반적 특징과는 구별되는 고유의 제도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학입학제도 중 가장 많은 관련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원자 자격요건의

적용 또한 엄격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미국 체육특기자 대입제도 관리운영의 중심에는 민간기구인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가 있다.

①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미국의 대학 간 스포츠 경기는 1852년 당시 최고의 두 대학이었던 하버드와 예일 대학교 간의 조정경기가 그 시초로 볼 수 있다. 이후 철도와 같은 교통의 발달로 대학 간 스포츠 교류가 학교 및 참가자 수와 종목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이게 되었다. 이 같은 양적 팽창은 새로운 관리 기법에 대한 요구를 높이게 되며, 이후 미국의 대학스포츠는 질적인 면에서 한 차원 도약하게 된다.

초창기 미국 대학스포츠는 학생들의 자율적 통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그 인기가 높아지고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점차 폭력적이고 상업화되어(특히 미식축구에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된다. 이에 대학 스포츠를 보다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조직체가 1906년 설립되었는데 이는 1910년 NCAA로 구체화된다.

대학스포츠 개혁의 필요성에 근거한 NCAA의 설립은 당시 대학스포츠가 학원스포츠 본연의 교육적 목적 및 가치의 실현이라는 가치에 충실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의거한 것이다. 이에 NCAA는 설립초기부터 대학스포츠를 강의실에서 배우기 어려운 다양한 가치와 교훈을 경험하고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경험의 일환으로 여겼다. 그 결과 조직의 운영은 운동선수의 바람직한 학습경험에 두게 되었다. 특히 그들은 학생선수(student-athletes)라는 개념을 운동선수에 앞서 학생으로서 권리와 의무에 두었고, 이에 대한 사회전반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데 조직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정리하자면 NCAA의 설립은 학원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원칙에 따른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었으며, 이에 NCAA는 대학체도의 교육적 본질 및 가치실현이라는 맥락에서 대학스포츠의 당위성과 그에 따른 학생선수 학습경험과 학업증진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현재에 이르렀다.

현재 NCAA는 1,300개 이상의 대학교 및 유관조직으로 구성된 대학스포츠 관리기구(athletics governing body)로 발전되었다. 본부는 인디애나폴리스에 위치해 있으며, 3개 수준의 디비전(Division)별⁹⁾ 대학스포츠 경기운영 그리고 학생선수 자격과 관련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집행한다. NCAA의 주된 설립 목적은 대학스포츠 경기를 공정하고, 안전하며, 포용적이고 스포츠맨십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학생선수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데 두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NCAA는 철저하게 법규와 규정을 근거로 대학스포츠 프로그램을 조직, 운영,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학 간 협의체로서 NCAA는 회원대학들이 관련규정 제정에 직접 참여하는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NCAA 본부는 단지 회원대학들이 협의하여 제정한 규정을 집행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NCAA의 규정 중 체육특기자 입학 및 자격유지 규정이 가장 중시되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하에 운영되고 있는데, 보통 NCAA 체육특기자 입학제도가 미국 체육특기

9) NCAA에 가입된 학교들은 스포츠 팀의 수준과 학교 규모에 따라 크게 디비전(Division) I, II, III로 나뉜다. 디비전 I 대학들은 규모가 크고 거의 모든 운동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운동성적도 좋은 편이다. 디비전 II, III는 디비전 I에 비해 규모가 작고 운동 종목 역시 조금씩 다르다. 2011년 현재 디비전 I 337개교, 디비전 II 290개교, 그리고 디비전 III 435개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보통 디비전 I과 II 소속 대학교는 체육특기자 장학금을 NCAA 규정에 따라 수여하며, 디비전 III의 경우 체육특기자 장학금 혜택이 없다. NCAA의 종목은 볼 스포츠, 가울스포츠, 겨울스포츠를 포함하여 총 23종목이 있는데, 해마다 23개의 종목에서 1,300여개의 대학교에 체육특기생들이 진학하고 있다.

자 입학 제도를 대변하고 있다.

② NCAA 체육특기자 입시제도

미국 대학의 체육특기자로 진학하려면, 해당 종목의 전문운동 특기뿐만 아니라 NCAA의 선수자격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전문운동 특기의 경우 개별 대학 운동부 관계자에 의하여 평가되는 반면, NCAA 선수자격은 개별 학생선수가 NCAA의 학업자격과 아마추어 자격에 대한 관련규정을 지켰는지에 대해 NCAA가 심사 및 공인하는 절차를 통해 부여된다.

따라서 대학 체육특기자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NCAA 학업기준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아마추어 자격에 대한 NCAA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NCAA 디비전 I이나 II의 대학에 체육특기생으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학업기준과 아마추어 기준을 포함 선수자격과 관련된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고등학교 졸업장
- 최저 16개 핵심과목(디비전 I) 또는 14개 핵심과목(디비전 II)¹⁰⁾의 이수
- 핵심과목 평점평균 기준(디비전 I은 슬라이딩 스케일¹¹⁾ 기준 적용;

10) 2013년 8월 1일부로 디비전 II 대학교 입학 또한 16개 핵심과목 이수가 요구됨

11) 1992년 추가된 규정으로서 기존의 절대적 표준점수(예를 들어 SAT 700점 이상과 GPA 2.0이상)를 적용하기보다 양 점수간의 상대적 비율의 조정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고등학교 핵심과목 평점평균 점수(GPA)와 표준화된 대학수학능력 점수(SAT 또는 ACT 점수)간의 상보적 관계를 토대로 작성된 점수조건표를 토대로 평가한다. 즉, GPA가 높으면 SAT 또는 ACT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도 점수조건표의 기준 이상이 되면 지원 자격에 대한 관련기준을 만족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원자의 SAT가 620점 또는 ACT가 52점이라면 핵심 교과 평점평균은 3.0이상이 되어야 디비전 I 대학교 체육특기자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디비전 II는 2.0이상)

- 대학수학능력 표준점수 SAT 또는 ACT 기준(디비전 I은 슬라이딩 스케일 적용; 디비전 II는 SAT 820점 또는 ACT 68점 이상)
- 아마추어 자격인증(amateurism certification)

Division III 대학교의 경우 체육특기자 자격규정에 관한 종합적인 NCAA 기준요건은 없으며, 체육특기자의 입학자격, 운동선수 장학금 수혜 자격, 그리고 훈련 및 경기 참가자격 등은 개별 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Division I (16개 핵심 과목)	Division II (14개 핵심 과목)
영어: 4년 수학: 3년 자연과학: 2년 영어, 수학, 과학 중 택 1: 1년 사회과학: 2년 이외 과목 중 선택: 4년	영어: 3년 수학: 2년 자연과학: 2년 영어, 수학, 과학 중 택 1: 2년 사회과학: 2년 이외 과목 중 선택: 3년

〈그림 IV- 1〉 체육특기자 진학을 위한 고등학교 핵심이수 과목¹²⁾

이상의 학업관련 입학자격 외에 디비전 I과 II의 체육특기자는 아마추어 자격 또한 충족해야 한다. 지원자의 아마추어 자격은 NCAA의 선수자격 관리센터(Eligibility Center)에 의한 공식적 인증을 통하여 부여된다. 아마추어 자격 인증 절차시 중시되는 평가항목은 주로 프로팀과의 계약, 경기 참여와 관련된 보수, 상금, 프로팀 또는 선수와의 시합, 프로팀 선수선

12) 1년간 이수할 경우 1학점(1 unit)이 주어진다.

발 응시 또는 훈련, 에이전트와의 관계, 그리고 기타 운동기능 및 시합참여와 관련된 금전적 보상 등이다.

NCAA 선수자격관리센터는 지원자 및 지원자의 고등학교 진학상담교사에 의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아마추어 자격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린다. 만약 아마추어 자격의 부적합 판정이 내려질 경우 지원자는 추가적으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이상의 학업관련 규정과 아마추어 자격규정의 모든 조건을 만족할 경우 체육특기자 신입생은 소속 디비전의 대학스포츠 훈련과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체육특기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체육특기자로 입학하였다고 해서 졸업까지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매학기 NCAA 선수자격 규정을 성공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NCAA는 체육특기자의 대학입학 및 학생선수 자격을 심사하고 관리하며 인증하는 부서로 선수자격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선수자격관리센터는 NCAA의 디비전 I과 II에 소속된 대학교에 체육특기자로 입학하는데 요구되는 학업관련 자격과 아마추어 자격을 심사하고 그에 대한 공식인증을 하는 NCAA 하부기관이다. 따라서 NCAA 디비전 I과 II 대학교에 체육특기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수학 기간 중 적절한 시기에(주로 고등학교 2학년) 선수자격관리센터에 등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학업자격과 아마추어 자격에 대한 NCAA의 공식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체육특기자 자격을 인증받기 위하여 지원자는 보통 9학년(우리나라의 중학교 3학년에 해당)부터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그리고 외국어 등 5개 영역에 요구되는 핵심교과를 이수하면서 체육특기자 입시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핵심교과의 성공적 이수를 증명하는 성적표는 주로 고등학교 2학년 말 NCAA 선수자격관리센터에 공식적으로 제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동안 SAT나 ACT와 같은 표준화된 대입

학업능력시험을 치르게 되는데¹³⁾, 보통 핵심교과 이수와 대입학업능력시험 응시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계속하게 된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해 4월 1일부터 체육특기자 지원자는 NCAA 선수자격관리센터에 미리 제출된 자신의 학업자격 및 아마추어 자격 정보를 계속 수정 및 갱신하게 되며 심사기준을 만족할 경우 학업자격과 아마추어 자격의 인증을 획득하고 체육특기자 지원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3) 전망 : 체육특기자 학업규정의 지속적 강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미국 대학입학제도 중 가장 많은 규정과 자격요건이 존재하고 또한 그러한 규정과 자격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영역이 체육특기자 입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체육특기자 자격규정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학업능력 요건인데 그 획기적 시발점은 1983년에 제정되어 1986년부터 시행된 NCAA Proposition 48 학업자격 규정이다.¹⁴⁾ 당시 제정된 학업자격 규정은 체육특기자로 입학하기 위한 최소조건으로 고등학교 핵심과목 11개 과목 이수 및 평점평균 2.0이상 그리고 SAT 700점 이상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이후 NCAA 체육특기자 학업자격 규정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강화되어 왔다. 특히 1990년대 들어와 NCAA는 고등학교부터 대학졸업까지 선수자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단계적이며 체계적인 관리체제를 갖추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¹⁵⁾ NCAA는 Division I의

13) 응시서류를 접수하면서 체육특기자 코드를 입력하게 되고 관련기록과 시험성적은 자동적으로 NCAA 선수자격관리센터로 보내지게 된다.

14) 1980년대는 NCAA의 역사 중 많은 문제와 쟁점들이 표출된 격동의 시기였다. 특히, 운동선수의 학업기준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고 결과적으로 1983년 학업능력 기준을 강화시키는 Proposition 48이 채택되었다.

15) 이와 같은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은 특히 Division I과 II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강조되어 왔다.

이와 같은 학생선수 자격규정관리 체계를 “지속적 자격관리(seamless eligibility)” 모델로 시스템화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 자격관리 체계의 가시적인 시작은 1991년 NCAA 총장회의에서 학생선수 학업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92년 NCAA는 보다 강화된 Proposition 16을 채택하였다.¹⁶⁾ Proposition 16에 의하면 디비전 I 대학에 체육특기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13개 핵심교과를 이수하고 평점평균 점수와 표준화된 대학수학능력 점수와의 슬라이딩 스케일에 근거한 기준을 통과해야 했다. 또한 2002년 규정개정에 따르면 Division I 프로그램의 경우 핵심교과 이수과목이 13과목에서 14과목으로 늘어났고 최소 평점평균 기준 또한 높아져 체육특기자 학업기준이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되었다. 2003년에는 Division II 프로그램에서도 체육특기자 입학에 대한 고등학교 핵심교과 이수과목수가 14과목으로 상향조정되었다. 2008년부터는 Division I 소속 대학들의 입학조건 중 고등학교 핵심이수 과목수가 14개 과목에서 16개 과목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디비전 II 대학교에서도 16개의 핵심과목을 이수해야 선수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특히 NCAA의 지속적 자격관리 시스템은 입학요건뿐만 아니라 졸업까지 체육특기자의 자격의 유지에 관한 매학기 자격규정과 그 규정의 실행에 대한 관리까지 포함한다. 일단 NCAA 소속 대학에 진학하여 학생선수로 등록을 하게 되면 NCAA 학업규정을 매학기 충실히 만족해야 선수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는 학위취득에 필요한 필수이수 교과과정과 평점평균(GPA) 기준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입학 후 학생선수는 2학년 말까지 학위취득에 필요한 이수과목의 40%를 2학년 말까지, 60%를 3학년 말까지, 그리고 80%를 4학년 말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야

16) 이 규정은 1995년부터 실행되었다.

하며, 체육특기생 장학금 혜택과 관련한 졸업시한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학생선수는 매학기 최소 6학점을 이수해야 다음 학기 체육특기자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2004년에는 디비전 I 선수자격에 있어 학업진도율(APR: Academic Progress Rate)과 졸업율(GSR: Graduation Success Rate)을 포함한 학업규정의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APR은 체육특기자 개인별로 매학기 학업자격 기준에 준하는 점수와 정규학생으로서 매학기 등록함으로써 얻게 되는 점수를 합산한 후, 그러한 선수별 개별점수를 운동부 전체로 합산하여 최대 가능점수로 나눈 후 1000을 곱해서 얻어지는 지수이다. 이와 같은 운동부별 APR과 GSR 수치는 매학기 NCAA에 보고되어 검토과정을 거치게 된다. 최소 APR 925점 이하의 팀은 체육특기생 장학금의 삭감에서부터 선수자격 유예 및 취소 등 보다 엄중한 처벌이 주어지게 된다. 2005년부터 디비전 II 소속 대학에도 디비전 I의 GSR과 유사한 졸업율(ASR: Academic Success Rate) 규정이 시행되었다. ASR의 경우 체육특기생 장학금을 받지 않는 선수의 학업성적까지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GSR과의 차이점이다. 이상과 같은 선수자격 유지규정을 지난 10여 년 동안 강화시킨 결과 NCAA 체육특기자의 졸업율은 일반학생에 비하여 일관되게 높은 수준에서 계속 향상되어 왔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최근 20여 년간 NCAA는 체육특기자의 학업관련 자격기준을 계속 강화해 왔다. 현재 미국의 체육특기자는 학생선수로서 일반학생에 비하여 입학뿐만 아니라 재학 중에도 훨씬 많은 자격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리고 각 대학별 자율적이고 다양한 기준의 유연한 적용에 의하여 선발되는 일반학생과는 달리 체육특기자는 NCAA라고 하는 대학스포츠 관리감독 기구에서 운영하는 체육특기자 자격관리시스템의 일관된 심사와 인증절차에 따라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유독 운동선수에게만

이와 같은 부가적인 학업관련 자격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차별적 대우가 될 수도 있다.

결국 미국의 대학스포츠는 아무리 체육특기자의 운동기능이 뛰어나도 학업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학생의 자격요건에 부적합하다는 원칙을 일관되고 엄격하게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확립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는 대학이 전인적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고등교육 제도로서 올바르게 효율적으로 기능할 때 대학의 본질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사회적 동의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 체육특기자 제도 또한 이와 같은 대학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적 장치로서¹⁷⁾ 궁극적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는 맥락에서 NCAA는 앞으로도 체육특기자의 학업관련 자격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일본과 미국 모두 우리의 체육특기자제도와 같은 선수양성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있지 않는 반면, 고등학교의 운동특기로 대학을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입시시스템을 지니고 있었다.

다만 그 규모에서 일본의 경우 그 진학대상이 연간 2~330여명 남짓으로 소수지만, 미국의 경우 상당수의 인원을 진학시킨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일본의 경우 해당제도(추천제 입학)을 국가(문부과학성)가 가이

17) NCAA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NCAA는 학생선수로 하여금 스포츠, 교육, 그리고 사회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고, 최상의 스포츠맨십과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도록 하며, 스포츠와 학업 모두에서 최상의 성취를 이루도록 도와주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의 학생선수에게 최대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데 그 핵심가치(core values)를 두고 있다.

드라인을 제시하여 대학이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인 반면, 미국은 민간단체인 NCAA에서 그 업무를 대행시키고 있었다.

이들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체육특기자 대학입시의 운영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적 적합성 강조

양국 모두 학생선수를 우선적으로 선수가 아닌 학생으로 간주하며, 대학 스스로도 이들을 학생으로 여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지니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체육특기자라고 하더라도 학습 성적을 가장 우선되는 전형기준으로 두고 있었으며, 미국의 경우 엄정한 학업기준을 적용하여 체육특기자를 전형하고 있다.

이 같은 전형방식은 해당국가의 일반 고교생의 대입전형보다 훨씬 까다롭고 번거로운 절차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데, 이런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력 배양에 있다. 이 같은 태도는 대학이 공부를 가르치는 곳이며, 이는 어떤 예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교육 원칙에 의거하고 있다.

이 같은 원칙의 고수는 개인적으로 학생선수가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업 성취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또한 이는 그들이 전체 학생과 분리되지 않는 토대로서 작용하여 진정한 그 학교를 대표하는 운동부원으로서 기능하게 하는 기초가 된다. 즉 대학운동부의 구성원이 운동을 위해 특수하게 조직되어 일반학생의 일상과 분리된 존재가 아닌 똑같은 의무와 권리를 지닌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학교를 대표하는 자로서의 자부심을 만들어주게 된다.

나. 국가적 통제 시스템 작동

우리의 경우 대학입학전형과 관련하여 기본사항을 민간단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각 대학은 이에 기초하여 각자의 전형기준을 정하여 전형절차를 진행한다. 이 경우 전체인원 및 종목별 인원에 대한 조절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 전체 입학 수요와는 상관없이 입학정원 자체의 유동성이 매우 커질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 결과 그 피해는 학생선수 개인이 감당해야 되는 처지가 된다.

이에 비해 일본은 국가가 체육특기자 입학을 포함한 전체 입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그 과정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추가 조사결과 특히 체육특기자 입학전형방식인 추천제 입학의 경우, 입학 정원의 50%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추천입학정원과 각 종목 별 모집정원을 미리 명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추천 입학별 해당 종목은 정규교육과정에 편입된 14개이며 체조, 육상, 수영, 무용, 야외활동, 농구, 배구, 핸드볼, 축구, 럭비, 라켓스포츠, 유도, 검도, 궁도 등의 14개로 한정되어 규제하고 있었다. 즉 일본의 경우 모집정원에 대한 명기 및 종목별 관리가 가능한 구조였다.

미국의 경우 주지하다시피 민간단체를 통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관련 실무가 너무 방대하고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전면적으로 통제를 하기 불가능하다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 간의 견제를 통해 관련 제도가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며,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는 NCAA만을 통제하는 구조로서 전체과정을 통제할 수 있다.

V. 전문가 델파이 조사

- 본 조사는 체육특기자 대학입학전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체육특기자 관리 및 입학 전형 경험이 있는 현직교수 25명을 대상으로 함
- 1차 조사의 내용은 현행 체육특기자 제도 및 대학입학전형 제도와 관련하여 질문하였는데, ‘체육특기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 ‘체육특기자 제도의 개선방안’, ‘체육특기자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 ‘체육특기자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개선방안’의 4개 하위 범주로 구분하여 질의하였음
- 2차 조사는 1차 조사를 통해 수집된 비체계적인 개방형 응답을 편집하여 항목별로 반구조화된 폐쇄형 질문을 구성하고, 패널로 하여금 각 항목의 중요성에 동의하는 강도를 5단계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세부 항목별 범주화를 도출하였음
- 3차 조사는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분석된 자료를 활용하여 체육특기자 대학입학전형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중요도(계층화)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음
- 체육특기자제도의 문제점과 관련된 3개 분야의 하위 9개 항목에 대한 요소들 간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제도적 문제 56.6%, 인식문제 23.1%, 학습권 문제 20.4% 순으로 나타났음
- 체육특기자제도의 개선방안과 관련된 3개 분야의 하위 9개 항목에 대한 요소들 간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학습권보장 62.4%, 학교체육운영 19.1%, 지도자 관리 및 지원 18.5% 순으로 나타났음
- 대학입학 전형제도 개선방안과 관련된 5개 분야의 하위 13개 항목에 대한 요소들 간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입학전형기준 30.7%, 최저학력기준 25.8%, 경기력판정기준 17.5%, 지원자격기준 14.7%, 기타 11.2% 순으로 나타났다. 즉 체육특기자 대학입학전형 제도 개선은 대학의

입학전형기준을 정비하는 것과 함께 체육특기자에 대한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1. 조사 개요

1) 목적

대학에서 체육특기자 관리 및 입학 전형 경험이 있는 교수를 대상으로 체육특기자 대학입학전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2) 조사 설계

텔파이 조사는 대학의 체육특기자 관리 및 입학 전형 경험이 있는 현직 교수 25명으로 전국 시도 분포를 고려하여(제주도 제외) 4년제 대학에서 패널을 구성하여 실시했다.

전문가 조사는 총 3차에 걸쳐 인터넷 메일을 통한 서면조사로 시행하였는데 1차 조사는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체육특기자 제도 및 대학입학전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후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서 응답된 내용에서 도출된 사항을 정리하여 각각의 중요성에 대해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1차 및 2차를 통해 구성된 내용은 전문가 패널의 추가 및 보완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자가 최종 판단하여 3차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3차 질문지는 추출된 3단계 항목에 대한 중요도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계층화(AHP) 분석을 활용함으로써 체육특기자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위한 자료로 제시되었다.

〈표 V-1〉 델파이 조사 설계

구분	내 용
패널구성	· 체육특기자 관리 및 입학전형 경험이 있는 현직 대학교수 25명
조사방법	· 인터넷 메일을 통한 서면조사
조사도구	· 1차: 개방형 질문지 · 2차: 폐쇄형 질문지 · 3차: 구조화된 질문지
조사기간	· 2011년 10월 ~ 12월

3) 조사 내용

1차 조사의 내용은 현행 체육특기자 제도 및 대학입학전형 제도와 관련하여 질문하였는데, ‘체육특기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 ‘체육특기자 제도의 개선방안’, ‘체육특기자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 ‘체육특기자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개선방안’의 4개 하위 범주로 구분하여 질의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를 통해 수집된 비체계적인 개방형 응답을 편집하여 항목별로 반구조화된 폐쇄형 질문을 구성하고, 패널로 하여금 각 항목의 중요성에 동의하는 강도를 5단계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세부 항목별 범주화를 도출하였다.

3차 조사는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분석된 자료를 활용하여 체육특기자 대학입학전형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중요도(계층화)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2. 조사 결과

1) 1차 조사결과

체육특기자 대학입학전형 제도와 관련하여 ‘체육특기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방안’,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개선방안’(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개선방안의 하위 범주는 ‘자격기준’, ‘전형기준’, ‘경기력판정기준’, ‘최저학력반영’ 등으로 구성함) 4개의 하위 범주로 구분하여 질의한 결과, 영역 간 중복 응답 등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이들 응답 내용을 4개 범주로 재정리했다.

1차 조사에서 얻어진 주요 의견은 현행 체육특기자 제도가 대학자율로 운영되고 있고, 특기자 입학전형은 체육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확대하는 영역이므로 현행 제도는 유지하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종합되었다.

〈표 V-2〉 1차 델파이 조사의 주요 응답

구 분	세부 내용
체육특기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	· 현행 제도는 대회 성적에만 집중하는 파행을 반복시키고 있음 · 운동만 잘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음 · 학생선수들의 학업을 등외시키는 풍토를 만들고 있음 · 중도탈락자에 대한 진로교육체계가 부재함 · 전인교육부재로 차후 사회부적응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함
체육특기자제도의 개선방안	· 체육특기자 자격에 학업능력 즉 최저학력제 설정 · 엄격한 학사관리로 기본 학습권을 보장 · 정규수업시간 이수 의무화 · 튜터링 제도를 통한 수업보충 학습제 도입 및 확산 · 우수선수 스카우트 관련 규정 마련

	· 개인성적, 팀성적, 선발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선수 및 지도자의 책임 규정 마련과 감독기구 설치, 운영 등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	· 입시 요강에서 4강, 8강, 입상 기준 삭제 · 선수스카우트는 감독, 코치의 평가 준거로 묵인 · 고교 경쟁에서 탈락자에 대한 고려 부재 · 불공정한 경쟁, 스카우트 과열 · 수시모집의 형식에 국한됨 · 남학생 위주의 학생선발 문제 ·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요소 포함 등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개선방안	자격 기준	· 현행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 일정 기준이상이면 자격을 모두 허용 · 단체 종목의 경우 절대평가 기준 입안 · 대학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성 보장 · 종목별, 개인/단체별 기준설정 · 내신 7등급 이상 등 최저학력기준 설정
	전형 기준	· 학교생활 충실도 반영(성적, 학생활동 등) · 선진국 사례를 검토하여 적용 · 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 전형 기준 적용 · 입상성적, 내신성적, 수능성적, 기초체력, 면접 등 제반 요소 반영
	경기력 등급 판정	· 종목별 대회성적 동일화, 가중치 등을 각 연맹별로 제정 · 대회성적보다 기록 누적 등 다양한 기준에서 판정 · 또래 집단의 경기력을 객관화하여 판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종목 특성(팀수, 인원)을 고려한 등급 조정 · 각 대회 급별로 계량화 · 객관적 평가(성적 등급화)와 주관적 평가(평가위원회)를 함께 반영 · 대회 비중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하여 포인트제로 운영, 선수 석차를 백분위로 환산
	최저 학력 반영	· 내신 7등급 이내 반영, 수능성적 7등급 이내 반영 · 정부부처에서 강제되어야 함 · 경기력과 수학능력을 타당한 비율로 반영 · 선수로서 뿐만 아니라 장래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전형제도 마련

		· 학교 공부 참여기간이 반영된 최저학력 적용 ·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를 함께 고려 · 최저학력 위조(부정) 양산 가능성 · 내신성적에 제한하지 말고 출석일수 등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기타	· 전임교처 처우 개선 · 지도자 선순환 시스템 적용 · 대학학생선수위원회 구성 권리 및 의무 제정 · 일반학생의 운동선수 선발 가능성 필요 · 경기성과 위주의 코치 평가 지침 개선

2) 2차 조사결과

2차 조사는 4개 하위 항목별 구성요소간의 적절성 검증과 변화 우선순위 검증을 위해 실시되었다.

1차 조사에서 추출된 4개 영역별 총 51개 항목을 대상으로 5단계 리커트 척도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체육특기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에서는 ‘수업결손 보충 및 특별학습 프로그램 시행’이 5점 만점에 4.40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도탈락자를 위한 학습 및 진로교육(4.32)’, ‘운동선수 육성을 스포츠클럽을 기반으로 전환 필요(4.28)’, ‘폭력근절 및 학생선수 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 활성화(4.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체육특기자 제도의 문제점과 관련한 응답은 크게 인식문제, 학습권문제, 제도적 문제로 범주화하였다.

〈표 V-3〉 체육특기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 분석 결과

내용	하위 내용	순위	평균	표준편차
체육특기자 제도의	수업결손 보충 및 특별학습 프로그램 시행	1	4.40	.65
	중도탈락자를 위한 학습 및 진로교육	2	4.32	.80

내용	하위 내용	순위	평균	표준 편차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	운동선수 육성을 스포츠클럽을 기반으로 전환 필요	3	4.28	.84
	폭력근절 및 학생선수 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 활성화	4	4.20	1.13
	경기 일정을 주말, 방학 중으로 옮기는 조치	5	4.16	.94
	전국 체전 등 대회 운영 방식 전환	6	3.96	.93
	학교 운동부 운영에 관한 법적 강제력 필요	7	3.92	1.10
	학업을 등한시 하는 사회적 인식	8	3.84	1.49
	체력 및 기능테스트를 통한 잠재성 평가	9	3.76	1.13
	운동만 잘하면 진학한다는 잘못된 인식	10	3.72	1.43
	동일 계열 진학 제도 폐지	11	3.68	1.41
	사전 스카우트 등 지도자와 학부모의 인식	12	3.48	1.12

현행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항목을 분석한 결과 ‘정규수업 시간 이수를 의무화’가 4.56점으로 가장 높았고, ‘엄격한 학사관리로 학생의 기본 학습권 확보(4.52)’, ‘지도자 소양 교육 강화(4.52)’, ‘학교체육법 시행(4.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의 응답 영역은 학습권보장, 학교체육운영, 지도자관리 및 지원 등의 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또한 2차 조사에서 체육특기자 제도 항목과 대학입학전형 제도 항목의 영역이 상호 중첩되는 사항이 많이 있다는 지적과 연구진의 검토에 따라 3차 조사에서는 문제점과 관련된 영역을 하나로 묶어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V-4〉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 분석 결과

내용	하위 내용	순위	평균	표준 편차
체육 특기자 제도 개선방안	정규수업시간 이수를 의무화	1	4.56	.83
	엄격한 학사관리로 학생의 기본 학습권 확보	2	4.52	.65
	지도자 소양 교육 강화	2	4.52	.65

내용	하위 내용	순위	평균	표준 편차
	학교체육법 시행	4	4.40	.65
	주말리그제 확산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	5	4.32	.75
	지도자 급여 및 복지제도 개선	6	4.28	.79
	선수 및 지도자 관리 감독 기능의 기구 설치	7	4.24	.78
	학습지원을 위한 튜터링 제도 도입 및 정착	8	4.20	.65
	대회 출전 시 최저 학업성적 의무적 반영	9	4.08	1.04
	경기성과위주의 지도자 평가 지침 개선	10	4.00	1.12
	입학사정관 제도 도입	11	3.48	1.01
	권역별 학생 선발 및 통합 교육 실시	12	3.36	1.04
	체육영재 학교 제도 확대	13	3.20	1.61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 결과, ‘불법 스카우트 등 불공정 요건 사전 배제’이 4.5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객관적 기준에 의한 경기력 검증 실시(4.40)’, ‘경기력, 수학 능력 판단을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4.36)’, ‘스카우트 과열을 차단할 수 있는 규정, 제도 마련(4.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3차 조사결과

3차 조사는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구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체육특기자 대학입학전형 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계층화(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AHP 분석은 1,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응답한 전문가 패널 25명 중 23명이 응답하였다. 대분류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체육특기자 제도의 문제점, 체육특기자 제도의 개선방안,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개선방안의 3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영역분류는 체육특기자제도가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과 함께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기 위함이다.

〈표 V-5〉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 분석 결과

내용	하위 내용	순위	평균	표준 편차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	불법 스카우트 등 불공정 요건 사전 배제	1	4.56	.65
	객관적 기준에 의한 경기력 검증 실시	2	4.40	.87
	경기력, 수학 능력 판단을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	3	4.36	.59
	스카우트 과열을 차단할 수 있는 규정, 제도 마련	4	4.32	.95
	관련 기관에서 인정 최소 기준을 마련, 제시	5	4.12	.60
	자격 요건 등 완화와 실질적 공개 선발제 실시	5	4.12	.83
	학과 선택 자율권 부여	5	4.12	1.01
	경기단체 추천 선수의 객관적 기준 필요	8	4.08	.81
	대학의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	9	4.00	.71
	감독 및 코치의 의견 반영	10	3.48	.92
	입시 요강에서 입상 기준 삭제	11	3.04	.79
	동일계열 지원 정책 강화	12	2.80	1.29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 결과, ‘전임 코치·감독 처우개선’이 4.3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내신, 입상, 수능, 기초체력, 면접 등 제반 요소 반영(4.08)’, ‘인성, 기본 소양 평가를 위한 적성 검사 실시(4.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대학입학전형 제도 개선 방안의 하위범주는 지원자격지준, 입학전형기준, 경기력판정기준, 최저학력기준 및 기타 항목으로 범주화하여 구성하였다.

〈표 V-6〉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 결과

내용	하위 내용	순위	평균	표준 편차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문제점 및	전임 코치·감독 처우 개선	1	4.37	.65

내용	하위 내용	순위	평균	표준 편차
개선의 필요성	내신, 입상, 수능, 기초체력, 면접 등 제반 요소 반영	2	4.08	.91
	인성, 기본 소양 평가를 위한 적성 검사 실시	3	4.04	.93
	대회성적보다 누적 기록 등 다양한 기준으로 판정	4	3.84	.75
	전형안 시행은 각 대학의 자율에 맡김	4	3.84	.90
	객관적 평가(내신)와 주관적 평가(교사 평가)를 반영	5	3.76	.88
	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전형 기준 적용	5	3.76	.88
	또래 집단의 경기력을 객관화하여 판정	8	3.68	.75
	최저 학력(내신 7등급, 수능 7등급 이내) 반영	9	3.72	1.17
	종목별, 개인/단체별 자격 기준을 설정	10	3.56	.77
	대학 및 종목별 특성을 고려한 현행 기준을 유지	11	3.08	.86
	체육특기자 지원 자격 제한을 폐지	12	2.96	1.06

AHP분석은 MS Excel을 활용하여 행렬간 가중치 산정을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분류된 계층구조는 <표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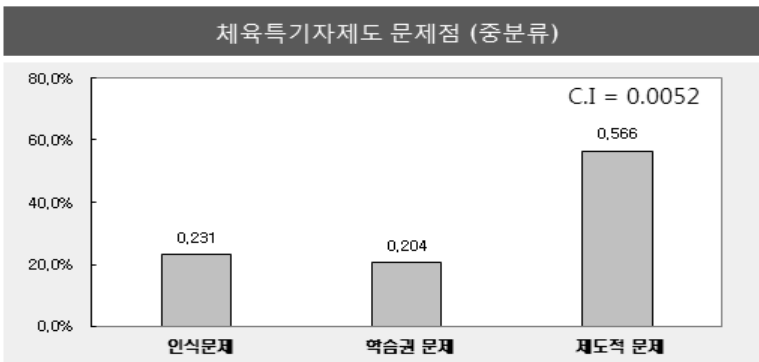
<표 V-7> 계층화(AHP) 분석을 위해 최종 분류된 계층구조

계층1 (대분류)	계층2(중분류)	계층3(소분류)
1. 체육특기자 제도의 문제점	1.1 인식문제	운동만 잘하면 진학한다는 학생 선수, 학부모, 지도자 등의 잘못된 인식
		사전 스카우트, 승부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잘못된 관행
	1.2 학습권문제	학생선수의 학업을 등외시 하는 잘못된 사회 인식
		학생선수의 학습능력, 수업결손 등에 대한 보충 부재
	1.3 제도적 문제	학생선수의 학업을 고려하지 않은 대회운영
		중도탈락자를 위한 학습 및 진로교육 부재
2.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	2.1 학습권보장	학교 운동부 운영에 관한 법적 강제력 부재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법·제도 부재
		학생선수 폭력근절 및 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 부재
	2.2 학교체육운영	엄격한 학사관리로 학생선수의 기본 학습권 보장
		정규수업시간 이수 및 학습지원제도 의무화
		대회 출전시 최저 학업 성적 반영 의무화

계층1 (대분류)	계층2(중분류)	계층3(소분류)
3. 대학입학 전형제도 개선 방안	2.3 지도자 관리 및 지원	학교체육법 조기 시행
		지도자 소양 교육 강화
		선수 및 지도자 관리 감독 기능의 기구 설치
		지도자 급여 및 복지제도 개선
	3.1 지원자격기준	종목별, 개인/단체별 자격 기준을 설정 일정 기준이상이면 자격을 모두 허용
	3.2 입학전형기준	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 전형 기준 적용(대학자율결정)
		입상·내신·수능 성적 및 기초체력, 면접 등 제반 요소를 반영토록 함
	3.3 경기력판정 기준	인성, 기본 소양 평가를 위한 적성 검사 실시
		대회성적보다 누적 기록 등 다양한 기준으로 판정
		도래 집단의 경기력을 객관화하여 합리적으로 판정
	3.4 최저학력 기준	전형시 경기수행력 평가를 통한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일정 수준의 최저학력(내신 및 수능)을 일괄 반영
	3.5 기타	체육특기자를 위한 별도의 학업능력 평가 시행
		전임 코치 및 감독 처우 개선
		불법 및 비리 지도자 및 운동부에 대한 처벌 강화
		대교협,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등 기관의 감독 기능 강화

(1) ‘체육특기자제도의 문제점’ 분류별 상대적 중요도

체육특기자제도의 문제점과 관련된 3개 분야의 하위 9개 항목에 대한 요소들 간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제도적 문제 56.6%, 인식문제



〈그림 V-2〉 체육특기자제도 문제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

〈표 V-8〉 체육특기자제도의 문제점 항목별 상대적 가중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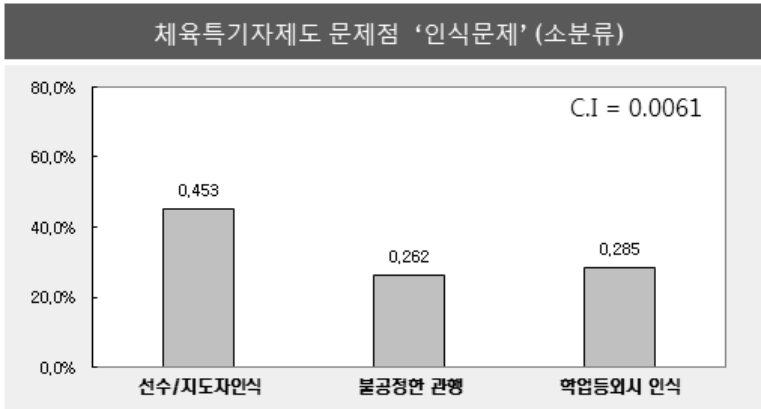
계층2(중분류)		계층3(소분류)	가중치(%)	우선순위
1.1 인식문제 (23.1%)		A. 선수/지도자의 인식 (45.3%)	10.5%	4
		B. 불공정한 관행 (26.2%)	6.1%	8
		C. 학업등외시 인식 (28.5%)	6.6%	6
1.2 학습권문제 (20.4%)		A. 수업결손보충 (41.6%)	8.5%	5
		B. 대회운영 (27.9%)	5.7%	9
		C. 진로교육 (30.6%)	6.2%	7
1.3 제도적 문제 (56.6%)		A. 운동부운영법규 (29.4%)	16.6%	2
		B. 공부하는 선수 (51.5%)	29.1%	1
		C. 선수폭력근절제도 (19.1%)	10.8%	3

23.1%, 학습권 문제 20.4% 순으로 나타났다. 즉 체육특기자제도의 문제점은 제도자체가 가지는 문제로부터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중요함을 말해준다(C.I=Confidence Interval, 신뢰지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육특기자제도의 문제점 항목별 상대적 가중치를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공부하는 학생선수(29.1%), 운동부운영법규(16.6%), 선수폭력근절제도(10.8%) 순으로 상위 3개 순위가 제도적 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구체적 실천이 가능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며, 여기에는 운동부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정비, 선수폭력근절을 위한 명시적이고 지속적인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① 인식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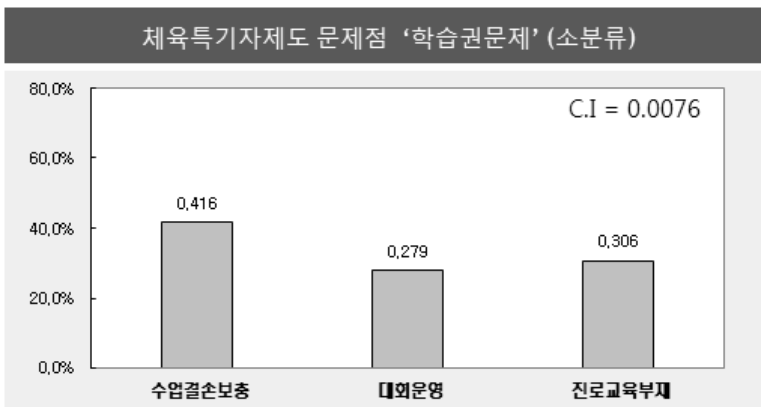
선수 및 지도자 인식 45.3%, 학업등외시 인식 28.5%, 불공정한 관행 26.2% 순으로 나타났다. 즉 선수 및 지도자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V-3〉 체육특기자제도 문제의 인식문제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

② 학습권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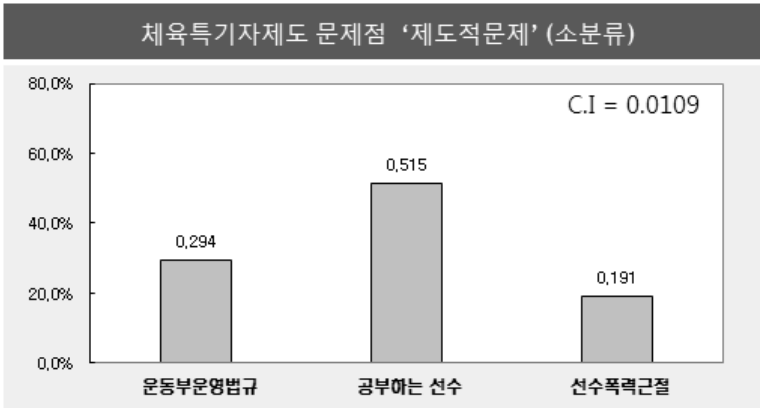
수업결손보충 41.6%, 진로교육부재 30.6%, 대회운영 27.9% 순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선수의 수업결손보충이 학습권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대적으로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V-4〉 체육특기자제도 문제의 학습권문제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

③ 제도적 문제

공부하는 학생선수 51.5%, 운동부운영법규 29.4%, 선수폭력근절 19.1% 순으로 나타났다. 즉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양성하는 제도마련이 상대적으로 중요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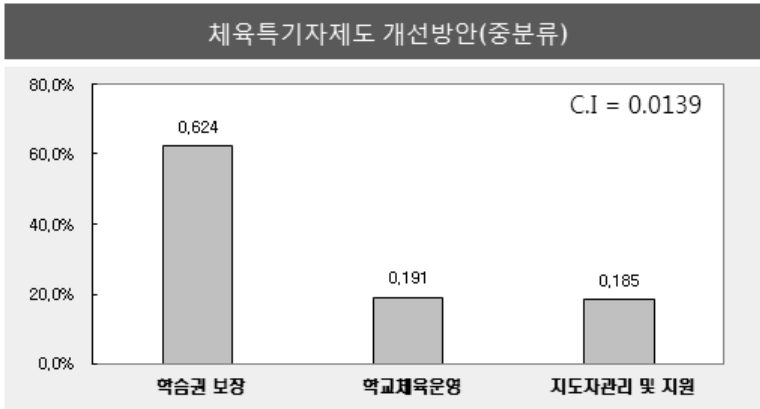


〈그림 V-5〉 체육특기자제도 문제점의 제도적 문제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

(2) '체육특기자제도 개선 방안' 분류별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체육특기자제도의 개선방안과 관련된 3개 분야의 하위 9개 항목에 대한 요소들 간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학습권보장 62.4%, 학교체육운영 19.1%, 지도자 관리 및 지원 18.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육특기자제도 개선방안의 항목별 상대적 가중치를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엄격한 학사관리(25.0%), 학습지원 제도(22.5%), 학업성적반영(14.9%) 순으로 상위 3개 순위가 학습권 보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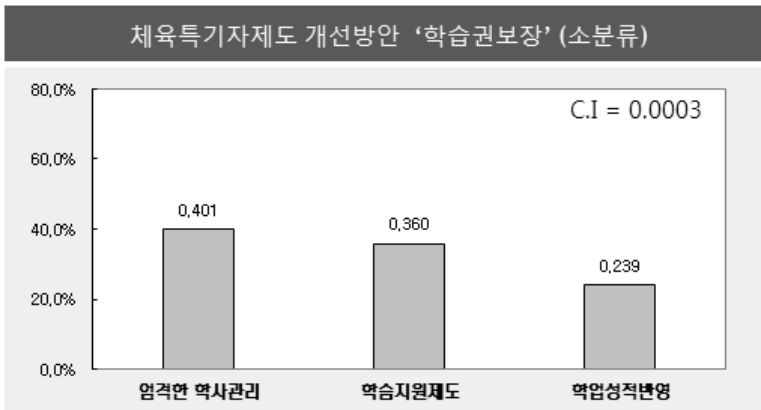
〈그림 V-6〉 체육특기자제도 개선방안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

〈표 V-9〉 체육특기자제도 개선 방안 항목별 상대적 가중치 분석

계층2(중분류)	계층3(소분류)	가중치(%)	우선순위
2.1 학습권보장 (62.4%)	A. 엄격한 학사관리 (40.1%)	25.0%	1
	B. 학습지원제도 (36.0%)	22.5%	2
	C. 학업성적반영 (23.9%)	14.9%	3
2.2 학교체육운영 (19.1%)	A. 주말리그확대 (26.5%)	5.1%	8
	B. 스포츠클럽 (15.7%)	3.0%	9
	C. 학교체육법 (57.8%)	11.0%	4
2.3 지도자 관리 및 지원 (18.5%)	A. 지도자교육 (35.0%)	6.5%	5
	B. 감독기구설치 (33.4%)	6.2%	6
	C. 급여개선 (31.6%)	5.8%	7

① 학습권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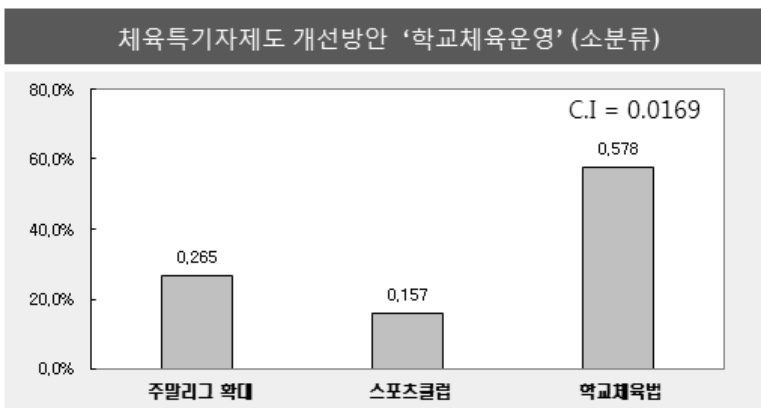
엄격한 학사관리 40.1%, 학습지원제도 36.0%, 학업성적반영 23.9% 순으로 나타났다. 체육특기자제도 개선을 위한 학습권 보장은 엄격한 학사 관리와 함께 학생선수에 대한 학습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V-7〉 체육특기자제도 개선방안의 학습권보장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

② 학교체육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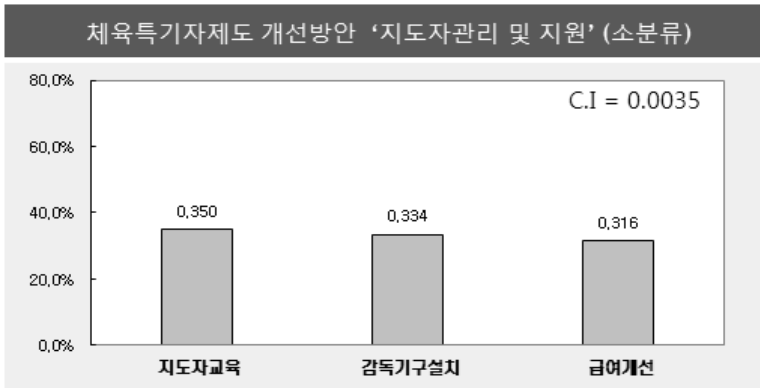
학교체육법 57.8%, 주말리그확대 26.5%, 스포츠클럽 15.7% 순으로 나타났다. 체육특기자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학교체육운영은 학교체육법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말리그 및 스포츠클럽 확대와 같은 학교체육운영 시스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그림 V-8〉 체육특기자제도 개선방안의 학교체육운영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

③ 지도자관리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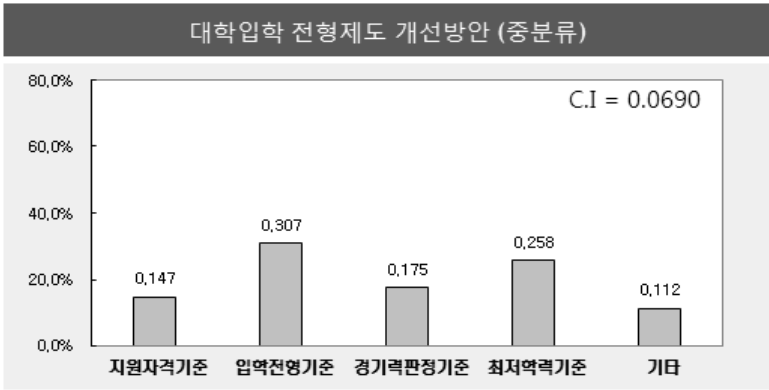
체육특기자제도 개선방안의 의 하위 항목별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지도자교육 35.0%, 감독기구설치 33.4%, 급여개선 31.6% 3.9% 순으로 나타났다. 체육특기자제도 개선을 위한 지도자관리 및 지원 항목은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현장지도자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엄격한 관리와 함께 적절한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림 V-9〉 체육특기자제도 개선방안의 지도자관리 및 지원 항목간 상대적 중요도

(3)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 방안’ 분류별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5개 분야의 하위 13개 항목에 대한 요소들 간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입학전형기준 30.7%, 최저학력기준 25.8%, 경기력판정기준 17.5%, 지원자격기준 14.7%, 기타 11.2% 순으로 나타났다. 즉 체육특기자 대학입학전형 제도 개선은 대학의 입학전형기준을 정비하는 것과 함께 체육특기자에 대한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준다.



〈그림 V-10〉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의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

〈표 V-10〉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 방안 항목별 상대적 가중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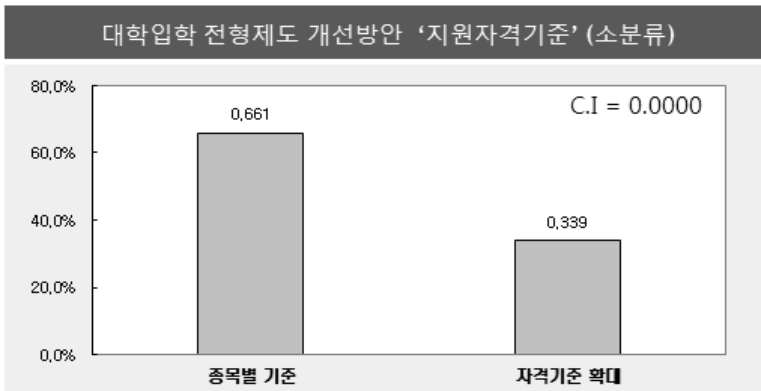
계층2(중분류)	계층3(소분류)	가중치(%)	우선순위
3.1 지원자격기준 (14.7%)	A. 종목별기준 (66.1%)	9.7%	5
	B. 자격기준확대 (33.9%)	5.0%	8
3.2 입학전형기준 (30.7%)	A. 대학자율결정 (40.8%)	12.5%	3
	B. 제반요소반영 (39.8%)	12.2%	4
	C. 적성검사실시 (19.4%)	6.0%	7
3.3 경기력판정기준 (17.5%)	A. 다양한기준적용 (45.3%)	7.9%	6
	B. 경기력객관화 (26.6%)	4.7%	11
	C. 경기력평가 (28.0%)	4.9%	10
3.4 최저학력 기준 (25.8%)	A. 최저학력 일괄반영 (50.7%)	13.1%	1
	B. 별도학업능력평가 (49.3%)	12.7%	2
3.5 기타 (11.2%)	A. 지도자처우개선 (44.0%)	4.9%	9
	B. 처벌강화 (26.0%)	2.9%	13
	C. 감독강화 (30.0%)	3.4%	12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의 항목별 상대적 가중치를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학력 일괄반영(13.1%), 별도학업능력평가(12.7%)의 최저학력기준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함으로써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에서 최

저학력 기준 반영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입학전형기준은 대학자율결정(12.5%)으로 하되 제반요소반영(12.2%)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① 지원자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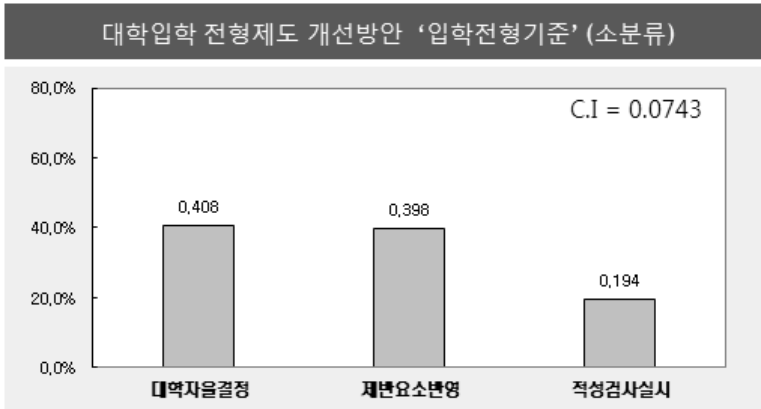
종목별 기준이 66.1%로 자격기준확대 33.9% 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육특기자 자격기준을 현행보다 세부적이고 타당한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종목별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V-11〉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의 지원자격기준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

② 입학전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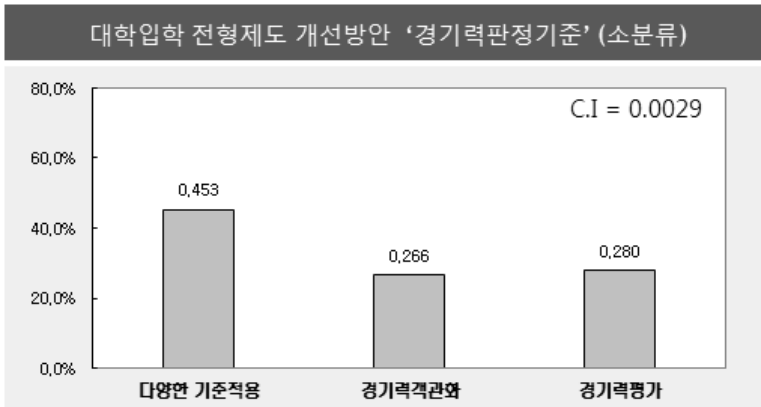
대학자율결정준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반요소반영 39.8%, 적성검사 실시 19.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육특기자 입학전형기준은 현행 대학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함을 보여주며, 여러 제반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는 전형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V-12〉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의 입학전형기준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

③ 경기력 판정기준

다양한 기준적용이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력평가 28.0%, 경기력 객관화 26.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육특기자 선발에 있어서 경기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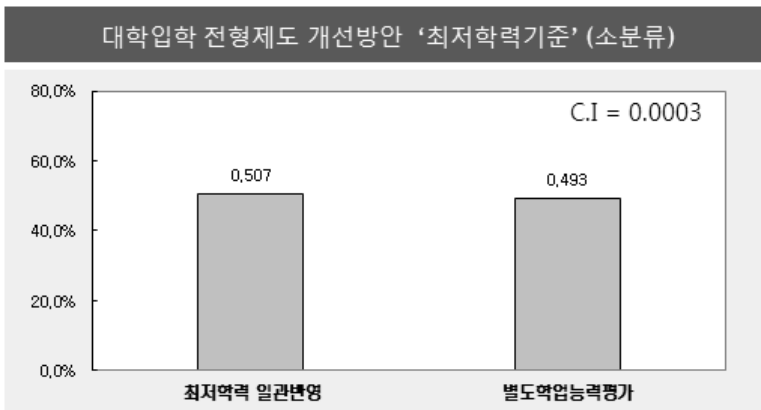


〈그림 V-13〉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의 경기력판정기준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

입학전형시 경기력 평가를 시행하고 경기력 평가를 객관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④ 최저학력기준

최저학력 일괄반영이 50.7%로 별도학업능력평가 49.4%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즉 최저학력을 일괄 반영과 학생선수를 위한 별도의 학업능력평가제도 마련이 비슷하게 중요하다고 평가한 점을 볼 때, 행정적, 제도적 차원의 검토가 선행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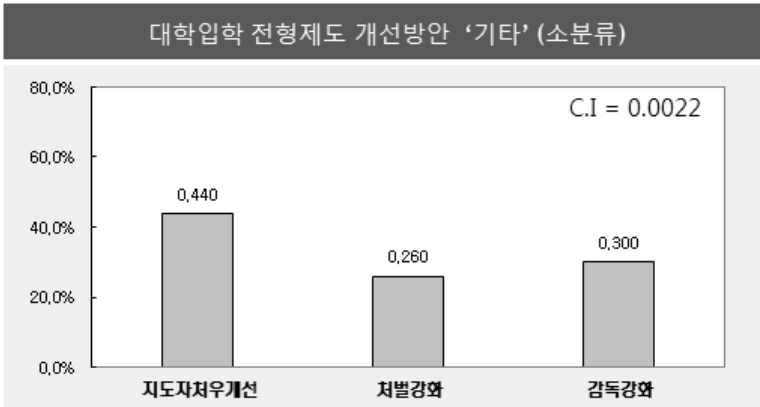


〈그림 V-14〉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의 최저학력기준 항목간 상대적 중요도

⑤ 기타

지도자 처우개선 44.0%, 감독강화 30.0%, 처벌강화 26.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항목은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의 직접적 항목으로 보기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운동선수의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발휘하는 대상임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이들의 처우개선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불법적, 불공정한 체육특기자 입학제도에의 개입을 차단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V-15〉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의 기타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

3. 요약 및 결론

1) 요약

(1) 체육특기자의 문제는 제도에 있다

체육특기자제도의 문제점과 관련된 질의 결과, 분야별로 제도적 문제 56.6%, 인식문제 23.1%, 학습권 문제 20.4% 순의 비중으로 응답되었다. 이는 응답자는 이 문제의 본질이 제도에 있다고 압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전체 문제점에서 공부하는 학생선수(29.1%), 운동부운영법규(16.6%),

선수폭력근절제도(10.8%) 순으로 상위 3개 순위가 제도적 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구체적 실천이 가능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며, 여기에는 운동부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정비, 선수폭력근절을 위한 명시적이고 지속적인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2) 체육특기자 제도의 개선은 학습권보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체육특기자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 결과 분야별로 학습권보장 62.4%, 학교체육운영 19.1%, 지도자 관리 및 지원 18.5% 순으로 응답되었고, 엄격한 학사관리(25.0%), 학습지원제도(22.5%), 학업성적반영(14.9%) 순으로 상위 3개 순위가 학습권 보장에 해당되었다.

이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체육특기자 제도의 개선이 학습권 보장과 이에 대한 입시의 반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은 학력기준의 설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 결과 분야별로 입학전형기준 30.7%, 최저학력기준 25.8%, 경기력판정기준 17.5%, 지원자격기준 14.7%, 기타 11.2% 순으로 나타났으나, 하위영역별로 재환산해본 결과 최저학력 일괄반영(13.1%), 별도학업능력평가(12.7%)의 최저학력기준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에서 최저학력 기준 반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결론 : 문제는 제도다. 학생선수도 가르쳐야 한다

(1) 중고등학교 시절의 교육적 적합성 강조

응답자의 대다수는 체육특기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두에서 학습권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는 문제의 출발점과 개선방향의 시발점 모두 학생선수의 운동활동이 교육적 적합성을 지녀야 한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2) 특기자 전형요소로서 학습능력 강조

체육특기자제도에 대한 엄정한 문제 및 비판의식과는 비교되게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에 대한 질의에서 입학전형기준에 대한 대학자율결정 및 제반요소반영에 대한 응답의 강조가 부각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최저학력기준 설정을 1, 2위가 되었다는 것은 입학과정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이라는 것에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고 간주해야 될 것이다.

(3) 제도로서의 체육특기자 문제를 인식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응답자는 체육특기자에 대한 문제를 개인이 아닌 제도에서 파생된 문제로서 파악하고 있었다. 이는 문제의 해결도 제도에서 시작해야 함을 의미한다.

VI. 체육특기자 대학입학 전형제도 개선방안

- 본 방안에서 제기하는 체육특기자 대학입학관련과 관련된 문제의 본질은 현행제도가 전형제도만의 문제가 아닌, 제도에서 제시한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현장의 관행에 있다는 점임
 - 이는 학교가 전형과정에 우선하여 합격생을 미리 내정하는 사전 스카우트 관행을 의미함
 -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감독간의 결탁구조가 발생되며, 진학에 있어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감독의 권위가 높아져 각종 비리가 발생되고 있음
- 또한 ‘체육특기자제도 선호의 양극화’, ‘대학스포츠의 위상약화’, ‘대학의 운동부운영에 대한 회의감 증폭’ 등의 외부 여건 변화는 현행 체육특기자 대학입학제도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음
- 이에 본 방안은 그 목표를 ‘대학스포츠의 교육적 적합성 제고’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4대 중점과제와 10대 실행과제를 배치하여 실행력을 높였음
- 제도적 기반확보라는 중점과제 내에는 중앙정부 관리 기능 일원화, 민간기구 권한 강화 및 정부와의 협조체계 구성, 관련 법 규정 정비의 세부과제를 두었는데 이는 명백히 불법인 스카우트 관행을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보완할 필요에 의해 제기됨
- 입학체계 개선이라는 중점과제 내에는 학생중심 선발체계 구축과 스카우트 관행의 종목별 단계적 폐기방안 강구가 포함됨
 - 이중 학생중심 선발체계 구축은 종목별 다수 응시제도 도입, 추천서 1회 발부 규정 폐지로 구분되며 이는 학교 중심적 선수 선발이라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임
- 비리적발 구조 확립은 비리 적발체계 구안 및 활용과 비리 처벌 수위 강화

및 우수사례 인센티브 제공방안 강구로 구분됨

- 이는 90년 이래 총 46건에 이르는 입시관련 비리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의미함

- 마지막으로 주변 여건 개선은 인기종목 고등학교 운동부의 전임코치 배치 확대, 고등-대한 간 학습권 보호연계 체계 확보, 기존 제도와 연계를 지닌 세부 개선 계획 도출로 구분되며 이는 기존의 다양한 학생선수 관련 문제의 개선방안과 유기적 연대를 지닌 각종 사업과의 연동성을 살리는 방안을 의미함

1. 체육특기자 대학입학 전형제도 개선방안의 기본 방향 설정

- 체육특기자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개선방안을 상술함에 앞서, 이 개선방안이 지향하고자 하는 구체적 문제의식과 그 논의의 전제조건을 설명하고자 함
- 이는 이 개선방안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 그 자체는 30여 년 간 지속되고 있는 체육특기자 제도와 이로 인해 파생된 스카우트 관행 등에 의해 현재 구조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그 결과 문제의 해결에 난항이 예상됨
- 이에 이후의 연구자나 정책담당자가 본 연구진이 직면한 문제의식과 개선을 위한 시각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기본방향을 적시하고자 함

1) 체육특기자 대학입학 전형제도 개선을 위한 문제제기

- 본 연구는 체육특기자의 대학입학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불법행위 등의 근절을 위해 입학전형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이 요구된다는 필요성에 의해 최초 기획되었음

- 그러나 연구의 진행과 함께 나타난 사실 중 한 가지는 문제의 본질이 체육특기자의 대학입학 전형제도 상의 문제가 아닌,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현장의 관행에 있다는 점임
 - 이미 수 년 전부터 각 대학은 대교협의 규정 및 교과부의 행정조처에 규정한 내용에 의거하여 체육특기자 전형과정에 특기자 심사소위, 전형관리 위원회 등의 기구를 설치하여 기준에 의거하여 체육특기자를 선발하고 있었음(부록 3참조)
 -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끼워팔기 등의 부정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뜻에 부합되는 이런 조치가 무력화된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음

(1)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 - 사전 스카우트 관행

- 여기서 현장의 관행이란 학교가 전형과정에 우선하여 합격생을 미리 내정하는 사전 스카우트 관행을 의미임
 - 고등학교 감독 및 대학교수 등의 관계자와의 면담 결과, 스카우트를 통해 미리 합격자를 내정한 후, 형식적으로 전형과정을 진행하여 해당자를 그대로 입학시키는 과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자료협조의 부족으로 정확한 근거는 제시할 수 없지만 면담을 통해 대다수의 대학에서 체육특기자 전형의 경쟁률이 거의 1 : 1의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이런 구조가 만연해 있다는 근거임
- 한 마디로 현 상황은 각 대학에서 마련하고 있는 전형과정이 스카우트 내정자의 입학에 거수기 노릇밖에 할 수 없는 구조라는 의미임
- 이런 상황에서 체육특기자 전형과정에서 별도의 절차를 더 장착시킨다 하더라도 동일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으로 판단됨

(2) 스카우트 관행이 파생시킨 문제점 - 감독의 권한 강화 및 결탁구조

- 말할 나위 없이 대입과정에서의 스카우트관행은 그 자체가 고등교육법에 위배되는 불법사안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관련비리의 근본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스카우트는 특정 대학의 지도자가 자신이 원하는 운동선수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특정 종목에서 특정 지역에서 선수수급이 장기화 된다면, 그 당사자, 즉 고등학교-대학 지도자와 결탁의 구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일부 프로스포츠가 존재하는 단체 구기 종목에 만연한 ‘끼워팔기’와 이로 인한 금품수수와 같은 비리는 바로 이 결탁구조 속에서 나타난 산물로 파악됨
- 또한 대입과정에서의 스카우트 관행은 고등학교와 중학교, 심지어는 초등학교 운동부의 운영에 영향을 미쳐 지도자의 지나친 권한 확대로 인해 학생선수에 대한 반인권적 행위와 금품수수 등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저해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일부 종목에서 중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황제’라고 불릴 만큼 학부모에 대한 영향력이 강한 편인데, 이는 스카우트 관행으로 인해 일선학교운동부 지도자가 학생선수의 유일한 진학창구로 기능하며, 경기출전기회 부여 등의 권한이 크기 때문임
 - 자녀의 스카우트를 위해 불법적으로 조성한 자금은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공범의식을 확대시켜 비리의 유일한 고발자로서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정리하자면 체육특기자 대학입사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본질을 요약하자면
 -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형과정’이 아닌 이런 전형과정의 부실화

를 야기한 ‘사전스카우트 관행’이며

- 과정에서 실제로 학생선발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학 운동부 지도자가 고등학교 지도자와 결탁하는 구조임
- 물론 이 같은 문제는 선수의 수요가 많고 인기가 높은 일부 종목에만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지만, 모든 종목에서 학생선수의 대학진학이 스카우트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컨대 관련된 문제의 소지는 체육계 전반에 잠재되어 있는 상태로 파악됨
- 더욱 안타까운 바는 현재 체육특기자의 대학입학과 관련된 대다수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현 상황에 대한 통제기구가 거의 없다는 사실임
 - 사전스카우트 관행은 체육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단위 대학에서는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임
 - 민간단체인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경우 민간단체로서 회원학교에만 제한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한계가 존재함
 - 유관정부부서는 학교건강안전과와 대입제도과로 양분되어 있으며, 대학자율이라는 한계가 존재하여 개입이 제한적임

(3) 문제의식에서 나타난 정책적 시사점

- 문제의식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사전 스카우트 관행의 무력화를 위한 자율경쟁체계 도입의 필요성 제기와 체육특기자 전형의 관리 감독 기능 강화의 필요성 제기로 구분됨

가. 자율경쟁체계 도입의 필요성 제기

- 사전 스카우트 관행 및 이로 인한 파생문제에 대한 근본적이며 강력한 방지방법은 ‘자율경쟁체계의 도입’이 있음

- 이는 대학을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선수의 학교선택의 자유권을 실제적으로 보장해주는 방안을 의미함
- 이를 위해 대한체육회의 지원서 1부 발부 규정을 개정하고, 대학이 체육특기자의 전형기간을 전후기 수시와 정시를 포함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여, 개별 체육특기자가 다양하게 복수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나. 체육특기자 전형의 관리 감독 기능 강화의 필요성 제기

- 현재 정부 당국과 한국스포츠총장협의회 관리기능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음
- 대학자율이라는 명분 때문에 정부의 대학에 대한 관여가 최소화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개입의 소지는 매우 적은 것이 사실임
-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의 해외사례는 우리의 사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현재 우리의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정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제시된 추상적이고 기본적인 규정에 의거하여 특기자 전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문부과학성의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하에서 특기자 전형이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우리보다 광범위한 대학자율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구인 NCAA가 체육특기자를 특별관리하여 대학자율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2) 체육특기자 대학입학 전형제도 개선방안 논의의 전제조건

-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한 상황은 최근 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조용하지만 지속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본격적 논의에

앞서 전제해야할 사안으로 판단됨

(1) 체육특기자 대학입학에 관련된 환경변화

- 본 개선방안의 전제조건은 특기자 대학입학 과정에 소리 없이 붕괴되고 있다는 근거로서 이는 ‘체육특기자제도 선호의 양극화’, ‘대학스포츠의 위상약화’, ‘대학의 운동부운영에 대한 회의감 증폭’으로 요약됨

① 체육특기자제도 선호의 양극화

- 지금까지 나타난 대학입학과정에서의 비리는 이른바 인기 종목으로 분류되는 일부 종목에 집중되어 있어 있는 반면, 비인기 종목의 경우 특기자제도 자체의 호감도가 떨어져 있음
- 이는 체육계 고등학교의 진학-진로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체육계 고등학교는 비인기 종목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 졸업자의 진학-진로현황에서 특기자 전형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안용규 외, 2007)

〈표 VI-1〉 2004년 체육고등학교 학생선수 진학-진로 현황

구 분		강원	경남	경북	대구	대전	서울	전북	제주
진 학	특기자 전형	46	24	32		57	121	11	10
	일반 전형		53	21		15		45	18
실업팀		4	6	5		8	14	18	
재수									
기타		2		6					
합 계		52	83	64		80	135	74	29

〈표 VI-2〉 2006년 체육고등학교 학생선수 진학-진로 현황

구 분		강원	경남	경북	대구	대전	서울	전북	제주	충북
진 학	특기자 전형	57	25	29	24	62	123	9	6	
	일반 전형		52	31	26	21		51	18	53
실업팀		7	4	5	6	7	7	6	2	7
재수				2						
기타		3	4	7	2	2		8	1	16
합계		67	85	74	58	92	135	74	27	76

- 상기자료는 2004년과 2006년의 체육고등학교 학생선수 진학-진로 현황인데 이에 따르면
 -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체육계 고등학교에서 특기자 전형으로 진학하는 비율에 비해 일반 전형을 통한 입학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 또한 시계열별로 볼 때, 일반전형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비율이 증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부록 -1에 의하면 2011년도 체육특기생은 모집인원 2,597명에 선발인원 2,297명으로 모집비율대비 실제 선발비율이 88.4%로 모집인원의 10%이상을 채우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특기자 전형에서 인기 종목의 경우 끼워팔기와 같은 비리가 발생할 정도로 선호되지만, 비인기 종목의 경우 여러 가지 요인에서 선호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

② 대학 스포츠의 위상약화

- 한편 인기종목의 전통적 우수선수 양성경로인 『고등학교 - 대학 - 프로 및 실업팀 입단』의 구조에 균열이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한국프로스포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해당 종

목의 전문가는 야구의 경우 이른 바 고교랭킹 50위권에 드는 선수들은 프로를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이른바 ‘대박고졸신인선수’로 지칭되면서 성공사례가 다수 만들어지고 있음

－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에 따라 축구의 경우도 반드시 대학을 가야 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틀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 이런 현상은 갈수록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프로선수의 선수수명이 짧은데다가¹⁸⁾ 병역의무로 인한 선수생활 중단기간이 불가피한 사정때문임
- 운동선수의 입장에서 보면 되도록 이른 시기에 프로로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에 따라 대학스포츠, 특히 인기종목의 경우 위상약화는 앞으로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됨

③ 대학의 운동부운영에 대한 회의감 증폭

- 최근 대학은 그들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 요구, 자금압박, 신입생 인구의 축소 등의 요인으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운동부운영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음
-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운동부를 육성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학교 내 통합’과 ‘학교의 홍보’ (한태룡 외, 2009)등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현재 대학운동부가 이런 스스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운동부 애들은 다른 애(일반학생)들과는 달리 합숙소에 틀어박혀 운동만 하고 수업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하다못해 체육과 애들도 개들 얼굴을 모르는

18) J리그 및 일본프로야구선수의 평균은퇴연령이 26세이며, 우리의 프로축구 K리그의 선수수명은 평균 4년에 지나지 않음(권민혁, 2010)

경우도 많은데..... 지금은 학교대항리그전이라도 하지만 이전에는 지들끼리 멀리 가서 시합하고 오는데 그걸 누가 ‘우리’팀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대학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다고 합시다. 관심도 없어요. 신문에 작게 실리는 건데, 그걸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요.

한 마디로 연고대 말고, (군소대학에서) 운동부를 키워봤자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마 속내는 모르겠지만 그 대학도 연고전(두 학교 간에 매년 이루어지는 교류전)을 제외하면 운동부를 키우는 메리트가 없다고 말할 겁니다(2011-09-17, 면담대상자 p교수).

-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대학은 실행에 이르지지는 못했지만, 스스로 운동부 축소를 위한 구체적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는데, 당시 해당 대학 관계자는 운동부 축소로 인한 여유자금을 일반학생을 위한 복지 및 시설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대학의 존립을 위해 더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함

- 앞서 언급한 내외적 환경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소위 비인기 종목에서 체육특기자 입학에 대한 메리트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인기 종목의 우수선수들은 대학스포츠를 이탈하고 있으며, 상위 경기력을 지니지 못한 대학은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운동부 육성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음
- 이런 변화는 대학교육의 보편화, 프로스포츠의 활성화, 신입생인원 축소로 인한 대학의 자금압박 증대 등의 현상이 지속화된다는 점을 감안하건데 향후 더욱 강화될 것임

(2) 환경변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종목군별 차별적 정책대응의 필요성 대

두’, ‘대학운동부 운영의 패러다임 변화 - 학생중심적, 교육적합적 운영’로 구분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종목군별 차별적 정책대응의 필요성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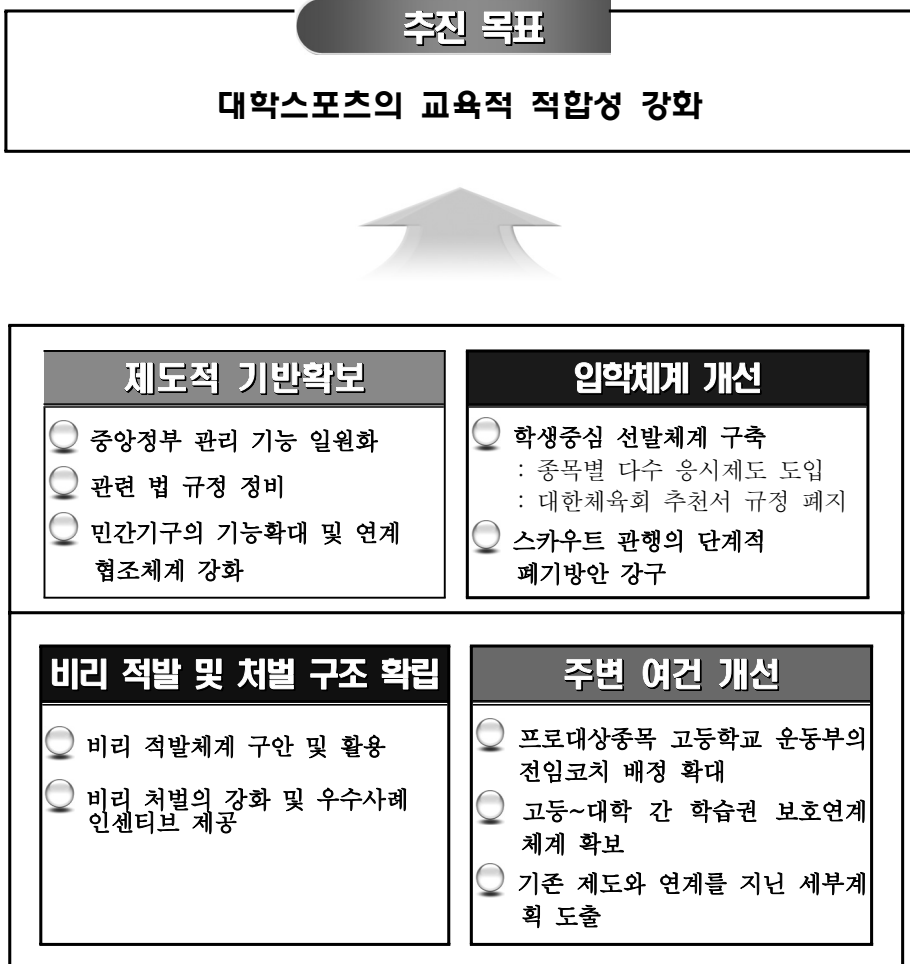
- 특기자제도 선호의 양극화추세는 스카우트, 끼워팔기 등 관련 입학비리를 체육전반에 거친 문제로 확대해석하여 모든 종목에게 일괄적인 정책을 운영하는 것에 많은 무리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하여 향후 관련정책은 인기종목과 비인기종목을 분리하여 적용해야 할 필요가 존재하며, 종목군내의 종목선정을 이는 각 종목의 특성 및 고등학교 졸업인원-대학수용인원의 고려에 의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나. 대학운동부 운영의 패러다임 변화 - 학생중심적, 교육적합적 운영의 필요성 대두

- 인기종목 우수선수의 이탈 및 대학의 운동부 운영부담 증가라는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 대학 스스로 운동부 운영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 지금까지 대학 운동부는 실업팀이나 프로팀의 신병교육대와 같이 경기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면서 대학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있었음
 - 그러나 대학이 방기했던 교육적 기능이야 말로 대학스포츠의 블루오션이면서, 프로스포츠에 대비되는 대학스포츠의 강점이라 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프로보다 경기력 수준이 떨어지더라도, 교육적 기회를 얻고자 하는 대다수 체육특기자에 대한 유인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대학 스스로도 한국스포츠 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임

2. 체육특기자 대학입학 전형제도 개선의 방안

- 이 같은 문제의식을 전제로 체육특기자 대학입학 전형제도 개선의 방향에서 목표는 ‘대학스포츠의 교육적 적합성 제고’로 설정하였음



〈그림 1〉 체육특기자 대학입학 전형제도 개선의 방안(안)

- 이는 체육특기자의 대학입학과 관련된 문제가 전형제도의 개선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대학스포츠 전체의 환경변화에 따라 시급히 대처하여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임
- 또한 목표달성을 위해 4대 중점과제와 10대 실행과제를 배치하여 실행력을 높였는데 이는 그림-1과 같음

1) 스카우트 관행의 금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보

- 중앙정부 관리 기능 일원화
- 민간기구의 권한 강화 및 정부와의 협조체계 구성
- 관련 법 규정 정비

(1) 의의 및 필요성

- 현재 체육특기자 대학입학과 관련된 사항은 대학자율이라는 한계로 인해 방기되다시피하고 있음
- 그러나 해외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우 우리보다 광범위한 대학자율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구인 NCAA가 체육특기자를 특별관리하여 대학자율의 예외를 인정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일본도 문부과학성의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하에서 특기자 전형이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우리의 경우 관련된 인적 인프라는 충분하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 및 인프라가 부족하여 제도적 개입을 실시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함
- 또한 문제의 본질로서 평가되고 있는 스카우트 관행은 명백히 불법인데도 이에 대한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데, 법 제도적 규정을 통해 이런 사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실행방안

① 중앙정부 관리 기능 일원화 및 민간기구의 권한 강화 및 협조체계 구성

가. 사업목적

- 대학스포츠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행정적 기반 조성

나. 사업 방향

○ 중앙정부 관리 기능 일원화

: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가칭)학교체육법 상에 체육특기자 입학과 관련된 정부의 관리 책임을 명기하여 중앙정부의 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여한 후

: 교육과학기술부 내의 부서별로 이원화(학교건강안전과와 대입제도과) 되어 있는 담당업무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진시킴

○ 민간기구의 권한 강화 및 협조체계 구성

: 학교체육법 시행령에 체육특기자 입학과 관련된 심의기구를 명기하여 한국스포츠총장협의회 위상 및 권한을 강화함

: 이후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② 관련 법규정 정비

가. 사업목적

- 불법 스카우트 관행의 금지를 위한 법적 기반 조성

나. 사업 방향

- 한국스포츠총장협의회 내에 TF팀 구성
: 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과 현행 스카우트관행간의 법적 충돌요소 및 문제점에 따른 세부 개선안 도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의 의견절충을 통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개정

2) 체육특기자 입학체제 개선

- 학생중심 선발체제 구축
: 종목별 다수 응시제도 도입, 추천서 1회 발부 규정 폐지
- 스카우트 관행의 종목별 단계적 폐기방안 강구

(1) 의의 및 필요성

- 현행 스카우트제도의 운영구조는 학교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개별 대학이 자신이 원하는 운동선수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구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는 프로팀의 신인 드래프트과정보다 비합리적이고 비교육적임
- 학생선수는 원칙적으로 졸업하는 해당학년에 특정대학에 1회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자신의 요구에 따른 대학을 진학하기 어려움
 - 이는 체육특기생 입학과정에서 재수(再修)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 대한체육회 명의의 지원서가 1부 밖에 발급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임
- 한편 대학이 전형과정에 우선하여 합격생을 미리 내정하는 사전 스카

우트 관행은 그 자체가 명백히 불법이고 특기자 대학입학 전형과정을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음

- 그러나 이에 대한 제재는 특기생 전형에 대한 선호도가 양극화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계적, 계획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음

(2) 실행방안

① 학생중심 체육특기자 선발 체계 구축

가. 사업목적

- 체육특기자 대학입학의 다수 응시기회 제공을 통한 스카우트 관행 근절

나. 사업 방향

- 시기별 응시기회제공을 위한 기반조성
 - : 한국대학스포츠총장 협의회 주관으로 종목별로 대학의 입시기회를 전후기 수시, 정시 등으로 분류하여 다수의 응시가 가능하도록 배치 계획 수립
- 체육특기자 대학입학 정보 센터 운영
 - : 대한체육회 및 한국대학스포츠 총장협회의 전산시스템에 체육특기자 입학관련 정보 DB를 탑재함
- 체육특기자 대학입학 상담소 운영
 - : 대한체육회 및 한국대학스포츠 총장협의회 산하에 체육특기자 대상의 오프라인 기반 입학상담소 운영
- 대한체육회 추천서 1부 발급규정 폐지
 - : 불법성과 관련된 문제제기 절차(세미나 및 공청회 등)이후, 규정개

정을 통한 관련 규정 폐지

② 스카우트 관행의 단계적 폐기방안 강구

가. 사업목적

- 스카우트 관행의 계획적 축소를 통한 학생선수의 입학피해 최소화

나. 사업 방향

- 한국스포츠총장협의회 내에 스카우트 관행 축소를 위한 TF팀(가칭) 구성
 - : 대한체육회 자료에 의거하여 종목별 고졸 선수인원 대비(공급) 대학 운동부 졸업인원수 (수요)과악을 통한 종목별 대입 경쟁률 산정
 - : 대입 경쟁률이 낮아 분란의 소지가 적은 종목대로 연차별 시행 계획 수립
 - : 스카우트 관행 관리를 위한 스카우트 철폐를 위한 종합 계획서(가칭) 작성
- 스카우트 관행에 대한 평가 실시
 - : 경쟁률에 기초한 스카우트 관행 척도 개발 후 평가 실시
 - : 우수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강구

3) 비리적발 구조 확립

- 비리 적발체계 구안 및 활용
- 비리 처벌 수위 강화 및 우수사례 인센티브 제공방안 강구

(1) 의의 및 필요성

- 체육특기자의 입시비리에 관한 수사 및 판결현황조사 결과 90년 이래 총 46건으로 거의 매년 평균 2건 정도 발생되고 있는데, 입시비리는 피해를 당한 학부모의 고발에 의해 개시되는 특징에 미루어 피해를 당하지 않는 비율을 감안해보면 비리가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사건은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이후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영장의 기각되는 경우가 많고, 영장까지 가더라도 실제 처벌이 되는 경우는 더욱 드문 편인데 이는 ‘수사의 어려움’, ‘다수의 연루’, ‘구명 운동’ 등의 요인 때문임
- 이 같은 약한 처벌의 약화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등의 적극적인 예방노력이 부족하여 일부 종목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현장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태임
- 또한 이런 비리는 중고등학교 운동부까지 영향을 미쳐 체육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2) 실행방안

① 비리적발체계 구안 및 활용

가. 사업목적

- 체계적 대응을 통한 체육특기자 대학입학비리 근절의 기반 조성

나. 사업 방향

- 시도 교육청 단위 입학비리 조사 및 감사팀 설치 및 운영

: 대다수 입학비리가 고교-대학 감독 간의 유착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관리감독이 유리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입학비리 조사팀 구성

○ 교육청 단위 비리적발 전산시스템

: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고등학교 학생선수 및 학부모가 관련 비리를 상
시 고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 및 관리

○ 운동부 지도교사 역량강화 및 비리적발 보상체계 구안

: 감독교사가 실제적으로 운동부 운영에 간여하여 상황을 통제할 수 있
는 제도적 통로를 제공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프
로그램을 제공함

: 운동부 지도교사의 비리적발권 부여 및 신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규정 제정 후 운영

② 비리처벌 수위 강화 및 우수사례 인센티브 제공

가. 사업목적

- 관련 비리에 대한 처벌 및 우수사례에 대한 보상의 강화를 통한 입
학비리 근절 풍토 조성

나. 사업 방향

○ 비리에 대한 연대책임 체계 구축

: 관련비리 발생 시 감독에 대한 법적 제재 뿐만 아니라 관리 상의 책
임을 들어 체육위원회장 및 총장까지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체계 형성
: 한국스포츠총장협의회 회원학교의 자체결의 및 개별대학 규정의 개
선을 통한 제도적 환경 구성

○ 특기자 대학입학 과정 평가시스템 개발 및 운영

- : 특기자 대학입학 관련 공정성 및 책임성 등의 항목을 포함한 평가지표 개발
- : 한국스포츠총장협의회 평가 실시
- : 처벌 및 인센티브 방안 강구

4) 주변 여건 개선

- 인기종목 고등학교 운동부의 전임코치 배정 확대
- 고등-대학 간 학습권 보호연계 체계 확보
- 기존 제도와 연계를 지닌 세부 개선 계획 도출

(1) 의의 및 필요성

- 현재 초중등 학교의 운동부 지도자는 전임코치와 일반코치로 분류되면 그 인원수는 표-1과 같음

〈표 VI-3〉 학교운동부 현황

급별	학교수 (’09년)	학교 운동부 팀수 (남+여)	학교운동부지도자(코치) 현황				
			계	전임코치		일반코치	
				인원수	월급여 (천원)	인원수	월급여 (천원)
초	5,829	3,650	1,865	1,305	1,500	560	1,500~ 2,500
중	3,106	3,301	2,030	1,445		585	
고	2,225	2,204	1,580	884		696	
계	11,160	9,155	5,475 (100%)	3,634 (66.4%)		1,841 (33.6%)	

- 이중 전임코치는 시도교육청이 임용하는 코치여서 중앙의 통제가 비교적 용이한 반면, 일반코치는 단위학교 자체 임용하는 코치이기 때

문에 전혀 통제의 수단이 없음

-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전임코치를 선발하는 규정에 따르면 저학년, 비 인기 종목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속적으로 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고등학교 인기종목에 대한 수혜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코치의 비율에서도 이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음
- 한편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대다수의 전문가가 체육특기자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학습권과 연동시키고 있다는 점임
-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그 난이도가 학생선수의 학습능력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
- 이에 현재 체육계 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체육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단체기종목에 적용하여 고등학교 학생선수가 이를 이수하고 이 결과로 평가를 받는 시스템이 조기에 안착될 필요가 있음
 - － 특히 체육계 교육과정은 운동시간을 정규교육과정에 편입시킨 특징이 있어 학습권보장제 등으로 인한 운동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도 존재함
- 이전부터 체육특기자제도 및 대입관련된 개선사안이 구안되었던 것이 사실이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던 것은 대다수의 선행방안이 고등학교와 대학은 연동시키지 못한 바에 있음
- 그러나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체제하에 학생선수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가 투입되어 상황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이런 결실과 연동하여 지속적 노력이 첨가된다면 조속한 시간 내에 체육특기자 입시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2) 실행방안

① 인기종목 고등학교 운동부의 전임코치 배정 확대

가. 사업목적

- 전임코치 배정을 통한 비리집중 종목에 대한 관리 환경 조성

나. 사업 방향

○ 전임코치 확대 계획 강구

- : 신규팀 창단 및 기존 팀의 인력 충당을 통한 해당종목에 대한 전임 코치 배정 확대 계획 수립

○ 전임코치 배정 및 교육실시

- : 통상적 교육에 더하여 비리예방관련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 : 비리적발 체계에 편입하여 사전비리예방을 위한 활동 전제

② 체육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확대 적용을 통한 고등-대학 간 학습 연계방안 강구

가. 사업목적

- 체육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도입을 통한 학생선수 대상 교육적 연속성 부여

나. 사업 방향

○ 체육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현장적합성 검토

- : 현장여건(단위학교 체육교사의 체육이론 교습능력 점검, 실기평가체

- 계 구성, 단위학교의 독립 학급구성요건 등)에 따른 내용검토
- 체육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적용 및 실행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6). 체육특기자제도의 개요. 내부분서
- 권순용(2011). 미국의 체육특기자제도, 체육과학연구원 : 스포츠과학 118
- 김정효(2011). 일본의 체육특기자제도, 체육과학연구원 : 스포츠과학 117
- 뉴시스(2007-07-31). 심층분석-체육특기자 비리1. 끈질긴 복마전. 온
종립
- 류태호(2004). 학생선수 육성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체육시민연대,
문화연대 학생선수 육성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18-28.
- 문화일보(2000-02-15). 체육특기생 무엇이 문제인가. 김정구
-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2010). 학생선수 인권사안 실태조사.
- 이태구(2011). 중등학교에서의 학생선수의 진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 **2011학교체육진흥연구회 정책세미나 자료집**
- 이학래(2010). 한국현대체육사. 단국대학교 출판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1).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부록 1>

체육 특기자 대학입학 현황 조사

1. 조사의 개요

1) 조사목적

- 체육특기자 대학입학자의 지역별, 국공립별 총원 및 시기별 유동성 파악을 통해 제도운영 실태파악

2) 조사방법

-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입수한 2009~2010년 특기자입학현황에 의거하여 체육특기자만을 선별하여 이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함

2. 조사결과

1) 체육 특기생 모집대학 현황

(1) 지역별 모집대학 현황

- 2009년 및 2010년에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각각 2009년 15개(13.9%), 2010년 14개(1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1년에는 서울에서 17개(15.6%), 경기 15개(13.8%) 순서로 나타남
- 반면 2009년에서 2011년 까지 울산 지역에서는 체육 특기생을 모집

한 대학이 1개(0.9%)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표 1-1〉 지역별 체육 특기생 모집 대학교 현황

		2009년		2010년		2011년	
		빈도	%	빈도	%	빈도	%
지역	총계	108	100.0	107	100.0	109	100.0
	서울	15	13.9	14	13.1	17	15.6
	부산	9	8.3	9	8.4	9	8.3
	대구	3	2.8	3	2.8	3	2.8
	인천	3	2.8	3	2.8	2	1.8
	광주	4	3.7	4	3.7	3	2.8
	대전	5	4.6	5	4.7	5	4.6
	울산	1	0.9	1	0.9	1	0.9
	경기	15	13.9	14	13.1	15	13.8
	강원	8	7.4	9	8.4	7	6.4
	충북	6	5.6	6	5.6	7	6.4
	충남	10	9.3	11	10.3	10	9.2
	전북	6	5.6	5	4.7	6	5.5
	전남	6	5.6	6	5.6	6	5.5
	경북	9	8.3	9	8.4	9	8.3
	경남	6	5.6	6	5.6	7	6.4
	제주	2	1.9	2	1.9	2	1.8

(2) 유형별 대학교 현황

- 대학 유형별로 체육 특기생을 모집하는 대학을 조사한 결과 2009년부터 2011년 까지 각각 사립대학교가 83개, 84개, 87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 공립 대학교는 2009년 2개에서 2010년, 2011년에 1개로 줄었으며, 국립 대학교 역시 2009년 23개에서 2010년 22개, 2011년 21개로 점차 감소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표 1-2〉 유형별 대학교 현황

		2009년		2010년		2011년	
		빈도	%	빈도	%	빈도	%
유형별	총계	108	100.0	107	100.0	109	100.0
	공립	2	1.9	1	0.9	1	0.9
	국립	23	21.3	22	20.6	21	19.3
	사립	83	76.9	84	78.5	87	79.8

2) 체육 특기생 모집비율 현황

(1) 지역별 체육 특기생 모집 비율 현황

- 충북에서 2009년 72.6%(7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0년, 2011년에도 각각 70.5%(79명), 76.6%(95명)로 계속해서 체육 특기생 모집 인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3〉 지역별 체육 특기생 모집 비율 현황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		체육(명)		기타(명)	전체		체육(명)		기타(명)	전체		체육(명)		기타(명)
	빈도	빈도	%	빈도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빈도	%	빈도	%
총계	6,784	2,363	34.8	4,421	65.2	6,566	2,489	37.9	4,077	62.1	7,769	2,597	33.4	5,172	66.6
서울	2,457	484	19.7	1,973	80.3	2,373	484	20.4	1,889	79.6	2,829	530	18.7	2,299	81.3
부산	453	181	40.0	272	60.0	481	230	47.8	251	52.2	467	221	47.3	246	52.7
대구	216	31	14.4	185	85.6	213	29	13.6	184	86.4	273	37	13.6	236	86.4
인천	230	65	28.3	165	71.7	189	68	36.0	121	64.0	229	57	24.9	172	75.1
광주	193	129	66.8	64	33.2	196	129	65.8	67	34.2	185	124	67.0	61	33.0
대전	309	124	40.1	185	59.9	349	124	35.5	225	64.5	357	126	35.3	231	64.7
울산	54	13	24.1	41	75.9	70	14	20.0	56	80.0	68	14	20.6	54	79.4
경기	862	340	39.4	522	60.6	769	363	47.2	406	52.8	1,246	380	30.5	866	69.5
강원	255	146	57.3	109	42.7	193	112	58.0	81	42.0	260	121	46.5	139	53.5
충북	106	77	72.6	29	27.4	112	79	70.5	33	29.5	124	95	76.6	29	23.4
충남	532	186	35.0	346	65.0	406	241	59.4	165	40.6	541	193	35.7	348	64.3
전북	398	168	42.2	230	57.8	394	126	32.0	268	68.0	353	159	45.0	194	55.0
전남	201	129	64.2	72	35.8	181	117	64.6	64	35.4	190	122	64.2	68	35.8
경북	286	146	51.0	140	49.0	339	214	63.1	125	36.9	376	248	66.0	128	34.0
경남	159	98	61.6	61	38.4	227	113	49.8	114	50.2	197	124	62.9	73	37.1
제주	73	46	63.0	27	37.0	74	46	62.2	28	37.8	74	46	62.2	28	37.8

- 광주 지역에서 2009년, 2010년 체육 특기생 모집 인원이 66.8%(129명)로 나타났으며 2011년은 모집인원이 67.0%(124명)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는 체육 특기생 모집인원 비율이 19.7%(484명)로 상대적으로 타 지역 보다 체육 특기생 모집 인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2) 유형별 체육 특기생 모집 비율 현황

- 2009년에 국립 대학교에서 체육 특기생 모집 인원 비율이 61.5%(2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23.2%(19명)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2011년에는 58.5%(24명)로 체육 특기생 모집 인원 비율이 다시 크게 증가하였음
- 반면에 공립대학교는 2009년 체육 특기생 모집 인원 비율 각각 23.8%(537명)로 나타났으며 2010년 508명(23.9%), 2011년 535명(22.0%)로 나타나 체육 특기생 모집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1-4〉 유형별 체육 특기생 모집 비율현황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	체육(명)		기타(명)		전체	체육(명)		기타(명)		전체	체육(명)		기타(명)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빈도	%	빈도	%
유형	총계	6,784	2,363	34.8	4,421	65.2	6,566	2,489	37.9	4,077	62.1	7,769	2,597	33.4	5,172	66.6
	국립	39	24	61.5	15	38.5	82	19	23.2	63	76.8	41	24	58.5	17	41.5
	공립	2,252	537	23.8	1,715	76.2	2,129	508	23.9	1,621	76.1	2,434	535	22.0	1,899	78.0
	사립	4,493	1,802	40.1	2,691	59.9	4,355	1,962	45.1	2,393	54.9	5,294	2,038	38.5	3,256	61.5

3) 체육 특기생 선발비율 현황

(1) 지역별 체육 특기생 선발비율 현황

- 2009년 제주도에서 체육 특기생 선발 인원 비율이 76.7%(3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2010년에는 전남이 73.8%(9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1년에는 다시 전남에서 70.8%(9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5〉 지역별 체육 특기생 선발비율 현황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		체육(명)		기타(명)	전체		체육(명)		기타(명)	전체		체육(명)		기타(명)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빈도	%	빈도	%
총계	5,258	2,087	39.7	3,171	60.3	5,229	2,186	41.8	3,043	58.2	6,125	2,297	37.5	3,828	62.5
서울	2,018	457	22.6	1,561	77.4	2,033	465	22.9	1,568	77.1	2,370	507	21.4	1,863	78.6
부산	384	179	46.6	205	53.4	411	201	48.9	210	51.1	428	199	46.5	229	53.5
대구	211	30	14.2	181	85.8	209	27	12.9	182	87.1	176	30	17.0	146	83.0
인천	170	61	35.9	109	64.1	136	66	48.5	70	51.5	156	54	34.6	102	65.4
광주	153	108	70.6	45	29.4	155	112	72.3	43	27.7	146	100	68.5	46	31.5
대전	216	105	48.6	111	51.4	228	95	41.7	133	58.3	257	111	43.2	146	56.8
울산	39	13	33.3	26	66.7	54	14	25.9	40	74.1	61	13	21.3	48	78.7
경기	644	314	48.8	330	51.2	585	335	57.3	250	42.7	836	354	42.3	482	57.7
강원	160	119	74.4	41	25.6	125	98	78.4	27	21.6	190	116	61.1	74	38.9
충북	102	76	74.5	26	25.5	92	72	78.3	20	21.7	108	90	83.3	18	16.7
충남	385	155	40.3	230	59.7	304	186	61.2	118	38.8	456	169	37.1	287	62.9
전북	241	124	51.5	117	48.5	297	112	37.7	185	62.3	301	143	47.5	158	52.5
전남	133	98	73.7	35	26.3	130	96	73.8	34	26.2	137	97	70.8	40	29.2
경북	235	126	53.6	109	46.4	257	170	66.1	87	33.9	275	173	62.9	102	37.1
경남	124	89	71.8	35	28.2	164	104	63.4	60	36.6	178	112	62.9	66	37.1
제주	43	33	76.7	10	23.3	49	33	67.3	16	32.7	50	29	58.0	21	42.0

- 반면에 대구에서 체육 특기생 선발 인원 비율이 2009년, 2010년, 2011년 각각 14.2%(30명), 12.9%(27명), 17.0%(30명)로 가장 낮게 나타남

2) 유형별 체육 특기생 선발비율 현황

- 대학교 유형별로 체육 특기생 선발 인원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2009년 국립대학교에서 61.5%(2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2010년에는 사립대학교가 51.7%(1,68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1년에는 다시 국립대학교에서 58.5%(2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2009년, 2010년, 2011년 공립대학교에서 각각 503명(26.8%), 483명(25.3%), 500명(23.5%)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남.

〈표 1-6〉 유형별 체육 특기생 선발비율 현황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		체육(명)		기타(명)	전체		체육(명)		기타(명)	전체		체육(명)		기타(명)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빈도	%	빈도	%
유형	총계	5,258	2,087	39.7	3,171	60.3	5,229	2,186	41.8	3,043	58.2	6,125	2,297	37.5	3,828	62.5
	국립	39	24	61.5	15	38.5	61	19	31.1	42	68.9	41	24	58.5	17	41.5
	공립	1,880	503	26.8	1,377	73.2	1,911	483	25.3	1,428	74.7	2,126	500	23.5	1,626	76.5
	사립	3,285	1,506	45.8	1,779	54.2	3,257	1,684	51.7	1,573	48.3	3,958	1,773	44.8	2,185	55.2

4) 체육 특기생 모집인원 대비 선발인원 비교

(1) 지역별 체육 특기생 선발 비율현황

- 2009년은 부산이 98.9%(17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0년은

인천이 97.1%(66명)로 가장 높았으며, 2011년은 강원도가 95.9%(11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에 제주도가 2009년, 2010년에 각각 71.7%(33명), 2011년 63.0%(29명)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1-7〉 지역별 체육 특기생 모집비율 대비 선발비율 비교

	2009년				2010년				2011년			
	모집 대학교 (개)	선발된 비율(%)	모집 인원(명)	선발 인원	모집 대학교 (개)	선발된 비율(%)	모집 인원(명)	선발 인원	모집 대학교 (개)	선발된 비율(%)	모집 인원(명)	선발 인원
총계	108	88.3	2,363	2,087	107	87.8	2,489	2,186	109	88.4	2,597	2,297
서울	15	94.4	484	457	14	96.1	484	465	17	95.7	530	507
부산	9	98.9	181	179	9	87.4	230	201	9	90.0	221	199
대구	3	96.8	31	30	3	93.1	29	27	3	81.1	37	30
인천	3	93.8	65	61	3	97.1	68	66	2	94.7	57	54
광주	4	83.7	129	108	4	86.8	129	112	3	80.6	124	100
대전	5	84.7	124	105	5	76.6	124	95	5	88.1	126	111
울산	1	100.0	13	13	1	100.0	14	14	1	92.9	14	13
경기	15	92.4	340	314	14	92.3	363	335	15	93.2	380	354
강원	8	81.5	146	119	9	87.5	112	98	7	95.9	121	116
충북	6	98.7	77	76	6	91.1	79	72	7	94.7	95	90
충남	10	83.3	186	155	11	77.2	241	186	10	87.6	193	169
전북	6	73.8	168	124	5	88.9	126	112	6	89.9	159	143
전남	6	76.0	129	98	6	82.1	117	96	6	79.5	122	97
경북	9	86.3	146	126	9	79.4	214	170	9	69.8	248	173
경남	6	90.8	98	89	6	92.0	113	104	7	90.3	124	112
제주	2	71.7	46	33	2	71.7	46	33	2	63.0	46	29

(2) 유형별 체육 특기생 선발 비율현황

- 대학 유형별로 체육 특기생 모집비율 대비 선발비율을 비교해본 결과 2009년부터 2011년 까지 국립대학교가 각각 93.7%(503명), 95.1%(483명), 93.5%(50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사립대학교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각각 83.6%(1,506명), 85.8%(1,684명), 87.0%(1,773)로 나타났으며 점차 체육 특기생 선발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음

〈표 1-8〉 유형별 체육 특기생 모집비율 대비 선발비율 비교

	2009년				2010년				2011년			
	모집 대학교 (개)	선발된 비율(%)	모집 인원(명)	선발 인원	모집 대학교 (개)	선발된 비율(%)	모집 인원(명)	선발 인원	모집 대학교 (개)	선발된 비율(%)	모집 인원(명)	선발 인원
총계	108	88.3	2,363	2,087	107	87.8	2,489	4,077	109	88.4	2,186	3,043
공립	2	100.0	24	24	1	100.0	19	19	1	100.0	24	24
국립	23	93.7	537	503	22	95.1	508	483	21	93.5	535	500
사립	83	83.6	1,802	1,506	84	85.8	1,962	1,684	87	87.0	2,038	1,773

【 2011년도 연구과제 목록 】

❖ 자체연구과제

도 서 명	책 임 연구자	정 가
1 지방체육단체 통합운영 방안 연구	성문정	비매품
2 학교운동부 운영비 구조실태조사 및 학부모 비용부담 완화 방안	한태룡	"
3 체육분야 일자리 창출 전략 및 과제	김상훈	"
4 필드하키 골키퍼의 페널티 스트로크 방어능력 향상을 위한 자각기술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구해모	"
5 런던올림픽을 대비한 사격국가대표선수 심리기술훈련 지원(1)	김병현	"
6 스포츠과학이 경기력 향상에 미치는 사례 연구	김영수	8,000
7 체조 도마 종목 고난도 신기술(손짚고 뒤편 앞 공중돌아 1080도 비틀기) 종목의 완성도 향상을 위한 기술 분석	송주호	비매품
8 파워복싱 구현을 위한 복싱 대표팀의 COPAS Training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김광준	"
9 고강도 유산소 운동시간의 누적 형태가 비만 청소년의 생리 및 심리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운동시간 분할법과 연속법 비교)	박세정	"
10 국가대표 펜싱선수들의 공격기술 수행 시 상지와 하지분절 움직임의 장단점 분석	김태완	"
11 드라이버 클럽의 샷 거리와 방향성 비교 분석	안병화	"
12 골프공의 클럽 종류별 샷 거리와 회전특성 비교 분석	안병화	"
13 영상 녹화 장치를 이용한 시선 추적 장치 성능 개선 연구	이상철	"
14 전자식 퍼팅훈련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길세기	"
15 국제스포츠기구 인력진출 활성화 방안	고은하	"
16 스포츠산업 대표브랜드 육성 전략 수립	유의동	10,000
17 체육특기자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한태룡	비매품
18 태권도 프랜차이즈 실태분석 및 발전방향	조운용	"
19 고강도 저항성 트레이닝이 사이클 선수의 지구력에 미치는 영향	정동식	"
20 2012 런던올림픽을 위한 컨디셔닝 대처방안	송홍선	"
21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의 노후도 실태조사, 유지·보수 및 중장기 지원 방안	유지곤	"
22 생활체육지도자 보수체계 개선방안	김미숙	9,000
23 스포츠한류의 현황 진단 및 미래전망	고은하	비매품
24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 건강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정진욱	"
25 학교운동부 합숙훈련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이용식	"

도 서 명	책 임 연구자	정 가
26 동계종목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김미숙	"
27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광저우아시안게임 성과와 외부요인간의 상관분석 및 국제경쟁력 향상방안 연구	조운용	"
28 2014 인천아시아대회 및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정보시스템 연계활용 가능성 조사 연구	김태완	"
29 체육과학연구원 유네스코 석좌기관 등록방안	고은하	"
30 장애인 전문체육선수 발굴·육성 방안	김권일	"
3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확대시행에 대한 타당성 분석 및 합리적 수익금 배분과 활용방안 연구	최용석	"
32 올림픽 공원과 연계한 공영기획사업 활성화 연구	오치정	"
33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인정대회 및 평가점수 개선 방안	김권일	"
34 영상녹화 기능과 잡음제거 기능을 추가한 속도측정장치 성능개선 연구	이상철	"
35 국산 자전거 크랭크 셋 시험평가	안병화	"
36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방안과 지표 개발	조운용	"
37 2011 한국의 체육지표	유의동	24,000
38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의 정책형평성 연구	박영옥	비매품
39 학교 체육활동의 대학입시 반영 방안 연구(외부위탁과제)	정영린	"
40 스포츠정보서비스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에 관한 연구(외부위탁과제)	채병수	"

❖ 수탁연구과제

도 서 명	책 임 연구자	정 가
1 WTA 코리아 오픈 개최 타당성 연구	박영옥	비매품
2 2011년 축구협회공인구및검정구지정을위한 성능평가	이상철	"
3 체육진흥투표권의 국민경제적 기여및 파급 효과연구	김양례	"
4 2010체육백서 발간	김권일	"
5 2011경기단체 조직 운영 평가	박영옥	"
6 2011년 육상드림팀 스포츠과학 지원 총괄	문영진	"
7 육상드림팀 남자 세단뛰기 체력분야	성봉주	"
8 육상드림팀 남자 세단뛰기 기술분야	송주호	"
9 육상드림팀 남자 세단뛰기 심리분야	김용승	"

도 서 명		책 연구자	정 가
10	육상드림팀 여자 장대높이뛰기 체력분야	정동식	"
11	육상드림팀 여자 장대높이뛰기 기술분야	최규정	"
12	육상드림팀 여자 장대높이뛰기 심리분야	김병현	"
13	육상드림팀 남자 창던지기 체력분야	김광준	"
14	육상드림팀 남자 창던지기 기술분야	이순호	"
15	육상드림팀 남자 창던지기 심리분야	김병현	"
16	육상드림팀 남녀 허들 심리분야	구해모	"
17	2011경기단체 재무관리 부문 평가	박영옥	"
18	2011년도 꿈나무선수 선발 측정 평가	고병구	"
19	실시협약 변경(회원권 분양구조수)을 위한 검토 보고서 작성	성문정	"
20	인조잔디 운동장 노후도 실태조사	유지곤	"
21	2011년 국민체력실태조사 사업	고병구	"
22	국제대회 지식정보센터 구축 연구용역	박영옥	"
23	국민체육기금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성과평가	노용구	"
24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시스템 제도개선	최용석	"
25	에너지절감형 전통휠체어 3차분 협약	길세기	"
26	국민생활체육전국종목별연합회 성과평가 지표 개선 연구 용역	이용식	"
27	2011년 레저스포츠 안전교육	성문정	"
28	2018 세계사격선수권대회 타당성 분석	유의동	"
29	2011 스포츠경영정보조사 사업	정지명	"
30	2011 장애인경기단체 선진화방안 연구용역	김권일	"
31	경주사업 전자카드 시범운영 평가	정지명	"
32	2018 평창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방안	김미숙	"
33	장애인전용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	김권일	"
34	스포츠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김상훈	"
35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교재개발 및 보급 연구	김태완	"
36	스포츠IT 융합 인력 수요전망 조사연구	정지명	"
37	꿈나무선수 경기력향상도 측정평가	고병구	"
38	미래형 스포츠산업 모델설정을 위한 연구	정지명	"

【 2010년도 연구과제 목록 】

❖ 자체연구과제

도 서 명	책 임 연구자	정 가
1 우수선수 양성시스템 연계 발전방안 연구	이용식	8,000
2 친환경·저탄소 공공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유지곤	비매품
3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한태룡	10,000
4 체육도시지수 개발	송명규	비매품
5 장애인 생활체육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방안	김권일	"
6 전국체육대회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김미숙	"
7 하키 페널티 코너와 페널티 스트로크 상황에서 골키퍼의 시선행동과 방어동작 분석 사례연구	구해모	"
8 광주우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국가대표선수 심리지원 사례연구 : 사격, 양궁, 탁구, 레슬링을 중심으로	김병현	"
9 훈련단계를 고려한 핸드볼 대표팀의 파워-지구력향상 체력훈련프로그램 개발과 현장 적용 효과	윤성원	"
10 장애인과 일반 엘리트 사격선수 사격조건 시 뇌 활성화 특성 및 비교연구	김용승	"
11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경기력향상을 위한 창던지기 딜리버리 구간의 기술동작 분석	이순호	4,000
12 여자 유도종목 경쟁선수들의 굳히기 기술동영상 DB 구축과 대응방안 연구	김영수	비매품
13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100m 달리기 기록향상을 위한 전문체력향상 훈련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및 구간속도 측정기 개발	성봉주	"
14 역도 인상동작 수행시 SIMM 활용을 통한 주근육 및 세부근육활동에 대한 분석	문영진	"
15 광주우 아시아경기대회 대비 평행봉 Dimitrenko 기술의 완성도 평가	송주호	"
16 복싱선수 실시간 편지력(파워) 측정 장비 개발 및 현장 적용	김광준	4,000
17 리듬체조 선수의 척추 측만증 예방 및 개선을 위한 특이적 운동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효과	박세정	비매품
18 경륜 경주전법에 따른 사이클링 파워와 근력요인에 관한 연구	김정훈	"
19 펜싱종목(플뢰레, 에페) 동영상 DB 구축 및 경기내용 분석	김태완	"
20 골프퍼터의 퍼팅 거리, 방향 및 진동 특성 분석	안병화	"

도 서 명	책 임 연구자	정 가
21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제도 개선 방안 연구 - 학생건강체력평가와 관련된 규격 개발 연구	이상철	비매품
22 스포츠산업실태 및 경제적효과 분석 연구	정지명	"
23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제도·지정품목 현황조사	길세기	"
24 고등학생의 정과체육실시 여부와 체력수준의 관계에 관한 기초 연구 - 서울특별시 소재 일반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	한태룡	5,000
25 스포츠 강국들의 심리개입 비교분석 및 경쟁적 우위의 심리지원 중심체제 개발	김용승	비매품
26 국제경기대회 지원 법률 제정안 연구	성문정	"
27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기초연구 -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최용석	"
28 체육인 공제제도 도입 타당성 분석	성문정	"
29 국제대회 메달리스트 지원제도 개선방안	김권일	"
30 경주사업 경쟁력제고 및 마케팅전략 수립	송명규	"
31 소년체전 개선을 위한 인식조사 연구	이용식	"
32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 대비 여자하키 경쟁국가별 경기내용 분석	송주호	"
33 사이클 국가 및 상비군대표 선수들의 사이클링시 근발현 발란스 및 각도변화에 대한 분석	문영진	"
34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체육정책 개발	김미숙	"

❖ 수탁연구과제

도 서 명	책 임 연구자	정 가
1 장애인체력관리 실태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연구	김권일	비매품
2 2018년제8회세계승마대회유치기본계획수립및타당성분석	유의동	"
3 2013스페셜올림픽세계동계대회최타당성 조사	유의동	"
4 2010년 공인구 및 검정구 지정을 위한 성능 평가	이상철	"
5 (주)프로스펙스 런닝화의 운동자극효과에따른 운동역학적 기능 평가 및 생리학적 효과 검증	이순호	"
6 제17기 경륜선수후보생 체력 측정 용역	김정훈	"
7 2010년 꿈나무선수 선발 측정 평가	고병구	"

도 서 명		책 연구자	정 가
8	세계태권도연맹전자호구케이피애피사제품성능시험및검사	황중학	"
9	2011년팀 스포츠과학 지원(남자기술)	송주호	"
10	2011년팀 스포츠과학지원(남자체력)	성봉주	"
11	2011년팀 스포츠과학지원(여자도약총괄)	최규정	"
12	2011년팀스포츠과학지원(여자심리1)	김병현	"
13	2011년팀 스포츠과학 지원(여자심리2)	김용승	"
14	2011년팀 스포츠과학지원(여자기술1)	김태완	"
15	2011년팀 스포츠과학지원(여자체력2)	박세정	"
16	2011년팀 스포츠과학지원(여자기술2)	문영진	"
17	2011년팀 스포츠과학지원(여자체력)	김정훈	"
18	2011년팀 스포츠과학지원(남자심리)	김용승	"
19	포터블심전도계와혈압계의정확도및재현도의 신뢰성 검증	성봉주	"
20	2009 체육백서 발간	김양례	"
21	2010국민생활체육활동참여실태조사	김양례	"
22	경기단체평가사업	박영옥	"
23	체육지도자 훈련지도서 개발 사업	김태완	"
24	학교운동부 지도자 연수	최규정	"
25	에너지 절감형 전동휠체어	길세기	"
26	체육관계법 선진화 방안 연구	성문정	"
27	골프체육지도서개발사업	김광준	"
28	스쿼시체육지도서개발사업	송홍선	"
29	바이애슬론체육지도서개발사업	성봉주	"
30	스피드스케이팅지도서개발사업	윤성원	"
31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효과 평가	박영옥	"
32	Activity monitor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토	김정훈	"
33	장애인 국가대표선수 훈련지원 개선 방안	김권일	"
34	비인기종목 활성화 방안 연구	이용식	"
35	체육통계 산출 및 관리체계 정비 사업	유의동	"
36	스키장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연구	송명규	"
37	2010년도 꿈나무선수 경기력향상도 측정평가	고병구	"
38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기본지침 개발	성문정	"

【 2009년도 연구과제 목록 】

❖ 자체연구과제

도 서 명	책 임 연구자	정 가
1 테니스 서브서비스버의 시선 행동과 서브서비스턴 동작	구해모	비매품
2 학교운동부 스포츠과학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김권일	"
3 유아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김양례	17,000
4 유럽국가의 학교·생활·엘리트체육간 연계운영 실태 분석 - 영국,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	성문정	9,000
5 민간체육시설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송명규	5,000
6 2009 한국의 체육지표	유의동	25,000
7 우리나라 국가대표선수촌 운영 개선을 위한 주요국의 국가대표선수촌 운영방식 비교연구	유지곤	비매품
8 스포츠 팀을 위한 전략적 성과관리 지원시스템 개발연구 - 국가대표 핸드볼팀 대상 적용모델 기본 구상 -	최용석	"
9 학생선수의 진로경로연구	한태룡	19,000
10 3분 3회전으로의 복싱 경기방식 변경에 따른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김광준	비매품
11 양궁 훈련시와 시합시의 심리상태 자기진단훈련 효과	김병현	"
12 유도선수들의 계체 후 컨디션 조절을 위한 영양지침 개발 및 적용	김영수	"
13 태권도 선수용 이완 프로그램과 이완-인지재구성 프로그램 개발 및 시합 불안 제어 효과 비교	김용승	"
14 체력측정변인을 활용한 중장거리 사이클 선수의 적정 기어비 결정방법	김정훈	"
15 역도 단계별 기술강화훈련 지도서	문영진	6,000
16 운동 특성에 따른 엘리트 선수의 심장 적응 - 최대하운동시 심전도와 심장초음파 분석을 통하여 -	박세정	비매품
17 링 swallow 기술향상을 위한 근력발현 양상 파악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송주호	"
18 단거리 수영선수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송홍선	"
19 국가대표 볼링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심상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신정택	"
20 핸드볼 골키퍼 방어율 향상을 위한 방어동작 기술과 체력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효과	윤성원	"
21 탁구의 스윙 패턴 및 임팩트 기술 분석 평가와 기술훈련 방안	이순호	"

도 서 명	책 임 연구 자	정 가
22 육상 도약선수를 위한 주기화 근력 트레이닝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연구	정동식	비매품
23 국산 골프클럽의 경쟁력 제고요인 분석	안병화	"
24 스포츠분야 적용을 위한 시선 추적 장치 실용화	이상철	"

❖ 수탁연구과제

도 서 명	책 임 연구 자	정 가
1 생활밀착형 자전거 시험 평가 연구	권경배	비매품
2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신규수익사업 모델개발	최용석	"
3 새천년건강체조의 대국민 인지도 조사 영역	김양례	"
4 국내인조잔디 타입별 기초 물성 평가 연구	안병화	"
5 2009년 대한축구협회 공인구 및 검정구 지정을 위한 성능평가	이상철	"
6 제16기 경륜후보생 경기력 향상 수탁과제 영역	김정훈	"
7 영암국민체육센터조성사업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	성문정	"
8 제주종합스포츠타운건설타당성조사및경제성 검토	유지곤	"
9 아외용 골프 스윙 궤적 운동기 개발	황종학	"
10 백금나노처리된 기능성운동복이 에너지소비량과 신체자세보정및 주관적 착용감에 미치는 효과	윤성원	"
11 세계태권도아카데미 교육과정 과목별 교육내용 수립	유의동	"
12 태권도협회공인을위한창하이테크사태권도전자호구	황종학	"
13 태권도협회공인을위한케이피앤피사태권도전자호구	황종학	"
14 2009꿈나무선수 선발 측정 평가 영역	고병구	"
15 체육영재 훈련 프로그램 개발(체조)	송주호	"
16 체육영재훈련 프로그램 개발(수영)	송홍선	"
17 체육영재훈련프로그램 개발(육상)	정동식	"
18 체육영재훈련프로그램개발(인성교육)	한태룡	"
19 기마역사문화대공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	유의동	"
20 학생선수 학습 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이용식	"

도 서 명		책 연구자	정 가
21	2011년팀 스포츠과학지원(투포환 체력 향상)	김광준	비매품
22	2011년팀 스포츠과학 지원(드림팀 체력 심리 검사)	최규정	"
23	2011년팀 스포츠과학지원(도약종목 심리 지원)	김용승	"
24	2011년팀 스포츠과학지원(도약종목 체력 향상)	박세정	"
25	2011년팀 스포츠과학지원(드림팀 영양/컨디션지원)	김영수	"
26	2011년팀 스포츠과학지원(세단뛰기 기술 분석)	송주호	"
27	2011년팀 스포츠과학지원(투창 기술 분석)	이순호	"
28	2011년팀 스포츠과학지원(하들기술분석)	문영진	"
29	체육특기자 양성체제 개선 방안 연구	한태룡	"
30	2022 FIFA 월드컵대회 한국 개최 타당성 조사	박영옥	"
31	서울시체육회 전지훈련센터 건립에따른타당성조사	유지곤	"
32	엘에스네트웍스프로스펙스위킹화생체역학적검증	문영진	"
33	유소년축구 중장기 발전 방안	한태룡	"
34	대한태권도협회공인을위한대도태권도전자호구	황중학	"
35	국내 인조잔디 타입별 기초 물성 연구II	안병화	"
36	2009 국민체력실태조사	고병구	"
37	2008년 체육백서 발간	김양례	"
38	올림픽 및 월드컵 유치의 기초 타당성연구	박영옥	"
39	체육지도자 훈련지도서 개발 사업	이용식	"
40	해외우수지도자초청강습회	김태완	"
41	세계종합무술대회 창건 연구	박영옥	"
42	양궁 체육지도자 훈련지도서 개발사업	김병현	"
43	배드민턴 체육지도자 훈련 지도서 개발 사업	구해모	"
44	스포츠전문인력 양성기관 평가	정지명	"
45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수립	성문정	"
46	2009꿈나무선수 향상도 측정평가 연구	고병구	"

【 2008년도 연구과제 목록 】

❖ 자체연구과제

도 서 명	책 임 자	정 가
1 스포츠산업진흥시설 및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 방안	박영옥	8,000
2 현행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성문정	3,000
3 국민체력인증사업 운영 방안 연구	김양례	10,000
4 경륜·경정사업 운영효율화를 위한 경륜·경정 법령개정 방향	김양례	3,000
5 2008 한국의 체육지표	유의동	26,000
6 글로벌 스포츠용품 브랜드 육성 계획	유의동	4,000
7 태권도의 올림픽종목 지위 유지 방안	고은하	비매품
8 선진국 체육기금관리기관의 역할 및 사업 체계	고은하	"
9 해외 골프 수요의 국내수요 전환을 위한 골프장 경쟁력 강화 방안	송명규	5,000
10 학생선수의 학업활동 실태조사 및 최저학력제 도입 타당성 연구	한태룡	3,000
11 올림픽체육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전략수립	한태룡	비매품
12 경기내용 분석을 통한 배드민턴 복식대표선수의 전술적 능력 향상 방안	구해모	"
13 베이징올림픽 대비 여자 핸드볼 경쟁국가팀의 경기력 분석과 대응방안	윤성원	"
14 베이징올림픽을 대비한 국가대표선수들의 심리 지원 사례 연구	김병현	"
15 베이징올림픽 대비 탁구 경쟁국가 남자 주전선수들의 경기내용 분석 및 전략적 훈련방안	이순호	"
16 베이징올림픽 유도종목 메달 획득 가능 체급별 경쟁상대 선수의 경기내용 분석 및 전술적 대응 방안	김영수	"
17 베이징올림픽 국가대표 투기종목 선수에 대한 개인별 정신력강화 인지재구성 프로그램 개입 및 효과	김용승	"
18 역도 인상기술 향상을 위한 부분동작 강화훈련법 개발	문영진	"
19 체조 연기내용 구성 전략수립 및 메달가능종목(평행봉, 철봉)의 내리기 기술 향상도 평가	송주호	"
20 베이징올림픽 대비 남녀 하키 주요 경쟁 국가의 경기내용 분석 및 대응방안	송주호	"
21 평영선수의 신체적 특성과 영법분석을 통한 개별적 훈련프로그램 적용	송홍선	"
22 엘리트 선수의 운동유발성 기도수축 : 국내선수의 현황파악 및 준비운동과 비티민 C의 복합처치 효과	박세정	"

도 서 명	책 연구자	정 가
23 베이징올림픽 대비 국가대표 펜싱선수를 위한 심리기술훈련 적용 연구	신정택	비매품
24 베이징올림픽 대비 복싱선수 체중감량 기간 동안의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김광준	"
25 경륜선수의 체력평가 기준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김정훈	"
26 국내외 주요 드라이버 골프클럽의 성능 평가	안병화	"
27 스포츠분야 적용을 위한 시선 추적 소프트웨어 개발	이상철	"
28 자전거 프레임 구조최적화를 위한 해석 연구	권경배	"
29 기금지원 체육시설 공급체계 효율화 방안	유지근	"
30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 경영효율성 평가지표 개발	송명규	"
31 베이징올림픽 대표선수의 컨디셔닝 지침서	김정훈	"

❖ 수탁연구과제

도 서 명	책 연구자	정 가
1 해·공군 모집병 체력검정 대체 측정방안 연구	성봉주	비매품
2 2007 체육백서	성문정	"
3 2008 꿈나무선수 선발 측정 평가	고병구	"
4 2008 꿈나무 육성 표준프로그램	성봉주	"
5 2008년 대한축구협회 공인구 및 검정구 지정을 위한 규격 제정 및 성능 평가	이상철	"
6 2010 상주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 기본 계획	박영옥	"
7 경기도 소방공무원 체력향상 프로그램 개발	성봉주	"
8 경륜 후보생 경기수행관련 체력 분석과 훈련 및 영양 지침	김정훈	"
9 국가대표 종합훈련장 스포츠와과학시스템 구축	윤성원	"
10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실태 조사	김양례	"
11 국민은행 사격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과학 적용	최규정	"
12 국민체육진흥기금지원사업 정책 효과 평가 연구	박영옥	"
13 기능성신발(엠에스존)의 운동역학, 스포츠심리 및 운동 생리적 효과검정	성봉주	"
14 대구 체육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성문정	"
15 본에어 침대의 압력분포분석 및 생리적 효과 검증	문영진	"

도 서 명		책 연구자	정 가
16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대한 성별 영향 평가	고은하	비매품
17	서울 장애인체육회 발전 중장기 계획	김권일	"
18	세계태권도 연맹 전자호구 DAEDOINTERNATIONAL 제품 성능 시험 및 검사	황종학	"
19	세계태권도연맹 전자호구 아디다스사 제품 성능 시험 및 검사	황종학	"
20	스포츠복지사업 추진 계획 수립	김권일	"
21	실외형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의 이용가능한 환경실태조사 및 리모델링 방안 연구	한태룡	"
22	유소년 농구 훈련 가이드북	윤성원	"
23	장애인체육 행정전달체계 연구	성문정	"
24	장흥 국민체력센터 건립 기본구상	유지곤	"
25	전자제어시스템을 활용한 야외운동기구 개발	황종학	"
26	직장장애인의 체육활동참여 효과 분석	김권일	"
27	체육단체 기능 개편에 관한 여론 조사	고은하	"
28	학교법인부지에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을 위한 연구	송명규	"
29	초등학교 체육보조강사 지원 시범사업 평가 및 추진계획 수립	김권일	"
30	핸드볼 전용 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 사업	유지곤	"
31	태권도학의 체계정립 및 태권도아카데미 교육과정 기본 설계	유의동	"
32	2008년 공공체육시설 실태 조사	고병구	"
33	2014 우수꿈나무선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신정택	"
34	특전사의 천리 행군이 근관절기능, 에너지소모량, 피로도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성봉주	"
35	체육단체 관련 규정 선진화 방안 연구	성문정	"
36	걷기운동시 기능성운동화(아이잭스)의 에너지소비와 동작의 효율성	성봉주	"
37	2008년 꿈나무 선수 경기력 향상도 측정·평가	고병구	"
38	경기단체 성과 평가	박영옥	"
39	골프종합체육시설업 활성화 방안 수립	송명규	"
40	국민은행 사격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심리기술 훈련 적용	신정택	"
41	2011년팀 스포츠과학 지원에 따른 연구	최규정	"

【 2007년도 연구과제 목록 】

❖ 자체연구과제

도 서 명	책 임 자	정 가
1 제4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권민혁	4,000
2 국민체력인증 기본계획 연구	김양례	6,000
3 레저회원권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연구	송명규	3,000
4 신체활동 촉진을 위한 도시 공간 정비 방안	유지곤	비매품
5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비 조달 및 지원방안 - 국민체육센터를 중심으로	송명규	2,000
6 직장체육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고은하	3,000
7 민속씨름 활성화 방안	김양례	비매품
8 2007 한국의 체육지표	유의동	21,000
9 한국체육 발전을 위한 행정시스템 개편 방안	성문정	비매품
10 경기용 휠체어 보급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김권일	비매품
1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 평가제도 도입 방안	박영옥	비매품
12 미래환경의 변화와 체육정책의 방향	이용식	5,000
13 미래체육 발전을 위한 100대 연구 주제	권민혁	비매품
14 수영능력 향상을 위한 실시간 스피드 측정장비 개발 및 적용	송홍선	"
15 엘리트 골프 선수의 주기화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김광준	"
16 신체활동 수행방법 및 ACE 유전자 다형성이 혈압감소에 미치는 영향	박세정	"
17 중장거리 사이클 선수의 스피드 향상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김정훈	"
18 철봉 비행 기술의 단계적 기술훈련 모형 개발 및 적용을 통한 향상도 평가	백진호	"
19 역도 인상 출발동작 기술분석과 인상동작의 일관성에 대한 연구	문영진	"
20 남자 하키 월드컵대회 경기내용 분석 및 대응 방안	송주호	"
21 국가대표 펜싱선수를 위한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 적용	신정택	"
22 시험시 반사적 사격행위를 위한 훈련 방법 개발	김병현	"
23 휠체어종목 부상 현황 및 방지 방안	문영진	"
24 아카이브 시스템 연계 경기내용 분석 시스템 개발	이순호	"
25 REBT에 기초한 정신력 강화 프로그램의 투기 3종목 현장적용 및 효과	김용승	"

도 서 명	책 임 연구 자	정 가
26 체육과학연구원 체력측정 및 평가메뉴얼(경기력 진단 프로그램 측정 항목을 중심으로)	김영수	12,000
27 국내 정상급 선수를 위한 승부근성 검사지 개발	신정택	비매품
28 배드민턴 세계정상급 복식선수의 경기내용분석 및 전술적 대응방안	구해모	비매품
29 스포츠분야 적용을 위한 시선 추적 장치 개발 - 기구부 및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이상철	비매품
30 RFID를 이용한 체력관리시스템 개발 수용성 조사	황종학	4,000

❖ 국고연구과제

도 서 명	책 임 연구 자	정 가
1 스포츠산업 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박영옥	3,000
2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교육 수요조사	유의동	비매품
3 골프클럽 인증규격 개발 연구	안병화	비매품
4 자전거 프레임 시험 평가 연구	권경배	비매품

❖ 수탁연구과제

도 서 명	책 임 연구 자	정 가
1 2008 베이징올림픽경기 외국 전지훈련팀 유치 타당성 조사 및 유치방안 연구	고은하	비매품
2 경륜·경정사업 공익적 발전 방안	김양례	"
3 규칙적인 운동 및 체육활동 참여로 인한 가계 정부 지출의 경제적 효과	박영옥	"
4 2006년 체육백서	성문정	"
5 월드레저게임위원회 설립 방안	유의동	"
6 경북 구미시 공공체육시설 확충 기본 계획	유지곤	"
7 구미시 종합레저스포츠타운 타당성 조사	유지곤	"
8 진도군 국민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유지곤	"
9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합리적인 배분	송명규	"

도 서 명	책 연구자	정 가
10 한국씨름관 건립 기본 방향 연구	유지곤	비매품
11 스노우돔 설치를 위한 사전 조사 및 기본 구상	유지곤	"
12 실내형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의 이용가능 환경 및 모델 개발	한태룡	"
13 2007년도 꿈나무선수 체력 향상도 측정·평가	고병구	"
14 유소년 축구 기능 평가 인증 프로그램 보안	김광준	"
15 스포츠 도핑 검사 현장 만족도 조사 및 검사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용승	"
16 꿈나무선수(육상·체조·수영) 육성을 위한 동·하계 훈련프로그램 개발 연구	성봉주	"
17 U-Health 적용을 위한 야외운동기구의 에너지 소비량 측정과 소프트웨어 기능 구축	성봉주	"
18 기능성 성장운동기구의 운동 자극 검증과 성장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	윤성원	"
19 2007년 국민체력실태 조사	최규정	"
20 보행시 알즈너 발교정구의 운동역학적, 운동생리학적 기능 분석	송주호	"
21 대한축구협회 공인구 및 검정구 지정을 위한 규격 제정 및 성능평가	강기원	"
22 마그네슘합금 프레임 시험 평가 연구	권경배	"
23 u-헬스구현을 위한 미래형 운동 관리 프로세스 및 콘텐츠 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황종학	"
24 야외운동기구의 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	황종학	"
25 엘립티컬 운동 기구의 시스템 기능 분석	황종학	"
26 장애인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수영 종목 훈련지침서	송홍선	"
27 장애인 경기력 향상을 위한 양궁 종목 훈련지침서	김병현	"
28 장애인 경기력 향상을 위한 탁구 종목 훈련지침서	이순호	"
29 안산시 쓰레기 매립장 활용을 위한 타당성 조사	유지곤	"
30 엘리트골프선수의 체력 훈련 방법 가이드	김광준	"
31 장애인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격 종목 훈련지침서	김정훈	"
32 차축 파괴역학 특성 시험	강기원	"
33 국제 경기력 지수 개발	신정택	"
34 자전거 구동 동력 전달 장치 시험 평가 연구	권경배	"
35 전통스포츠 테마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유지곤	"
36 차륜재의 파괴 역학 특성 시험 평가	강기원	"
37 트레드밀과 진동운동기에 있어서 대사량 및 심박수를 적용하기 위한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황종학	"

도 서 명		책 연구자	정 가
38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대표선수 선발을 위한 체력측정 · 평가 결과보고서	이순호	비매품
39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기본계획	박영옥	”
40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관한 여론 조사	고은하	”
41	장애인 체육백서	김권일	”
42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심화 과정 개설	유의동	”
43	서천 스포츠테마파크 기본 구상	유지곤	”
44	장애인 가맹경기단체 성과 평가 기준 및 대회 점수 제도 개발	김권일	”
45	스포츠외교력 강화 방안	고은하	”
46	2007년도 꿈나무선수 선발을 위한 잠재력 측정 · 평가	고병구	”

※ 체육과학연구원 연구과제보고서는 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체육과학연구원 정기간행물 안내

체육과학연구원에서는 최신 체육정보 보급 및 우수 논문 소개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3종의 간행물(스포츠과학, 체육과학연구, IJASS)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과학』은 체육정책, 스포츠과학, 스포츠의학 등 최신 체육정보를 폭넓게 소개하는 체육전문잡지입니다.

- 발행월 및 배포 부수 : 2, 5, 8, 11월(계간), 1000부/900부
- 배포처 : 체육관련단체, 지방자치단체, 언론/방송사, 대학 도서관 등
- 1년 구독료 : 20,000원(날권 신청 가능 : 6,000원)



『체육과학연구』는 2003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국내 최고의 체육종합학술지입니다.

- 발행월 및 배포 부수 : 3, 6, 9, 12월(계간), 800부/700부
- 배포처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대한체육회,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 1년 구독료 : 30,000원(날권 신청 가능 : 10,000원)



『IJASS』는 국내 유일의 체육종합 영문 학술지입니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Sports Science

- 발행월 및 배포 부수 : 6, 12월(반년간), 1,000부/800부
- 배포처 : 해외 체육관련기관 및 국제교류처 도서관 등
- 1년 구독료 : 20,000원(날권 신청 가능 : 10,000원)

▶ 정기구독 신청 방법 : 연구원 홈페이지 신청

○ 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sports.re.kr>

▶ 구독료 납부 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기업은행	204-000153-04-241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체육특기자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발 행 일 : 2011년 12월

발 행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139-24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2동 산 223-19

인 쇄 처 : 서울미진 ☎ 02-567-7272

비매품